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

2020.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7. 29~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마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심의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통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회는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3.1조원, 총지출은 485.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서, 지난 재정운용 상황을 검토·분석하여 그 방향성과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8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생활 SOC사업 등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I. 결산 개요 / 3

1. 현 황 3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

II. 주요 현안 분석 / 12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2
 - 1-1. 재정분권 방안 이행으로 심화된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문제 15
 - 1-2. 교부액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교부세 정산분의 교부·처리방식 개선필요 ... 21
 - 1-3.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운영의 문제점 24
2. 재난복구지원 사업들의 사업방식 개선 및 관리강화 필요 30
 - 2-1. 재난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 필요 31
 - 2-2. 재난구호지원사업의 편성목적 및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등 37
 - 2-3. 풍수해보험 사업의 적정 가입률 제고 필요 42

III. 개별 사업 분석 / 46

1.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의 문제점 46

CONTENTS

2.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 사업관리 개선 필요	51
2-1.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은 행사를 위한 전용 및 조정 지양 필요	53
2-2.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집행관리 개선 필요	57
3.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생산적 일자리 제공 확대 필요	61
4.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문제점	66
5.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진	73
6.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문제점	79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과다	84
8.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87
9.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등	91
1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미집행 이월 과다 문제	98
11. 우수저류시설 설치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102
12.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필요	106
13.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 시범사업 후속조치 필요	109
14. 민간보조사업의 관리 개선 필요	113
15.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연구용역의 연도말 착수 및 연례적 이월 문제	117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120



CONTENTS

[인사혁신처]

I. 결산 개요 / 123

- 1. 현 황 123
-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0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1

II. 주요 현안 분석 / 132

- 1. 공무원 재해보상사업의 문제점 132
 - 1-1. 공무원재해보상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부적절 133
 - 1-2.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심의회 위원수당 지급기준 개선 필요 137

III. 개별 사업 분석 / 141

- 1.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의 연례적 초과집행 개선 필요 141
- 2. 임대주택건립 계획변경 과다 개선 필요 145
- 3.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규모 최소화 필요 148
- 4. 공무원 연금대부사업의 연례적 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다 152

- ※. 인사혁신처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154



CONTENTS

[경찰청]

I. 결산 개요 / 157

- 1. 현 황 157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63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64

II. 주요 현안 분석 / 165

- 1.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165
 - 1-1.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위한 연례적 전용 문제 166
 - 1-2.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집행 관리 소홀 문제 169
- 2. 진술녹음제도 전면 시행 관련 고려사항 171

III. 개별 사업 분석 / 175

- 1.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등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175
- 2. 계약 체결 지연 과제에 대한 1차년도 과제비 과다 지급 부적정 178
- 3. 일반수용비를 통한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상금 현금 지급 문제 등 182
- 4.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지문 등 사전등록률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활동 및 홍보 강화 필요 185
- 5. 민간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규모 확대 필요 188
- 6. 장비관리유지 사업 이월 최소화를 위한 조기 계약 체결 필요 191

- ※. 경찰청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194



CONTENT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 결산 개요 / 197

- 1. 현 황 197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01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2

II. 주요 현안 분석 / 203

- 1. 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세입·세출 예산외 운용 지양 필요 203

III. 개별 사업 분석 / 210

- 1. 예비금의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부적절 210
- 2. 정책연구용역 집행관리 개선 필요 212
- 3. 관서운영경비 적법한 집행절차 준수 필요 216

[소방청]

I. 결산 개요 / 223

- 1. 현 황 223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27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8



CONTENTS

II. 주요 현안 분석 / 229

- 1. 화재안전특별조사 후속조치 마련 필요 등 229
 - 1-1. 화재안전특별조사 후속조치 마련 필요 230
 - 1-2. 보조사업 수행 시 지방비 부담에 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 234
- 2.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의 문제점 237
 - 2-1. 소방헬기 안전관리 대책 강구 필요 등 238
 - 2-2. 자산취득비 연례적 이월 지양 노력 필요 등 245

III. 개별 사업 분석 / 249

- 1. 조속한 간이 스프링클러 보급을 위한 노력 필요 249
- 2. 소방안전 VR 교육 장비 확보 독려 필요 253



행정안전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88억 7,700만원이며, 676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0.4%인 611억 5,200만원을 수납하고 64억 3,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다.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5,524	55,524	55,524	57,307	52,052	5,190	0	90.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06	606	606	5,073	3,829	1,244	0	75.5
혁신도시특별회계	2,747	2,747	2,747	5,271	5,271	0	0	100
합계	58,877	58,877	58,877	67,651	61,152	6,434	0	90.4

자료: 행정안전부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6조 5,989억 2,500만원이며, 이 중 99.4%인 56조 2,275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313억 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00억 7,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5,020,885	55,181,588	55,917,665	55,559,810	121,479	236,376	99.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60,815	680,700	681,260	667,735	9,825	3,701	98.0
합계	55,681,700	55,862,288	56,598,925	56,227,545	131,303	240,077	99.4

자료: 행정안전부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2억 7,500만원 (3.8%)이 증가한 61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21억 5,300만원 (24.8%)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48,999	58,877	58,877	61,152	2,275	12,153

자료: 행정안전부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652억 5,800만원 (0.6%)이 증가한 56조 2,27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조 4,538억 8,600만원(15.3%)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48,773,660	55,681,700	55,862,288	56,227,545	365,258	7,453,886

자료: 행정안전부

다.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산은 10조 372억원, 부채는 596억 6,4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9,775억 3,6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10억 6,700만원, 투자자산 63억 9,400만원, 일반유형자산 9조 8,372억 2,900만원, 무형자산 1,665억 2,400백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9억 8,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057억 2,700만원(7.6%)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토지재평가 및 소방방재교육연구단지 신축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6,416억 6,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64억 5,100만원, 장기차입부채 308억 5,500백만원, 장기충당부채 19억 1,5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4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13억 2,000만원(23.4%)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리스 부채 및 보조금 미지급금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 100억 1,5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0,037,200	9,331,473	705,727	7.6
Ⅰ. 유동자산	21,067	15,560	5,507	35.4
Ⅱ. 투자자산	6,394	1,816	4,578	252.1
Ⅲ. 일반유형자산	9,837,229	9,195,561	641,668	7.0
Ⅳ. 무형자산	166,524	110,905	55,619	50.2
Ⅴ. 기타비유동자산	5,986	7,631	△1,645	△21.6
부 채	59,664	48,344	11,320	23.4
Ⅰ. 유동부채	26,451	16,436	10,015	60.9
Ⅱ. 장기차입부채	30,855	30,406	449	1.5
Ⅲ. 장기충당부채	1,915	774	1,141	147.4
Ⅳ. 기타비유동부채	443	728	△285	△139.1
순 자 산	9,977,536	9,283,129	694,407	7.5
Ⅰ. 기본순자산	4,043,692	4,043,692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471,970	2,161,507	310,463	14.4
Ⅲ. 순자산 조정	3,461,874	3,077,930	383,944	12.5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1조 3,014억 6,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60조 9,783억 3,900만원, 관리운영비 4,057억 4,600만원, 비배분비용 3,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36억 8,100만원, 비배분수익 689억 7,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9조 4,350억 1,800만원(18.2%) 증가한 61조 3,014억 6,300만원이다.

총 2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부세프로그램(57조 5,556억 1,500만원)과 재난관리프로그램(5,939억 9,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721억 3,800만원과 경비 1,336억 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100만원, 기타비용 2,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0,964,658	51,552,614	9,412,044	18.3
가. 프로그램 총원가	60,978,339	51,563,287	9,415,052	18.3
나. 프로그램 수익	13,681	10,673	3,008	28.2
II. 관리운영비	405,746	352,254	53,492	15.2
III. 비배분비용	33	5,700	△5,667	△99.4
IV. 비배분수익	68,973	44,123	24,850	56.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1,301,463	51,866,446	9,435,018	18.2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1,301,463	51,866,445	9,435,018	18.2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9조 2,831억 2,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9조 9,775억 3,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6,944억 700만원(7.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61조 3,014억 6,3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3,839억 4,400만원 발생하고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61조 6,119억 2,6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등 채원의 조달 61조 6,741억 7,8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채원의 이전 △622억 5,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839억 4,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9,283,129	9,116,209	166,920	1.8
II. 재정운영결과	61,301,463	51,866,445	9,435,018	18.2
III. 채원의 조달 및 이전	61,611,926	51,996,284	9,615,642	18.5
IV. 조정항목	383,944	37,081	346,863	935.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9,977,536	9,283,129	694,407	7.5

자료: 행정안전부

라.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으로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5.6억원 전출되었다.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일 반 회 계		전출 5.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521	555,598		38	6,677	53	0

주: 총계 결산 기준(세입은 수납액, 세출은 지출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② 재난안전통신망구축운영사업 등이 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사업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600억원이 감액(2,686억원 3,400만원→2,086억원 3,400만원)되었고, 재난안전통신망구축운영사업은 낙찰률 적용 등으로 200억원이 감액(1,703억 3,900만원→1,500억 3,9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사업, ② 지방세정보화추진사업 등이 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사업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96억 3,500만원이 증액(894억원 1,200만원→990억 4,700만원)되었고, 지방세정보화추진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98억 1,600만원이 증액(30억원 800만원→128억 2,400만원) 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이 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 받는 민간단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① 국민주도 사회적 문제해결 확산과 지능형 정부 구현을 통해 열린혁신 선도, ② 지자체 경쟁력 제고 및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 증진, ③ 지역특화 발전을 통한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 ④ 정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과학수사의 신뢰 제고, ⑤ 국민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⑥ 재난대응·안전역량 강화로 재난피해 최소화 등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방교부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①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성과를 검토한 결과,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 개선,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의 조정 등 기존 제도의 변화를 통한 재정력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하고 ② 기획재정부가 연도 중에 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로만 교부세 정산분을 교부·처리하는 현행을 개선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 지자체 교부액 정보가 공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③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정책사업 교부액의 43.5%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활용되어, 교부세 재원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고 상품권 발행규모가 큰 일부 지방자치단체 편중되어 교부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둘째, 재난복구사업과 관련하여, ① 연례적으로 재난대책비 사업 교부액의 70%가 미집행 이월되고 있으므로 교부 후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사업종료 시까지 복구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조속한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② 재해구호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강원동해안 산불피해시설 철거비사업과 포항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부하여 미집행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도록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더불어 ③ 풍수해보험은 최근 3년 간 가입률이 매년 감소

하는 추세이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가입률이 저조하므로 보험상품의 유인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설계 등을 통해 적정 가입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추진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진행 상황 및 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연례적인 이월 문제가 반복되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2019년도 종료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 중에 있으므로 구축완료 시점까지 지속적 사업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방교부세의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과 재원보장이다. 2019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현행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경우 내국세¹⁾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원이며, 해당 재원의 97%는 보통교부세, 3%는 특별교부세의 재원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특별교부세에 총액의 4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에 총액의 1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에 총액의 50%가 배분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교부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²⁾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원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 1)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로 관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득세(종합, 양도, 근로),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에는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에 대항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 소방안전교부세율은 2018년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되었다. 2019년도의 경우 소방직 국가직화 시기(2019.7.1.)에 대응하여 인상분 15%p(담배 개별소비세의 20%→35%) 중 절반만을 계상한 27.5%(기존 20%+7.5%)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

구분		목적	재원	
보통교부세		지자체의 기본 행정수행 경비 보장, 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 해소	(내국세의 19.24% 해당액 + 전(전)년도 정산액) ×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파악이 어려운 지방 현안 수요 충당	(내국세의 19.24% 해당액 + 전(전)년도 정산액) × 3%	40/10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지자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재정 운용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등		50/100
	재난안전	재난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위한 특별 재정수요 충당		10/100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자체 재산세·거래세 세수 감소분 보전	종합부동산세 총액 + 전년 차액 정산액	
소방안전교부세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국가직 소방직 인건비	담배 개별소비세의 45% + 전년 차액 정산액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의 2019년 집행액은 총 52조 3,081억원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2019년 집행액은 약 47조 6,206억원이다. 특별교부세 중 ① 지역현안특별교부세의 2019년 집행액은 5,889억원이고, ②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의 2019년 집행액은 1,472억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의 2019년 집행액은 3,838억원³⁾이다.

3)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 5,375억원 중 지방교부세법 미개정으로 소방직 국가직화가 2020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 1,537억원을 미교부 했다.

[2019년 지방교부세 예산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예산
	본예산	추경	집행액	
보통교부세	47,602,635	47,602,635	47,602,635	46,726,414
특별교부세	736,124	736,124	736,124	722,574
- 지역현안	588,899	588,899	588,899	578,059
- 국가지방협력	147,225	147,225	147,225	144,515
- 재난안전관리	736,123	736,123	736,123	722,573
부동산교부세	2,849,400	2,849,400	2,849,400	3,320,970
소방안전교부세	537,502	537,502	383,834	714,924
총 계	52,461,784	52,461,784	52,308,116	52,206,825

자료: 행정안전부

1-1. 재정분권 방안 이행으로 심화된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문제

가. 현 황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18.12)」을 수립하였으며,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19-’20)을 이행 중에 있다.

2019년도에는 재정분권 방안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율⁴⁾을 4%p(’18년 11%→’19년 15%) 인상되었고,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7.5%p 인상⁵⁾(’18년 20%→’19년 27.5%) 되었다. 이외에도 재산세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 종합부동산 세율인상(1.5% 인상) 등의 추진계획이 이행되었다.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이행내역]

구분	’19년		’20년 방안
	방안	이행결과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4%p 인상 (3.3조원 확충예상)	지방소비세율 11%→15%	지방소비세율 +6%p
소방직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5%p인상	소방안전교부세 20%→27.5%	소방안전교부세율 +10%p
국세:지방세 (비교: ’16년 76:24)	75:25	76:24	74:26

자료: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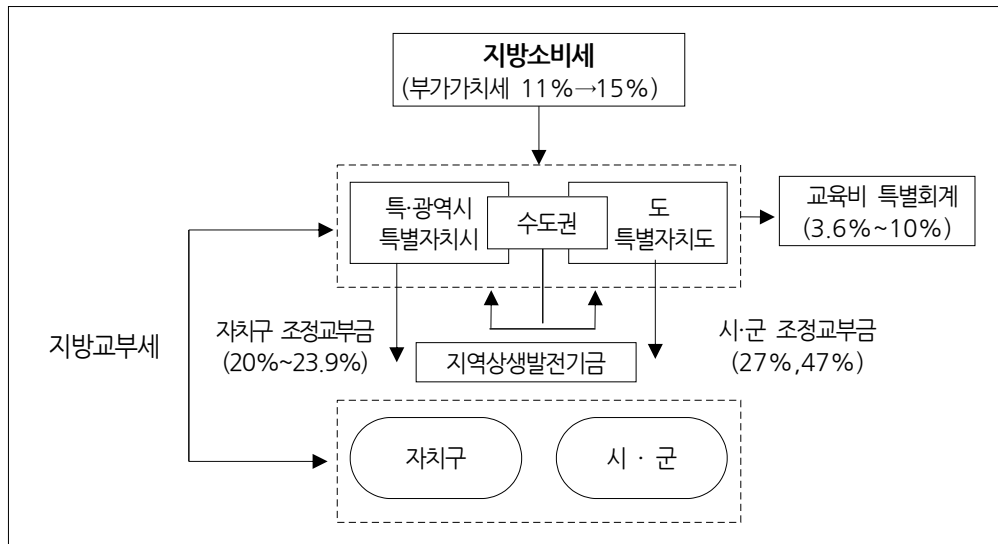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 4)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시·도세임.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하여 배분되며, 수도권 자치단체 지방소비세 세수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
- 5) 정부는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 소방직 국가직화 도입에 따라 2019년 예산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 당초 인상계획분인 15%p의 절반인 7.5%p를 반영한 27.5%의 세율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이 편성되었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지방세총액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보통세액 증대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 증가로 기초자치단체 재원 증가가 예상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액의 감소로 내국세의 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총액이 감소하고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간접적으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므로 수도권 지역은 지방소비세액의 35%분만큼 감소하고, 타 시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출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⁶⁾

[지방소비세의 정부 간 재정관계 구조]



지방소비세 인상방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었지만⁷⁾, ‘정부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는 지방재정 확대효과가 분명하고 지역별 가중치 적용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재정력 격차 심화문제는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⁸⁾

6) 지방소비세(수도권 : 비수도권)는 ① 시도 소비지수 적용=53%:47% → ②지역별 가중치 추가적용=30%:70%→ ③ 상생기금 출연 추가적용 = 22% : 78%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된다.

7) 임동욱·정재진(2005).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와 잠재적 갈등에 관한 연구(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pp.139-161.

8)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의 일종물이므로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역시 개별소비세 총액의

나. 분석의견

1단계 재정분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충에 초점을 둔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의하면 이행결과 지방세 3.3조원 증가로 2.9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순확충 효과를 기대했으며, 세수확충 결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5:25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도 이행결과를 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5조원 증가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7조원 증가하였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추진방안의 목표치(75%:25%)에 다소 못 미치는 76.4%:23.6% 수준이나, 자체재원의 증가액과 지방세 비중의 신장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 순확충 측면에서는 일정수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변화]

(단위: 조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¹⁾
지방 자치 단체 재정력	자체재원	지방세(A)	80.4	84.3	90.5
		세외수입(B)	26.0	25.8	26.6
	의존재원	지방교부세(C)	44.4	49.0	57.5
		국고보조금	47.4	50.6	61.6
		합 계	91.8	99.6	119.1
	자치단체 자체재원(A+B)		106.4	110.1	117.1
	통합재정자립도(평균)		52.0	51.6	49.6

주: 1) 2018년도까지는 결산액, 2019년도는 가결산액 기준임.

1.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의 경우를 자주재원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재정분권 방안의 핵심은 자체재원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자체재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함.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감소를 가져오고, 개별소비세 총액의 감소는 내국세 총액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교부세 배분 총액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인상액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근 5년간 국세 대 지방세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 세 (%)	2,178,851 (75.4)	2,425,617 (76.3)	2,653,849 (76.7)	2,935,704 (77.7)	2,934,543 (76.4)
지방세 (%)	709,778 (24.6)	755,306 (23.7)	804,063 (23.3)	843,153 (23.3)	904,604 (23.6)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지역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⁹⁾인 변이계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재정분권 추진방은 광역자치단체 세수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입 측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변이계수는 최근 3년간 큰 변동이 없는 반면('18년 1.3→'19년, 1.3), 같은 기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변이계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분권 전후로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 규모 역시 2018년도는 전년대비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재정분권 추진 이후 다시 확대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분석결과]

(단위: 백만원)

지역명	지방세액			자체재원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평균	106,283	113,896	120,655	177,109	184,623	192,200
변이계수	1.41	1.47	1.50	1.34	1.34	1.36

주: 1. 변이계수의 숫자가 클수록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변이계수는 일반적으로 0-1의 값을 가지나, 지자체 간 세입액의 편차가 심하고 분포가 편향됨에 따라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커져 1보다 큰 값이 도출됨.

2. 지방세액과 자체재원은 최종예산(총계) 기준임.

자료: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함.

9) 지역 간 불균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변이계수는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서로 다른 집단 간 산포도를 비교하는데 활용된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이 보고서에서는 변이계수가 격차분석이나 불형평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여러 연구에서 유사한 적용결과가 도출되는 안정적인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활용하여 재정력 격차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¹⁰⁾ 역시 최근 3년 간 지방세입의 격차는 확대되었으며('18년, 0.57→'19년, 0.6), 자체재원의 변이계수는 0.52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군 지역과 자치구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두 지역 모두 유사한 수준의 재정력 격차 심화 문제가 관찰되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자체재원) 지역별 비교]

(단위: 억원)

지역명	시·군			자치구			수도권			비수도권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평균	2,046	2,119	2,194	1,145	1,224	1,302	3,099	3,208	3,411	1,223	1,285	1,308
변이계수	1.35	1.36	1.39	0.60	0.59	0.61	1.05	1.06	1.05	1.31	1.31	1.35

주: 지방세액과 자체재원은 최종예산(총계) 기준임.

자료: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함.

'19년도는 재정분권 추진 초기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4%('18년, 11%→'19년, 15%),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7.5%('18년, 20%, '19년, 27.5%)만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를 주의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년도에는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인상되고('18년, 11%→'20년, 21%),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인상될 예정('18년, 20%→'20년, 45%)이다. 나아가 정부는 '22년까지 지방세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3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9년도 이행결과를 보면 효과적인 보완 장치 없이 재정분권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진방안 수립 시 재정력 격차심화 우려에 대해 기존의 재정형평화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¹¹⁾ 밝혔으나, 2019년도의 이행결과는 기존제도만으로 재정격차 완화기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0) 자치단체별 지방세입액을 주민등록인구 수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다.

11)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은 비수도권 시·도에 더 많은 세수가 배분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역시 수도권의 개발 이익의 일부를 비수도권에 환원하도록 설계되어 모두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에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심화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 개선,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의 조정 등 기존 제도의 변화를 통한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심화 방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1-2. 교부액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교부세 정산분의 교부·처리방식 개선필요

가. 현 황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지방으로 교부되는 것이나,¹⁾ 현실적으로 아직 징수되지 않은 당해연도의 내국세 결산액을 기초로 그 연도의 지방교부세 총액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당해연도의 내국세 수입 추계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편성된다.

회계연도 내 내국세의 추계액이 결산액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 간에는 차액이 발생한다. 중앙정부의 결산 후 동 차액을 차년도 혹은 차차년도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그리고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교부세 증·감정산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²⁾

교부세 정산은 정부의 세계잉여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결산 정산 후 세계잉여금 규모에 따라 교부세 정산분을 결정하여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4월경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교부결과]

(단위: 억원)

구분	'18년 교부액	'19년 교부액			증감액
		예산	정산분	계	
합 계	490,446	524,618	52,475	577,093	86,647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단,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35%를 재원으로 함.

2)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기획재정부가 연도 중에 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로만 정산분을 교부·처리하는 현행을 개선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 지자체 교부액 정보가 공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 국세 수입을 전망하고, 이 예측치에 근거하여 내 국세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예산으로 편성한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국세 수입전망과 실제 국세수입 차이를 세수오차라고 하며, 정부는 결산을 통해 이러한 세수오차와 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³⁾ 규모를 확인하고, 「국가재정법」 제90조⁴⁾에 의거하여 이 중 일부를 교부세 정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2019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에 의한 교부세 정산분 규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면 10조 5,292억원 규모이며, 지방교부세는 5조 2,475억원이다. 이는 당해연도 행정안전부 전체 교부세액 52조원의 10%를 초과한다.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정산액을 보면, 2017년도에 약 2조 3,000억원, 2018년도 3조 641억원, 2019년 5조 2,475억원 규모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확산 대응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19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300억원을 선지급하였다.

3) 재정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한 세수액을 초과해 징수되었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입(결산산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세입세출 외 국채상환)-차년도 이월액).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 90조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정산, 공정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사용함.

4)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같이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최근 3년 간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과 실교부액 비교]

(단위: 억원)

년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반영분			기타 정산분	지방자치단체 실교부액
	당초(A)	추경(B)	교부현액(A+B)	세계잉여금	
2017년	457,314	16,960	424,274	23,091	447,365
2018년	459,805	459,805	459,805	30,641	490,446
2019년	524,618	524,618	524,618	52,475	577,093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세계잉여금 발생 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정산분을 교부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예·결산자료에는 동 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프로그램의 성과자료나 예·결산 자료에서는 동 정산분이 누락된 교부세별 총액만 확인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가 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성과평가를 위한 투입비용과 결과를 명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국회의 예·결산 심의도 이에 근거를 두고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별로 결산 및 사업평가를 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역시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매년 교부액과 성과를 심의·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현재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예산만 동 프로그램의 예·결산 자료에 명시하고, 상당규모의 교부세 정산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의 일부로만 보고하는 것은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 지방 이전재원의 규모 파악이 용이하지 않게 하여, 국회 심사 및 사업평가의 체계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동 정산분을 교부하도록 하고 소관 예·결산 자료 및 지방재정 정보자료에 세계잉여금 처리에 의한 교부세 정산분을 별도로 명시하는 등 교부세 정산분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3.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운영의 문제점

가. 현 황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업과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며, 재정수요의 특성에 따라 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세부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예산현액 1,472억 2,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9년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47,225	147,225	147,225	147,225	1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정책사업 교부액의 43.5%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활용되어, 교부세 재원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고 상품권 발행규모가 큰 일부 지방자치단체 편중되어 교부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력이 필요한 분야(805억원), 지방행정·재정운용 실적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444억원), 시·군 자율통합 지원 등 의무 경비 지급(377억원)을 위해 활용되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2019년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목 적	내역 및 교부액	사업수	지원액
정책 사업	국가·지자체간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역점시책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5,072 · 일본 수출규제관련 인프라구축지원 6,000 ·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 5,000 · 지역경제 융복합상권 개발 4,000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4,000 ·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구축 3,000 ·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3,000 ·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 등 6개 사업 2,000*6 · 국민디자인 과제 활성화 1,500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 7개 사업 1,000*7	21	805
인센티브	지방규제혁신, 지방건전 재정 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17,000 ·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0 · 지방재정 확대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7,000 · 지방재정분석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3,000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3,000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 2,000 · 지방규제혁신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1,000 · 안녕캠페인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1,000 · 착한가격업소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400	9	444
의무 경비	시·군 자율통합 지원, 국가 행사 등	· 시군 자율통합 법정지원 16,685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지원 8,000 · 전국체육대회 지원 4,000 ·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지원 4,000 · 함양 산삼향노화 엑스포 지원 2,033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2,000 ·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1,000	7	377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3년 간 국가지방 협력수요에 대응하는 특별교부세의 내역별 교부비율을 보면, 우수 자치단체(재정운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교부액과 의무경비 교부액은 연도별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정책사업에 대한 교부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정책사업의 교부내역을 보면 2017년과 2018년 모두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창출, 정부혁신 등 국정 의제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교부되었고 평균 교부액은 26억원으로 사업별 교부액 편차가 크지 않다. 2019년도 정책사업 교부총액은 254억원 증가했으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350억원이 교부되면서, 주요 지원사업이었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50억원 감액) 등이 축소되고 21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20억원 미만으로 교부되었다.

[최근 3년 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정책사업	사업수	저출산 극복지원 등 14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등 21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21개
	사업별 교부액	최소 5억원~ 최대 88억원	최소 7.5억원~ 최대 90억원	최소 10억원~ 최대 350억원
	교부액	36,768(28.9%)	55,145(39.4%)	80,572(49.5%)
인센티브	사업수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6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14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8개
	사업별 교부액	최소 19.5억원~ 최대 140억원	최소 10억원~ 최대 150억원	최소 4,000만원~ 최대 170억원
	교부액	32,450(25.6%)	53,000(37.9%)	44,400(27.3%)
의무경비	사업수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5개	시군자율통합 법정지원 등 6개	시군자율통합 법정지원 등 7개
	사업별 교부액	최소 15억원~ 최대 275억원	최소 20억원~ 최대 166억원	최소 10억원~ 최대 166억원
	교부액	57,685(45.5%)	31,685(22.7%)	37,718(23.2%)
합계		126,903(100%)	139,830(100%)	162,690(100%)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350억 7,200만원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132개 지역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부되었으며, 이는 정책사업 수요에 대한 교부예산현액 806억원 중 43.5%를 차지한다.

[2019년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교부 지자체	지원비율	지원액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인천 본청 등 132개	2%	32,795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경기 성남, 화성, 수원, 용인	2%	2,277
합 계	136개	-	35,072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이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 교부액 350억 7,200만원 중 58%인 203억원이 5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많은 교부액을 받은 인천시는 총 사업비의 37%에 해당하는 13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1억원 미만의 교부액을 지원받은 75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총액은 22억 8,700만원이다. 또한 지원액 규모가 낮은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00만원~1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수준에 편차가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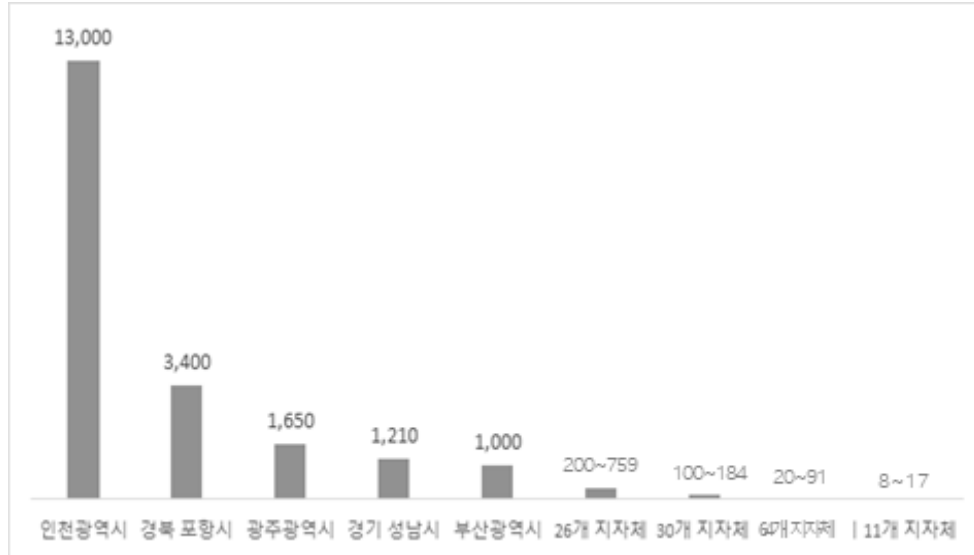
[2019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액 상위 5개 단체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전체 예산대비 비율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37
	광주광역시	4.7
	부산광역시	2.8
기초지방자치단체	경북 포항시	9.7
기초지방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3.5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발행액 규모에 대응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 비율(발행액의 2%)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교부액 차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성 상 발행·관리 비용¹⁾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발행 규모가 크다. 재정력이 높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발행규모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교부방식은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점에서 지자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해소라는 교부세 운용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은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여 지역 내 자영업체의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당초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 지원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자치단체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일부 자치단체에 편중된다는 점은 지자체 간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통상 발행액 기준 판매할인을 5%와 기타경비(발행 및 판매대행수수료 등) 4%가 소요되어 총 발행액의 9%에 해당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2~4%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행액의 5~7%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① 사업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혼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동 사업에 소요된 재정지출과 성과의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② 특별교부세의 경우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필요한 기본절차²⁾를 준수할 필요성이 없고, 세부 집행 내역이 국회의 심의·확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비율 및 금액 등이 행정안전부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사업추진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중단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한 적정 규모의 본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본예산을 통한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 확정, 대응사업비 마련, 보조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재난의 대비·예방, 대응·복구 등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난복구 정책으로서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피해시설 복구 및 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이나 물품 등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이재민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재난보험정책 등의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재난복구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주요 세부사업	사업내용	2019년 집행액
재난복구지원	재난대책비	· 사유시설 피해복구 지원 · 피해주민 생계안정지원 (재난지원금)	555,916 ¹⁾
	재난구호지원	· 이재민·일시대피자 구호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보관	3,341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 으로 보상체계 구축	14,832
	재난심리 회복지원	· 재난경험자 일상복귀 지원을 위 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384
	합 계		574,473

주: 1) 본예산 360억원, 예비비 5,199억 2000만원 편성으로 예산현액 555억 2,000만원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2-1. 재난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재난대책비 사업¹⁾은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해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에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생계 안정도모를 위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공공시설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목) 사업이다.

2006년부터 재난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 자체조사, 중앙합동조사, 중대본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복구비를 재난지원금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²⁾를 통해 재난지수에 맞는 등급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5,559억 2,000만원 중 5,559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했다.

[2019년도 재난대책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난대책비	36,000	36,000	519,920	555,920	555,916	99.9	0	4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734-300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 사업과 관련하여 ① 실제 재난 복구일정과 이월규모를 고려하여 예비비를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연도 후에도 사업종료 시까지 자치단체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 및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② 사업의 실제 성과인 복구 수준을 기준으로 성과 지표를 구축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연례적으로 재난대책비 사업 교부액의 72%를 이월하고 있으므로 교부 후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사업종료 시까지 복구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조속한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발생에 따른 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등은 예비비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 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시기가 지연³⁾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⁴⁾

3) 행정안전부는 예비비 집행의 경우 복구계획 확정 이후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하여 약 30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산 교부 시기가 지연된다고 설명하였다.

4) 사업 집행 절차를 보면, 재난발생 시 피해주민의 신고접수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합동조사단이 피해를 조사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복구계획이 확정(재난 발생 시점부터 약 28일 소요)되면 이에 따라 3일 이내 재난지원금 예산이 배정되어 지자체에 교부된다.

[사업 집행 절차]

응급복구 및 피해 조사	▶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및 시스템입력 (공공7일, 사유10일) ▶ (중앙정부) ① 이재민에게 재해구호물자 및 재해구호기금 지급 ② 피해현황 파악 및 국고지원 대상여부 결정
↓	
중앙재난피해합동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피해 확정보고 및 자체복구계획 수립(합동조사 이후) ▶ (중앙정부) 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② 재난지원금 선(先) 교부,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 ③ 자치단체 별 피해확정 및 복구계획 수립
↓	
부처 협의 및 복구 계획 심의확정	▶ (중앙정부) 부처 예산 협의 및 복구계획 심의·확정 통보
↓	
예비비 사용	▶ (기 재 부) 예비비 지출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배정 ▶ (중대본) 예산배정 후 지자체 교부
↓	
복구사업 시행	▶ (지 자 체) 다음연도 우기 전 목표로 복구사업 시행 ▶ (복구지원과) 복구사업장 관리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가 동 예산으로 수행한 복구지원 사업의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5,558억 9,500만원의 교부액 중 1,266억 4,600만원만 집행하고 4,260억 1,300만원을 이월하여 실행행률이 22.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특히 당해연도에 재난대책비를 교부받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이월액은 총 993억 4,500만원으로, 당해연도 교부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552억 4,000만원 중 재이월을 포함한 4,659억 6,0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2018-2019년도 재난대책비 집행내역 및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교부액 ¹⁾ (A)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2018	45,000	7,255	118,082	170,337	170,337	69,798	99,345	41.0
2019	36,000	0	519,920	555,920	555,895	126,646	426,013	22.8

주: 1) 재난대책비 사업 집행액과 교부액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외 운영경비 예산의 집행액 2,100만원에 의함.

1. 2018년도 교부액 중 993억 4,500만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 집행상 미집행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연도별 국고보조대상이 되는 복구시설과 교부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하여 예산현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행정안전부

실제 사업의 집행년도를 확인해보면, 공공시설 복구비를 재난대책비로 지급한 2018년부터는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되는 경우가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며, 연례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당해연도 교부액의 30% 이하만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재이월률도 2018년 23.5%로 상당한 수준이며, 2019년도 사업 역시 2020년도 4월 기준 평균 공정률이 6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유사한 수준의 재이월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재난대책비 이월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 실집행률 및 이월액]

(단위: 백만원)

연도	자치 단체명	교부액	당해연도 집행액	당해연도+1 집행액	당해연도+2 집행액	당해연도 집행률
2017	전북	165	122	0	0	73.9%
2018	경기	8,191	1,948	3,642	2020년도 정산 예정	23.8%
	강원	502	426	6		84.9%
	전남	22,926	17,738	4,291		77.4%
	경북	117,300	36,714	41,997		31.3%
	경남	10,565	2,471	7,603		23.4%
2019	강원	122,336	24,017	2021년도 정산 예정		19.6%
	전북	6,295	5,808			92.2%
	전남	44,644	37,438			83.9%
	경북	341,596	19,964			5.8%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일부 자연재난이 9~10월에 발생하여 4/4분기에 국고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졌으며, 재난복구 및 보상 사업의 특성 상 교부 후 지자체의 복구 일정 지연,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 사전 행정절차 소요, 지자체 추경예산 반영 시간 소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재이월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초단기간에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대책비를 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특화된 집행 및 사후관리 지침이 필요하며 과다한 미집행 이월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특히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교부연도 이후에도 사업종료 시까지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재난회복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도입하여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난대책비 사업은 재난지원금 지원(교부)시기 단축률(복구계획 심의·확정 후 3일 이내 교부결정 통지횟수)을 성과지표로 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2019년도 주요 사업 실적 역시 이에 근거하여 대규모 피해 발생 후 평균 8일 이내(비교: 2018년도 평균 15.6일)에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평균 22.5일 이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①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자의 생계안정 도모 및 시설피해의 복구라는 점, ② 특히 공공시설 복구사업의 경우 연내 실집행률이 낮아 교부일정 단축이 전체 복구일정 단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부시기 단축이 동 사업의 실제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태풍 ‘링링’ 및 태풍 ‘미탁’에 대한 재난대책비 예산의 경우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은 모두 96% 이상인 반면, 공공시설 복구사업의 실집행률은 각각 1.8%, 3.4%에 불과하다.

[2019년도 재난대책비 사업 하반기 교부내역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제13호 태풍 '링링'	제18호 태풍 '미탁'
재난기간	'19.9.6-'19.9.7	'19.10.1 ~ '19.10.3
복구계획 확정일	'19.9.30.	(1차) '19.10.10. (2차) '19.10.17.
재난대책비	76,573	458,473
실집행률 (공공시설복구 실집행률)	88.2% (1.8%)	8.6% (3.4%)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교부시기 단축 수준은 정책의 투입 측면만을 보고 있고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성과관리를 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2. 재난구호지원사업의 편성목적 및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등

가. 현 황

재해구호지원 사업¹⁾은 「재해구호법」 제4조, 제6조, 제13조²⁾에 의거하여 재난 시 이재민·일시대피자에 대한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비용과 구호활동 봉사자 지원 비용(급·간식비 등)에 대해 자치단체 경상보조(320-01)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구호지원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33억 4,100만 원을 전액 집행했다.

[2019년도 재해구호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해구호지원	1,980	3,341	0	3,341	3,341	1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재난구호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① 목적 및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사업 편성,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교부로 미집행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734-301

2)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재해구호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④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해 창고를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첫째, 시설복구 사업인 강원 산불 피해시설 철거비 내역사업은 사업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감안할 때 재난대책비 사업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에 포항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사업(본예산)과 강원 산불 피해시설 철거비 사업(추가경정예산)을 재난구호지원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강원 산불 피해시설 철거비 사업은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국고로 보조하여 피해지역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다.

이들 내역사업이 편성된 재해구호지원 사업은 구호활동 봉사자 등의 급·간식비와 소모용품, 재해구호물자(생활필수품 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적근거인 「재해구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지원내역 역시 두 내역사업의 내용과는 괴리가 있다.

[재난대책비 및 재해구호지원 사업 내역]

사업명	재난대책비	재해구호지원
지원 내역	<시설 피해복구 지원>¹⁾ ·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 주 생계수간인 농·어·임·염생산업 피해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지원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농·임·어업인의 자금 융자, 자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 · 사망자·실종자 등 피해주민 지원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구호> · 임시주거시설 제공 · 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 감염병 예방·방역활동 · 위생지도 · 장사(葬事)의 지원 · 심리회복의 지원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보관> · 재해구호물자(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비상식량, 기타 응급의약품 등 개별구호물품) 확보 및 보관

사업명	재난대책비	재해구호지원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기타 구호봉사자 운영지원 등
지원 비율	피해정도 및 지자체 재정여력을 감안, 국고보조율 50~70%	긴급구호 100% 재난대피시설 30% 강원산불 지역 시설철거비 50%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	· 「재해구호법」 제4조~제13조
사업 방식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주: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제작성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시설 철거비 지원은 재난구호지원 사업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 사업들은 피해시설 복구지원을 중점 추진하는 재난대책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동 사업의 법적 근거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명시된 국고보조 복구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재난대책비와 재해구호지원 사업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정책대상과 목적, 법적근거의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성과관리를 엄밀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동 내역사업의 편성방식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재난복구 및 구호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의 목적과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사업별 성과평가에 제약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시설 철거비 내역사업 및 포항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내역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부하여 미집행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도록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에 산불피해시설 철거비용을 국고보조(보조율 30%)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13억 6,100만원을 편성 즉시 전액교부하였고, 포항 다목적 지진 대피시설 신축비용(15억원)의 30%를 국고보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15억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6월, 10월) 교부하였다.

그러나 포항시는 교부받은 예산액의 88% 이상인 13억 1,2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실집행률이 12.5%에 불과했고, 강원도 역시 8억 3,700만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이 61.5%에 그쳤다.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A)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포항	1,500	1,500	1,500	188	1,312	0	12.5
강원	1,361	1,361	1,361	837	293	231	61.5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포항시는 사업계획 상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으나 시설물 건립부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강원도는 한국전력공사와의 보상 문제와 관련된 피해시설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피해시설 철거 집행이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낮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강원도 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교부를 검토할 시점에 이미 화재원인 조사종결 지연과 주민과 한국전력공사 간 보상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사업 일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포항시 역시 부지매입 과정에서 보상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으로, 두 경우 모두 교부 검토 당시 실집행가능성과 실제 지원 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년도 사업을 이유로 집행가능성에 상관없이 교부할 경우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내역의 면밀한 관리가 어렵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0년 5월 현재 동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집행률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집행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실제 복구 시점까지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3. 풍수해보험 사업의 적정 가입률 제고 필요

가. 현 황

풍수해지원 사업¹⁾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 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사업의 예산현액 188억 3,400만원 중 148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200만원을 불용했다.

[2019년도 풍수해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풍수해보험	18,834	18,834	0	18,834	14,832	78.7	0	4,002
풍수해보험 보험료지원	18,375	18,375	0	18,375	14,373	78.2	0	4,002
풍수해보험 등 운영	459	459	0	459	459	1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대한 국가 피해지원제도가 국가재정 운영의 부담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보험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목적물을 기준으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으로 구분되고,²⁾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이 가능하며 손해보상은 정액보상 또는 실손보상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가입 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최대 3년)도 가능하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734-302

2)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상가 및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아파트를 포함한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농·임업에 종사하는 온실소유자 혹은 세입자임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및 정부 지원 비율]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원 비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단체	(일반) 52.5~92% (차상위) 75~92% (기초수급) 86.25~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택	단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온실	개별	59%~92%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상가개별장	

자료: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 운용하고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계층에 따라 25%~67.13%까지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한 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전체 보험료의 52.5%~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도 기본지원율은 34%(국가 25%, 지방자치단체 9%)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자 부담분 55%의 최대 88%를 지원하여 보험료의 92%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율은 매월 변경이 가능하다.

나. 분석의견

풍수해보험은 최근 3년 간 가입률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실적 대비 가입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목표대비 적정 가입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풍수해보험의 최근 4년간 연도별 목표실적 대비 가입률을 보면, 온실보험은 2017년도에 목표가입률을 2%이상 하향조정후 가입실적이 목표가입률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주택보험은 반대로 목표가입률을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가입실적이 목표실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매년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9년도 가입률은 2017년도에 비해 6%p, 전년대비 1.3%p 하락한 18.9%로 나타났다.

한편, 소상공인 대상 상가·공장보험은 2018년 22개 시·군·구에서 2019년 37개 시·군·구로 대상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³⁾ 가입률이 0.4%에 불과하여 목표가입률인 5%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도별 풍수해보험 목표가입률 대비 실제 가입률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목표 가입률	실제가입률
2016	주택	20.0	22.4
	온실	7.0	4.2
2017	주택	22.0	24.9
	온실	5.0	7.2
2018	주택	24.0	20.2
	온실	5.5	7.6
	소상공인	5.0	0.15
2019	주택	25.0	18.9
	온실	8.0	9.1
	소상공인	5.0	0.4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이러한 가입률 저조로 연도별 실집행 결산내역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은 실집행률이 60%를 하회하였고, 2018년과 2019년 모두 70%대의 실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 풍수해보험 사업의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A)	교부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2015	19,245	11,494	11,494	0	0	59.7
2016	21,130	12,468	12,468	0	0	59.0
2017	19,027	18,494	18,494	0	0	97.2
2018	16,898	11,958	11,958	0	0	70.7
2019	18,375	14,373	14,373	0	0	78.2

자료: 행정안전부

- 3) 행정안전부는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상가·공장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8년에는 22개 시·군·구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던 것을 2019년에 37개 시·군·구로 확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① 풍수해보험의 특성 상 대규모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가입실적의 편차를 보이는데 2018년 이후에는 경주 지진(16년), 포항 지진(17년)과 같은 대형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② 재해 시 정부의 무상 복구지원(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로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이 재해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의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재해 여부에 따라 사후에 매년 보험가입률이 변동되어 가입률 제고 부진이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불어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풍수해보험의 설계와 유인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구매 결정의 핵심요인은 경제적 보상(위험보장) 또는 심리적 안정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⁴⁾ 이를 감안하면 풍수해보험의 구매결정은 물적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수준과 재해 위험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풍수해보험 및 홍수보험의 구매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도 과거 피해규모와 위험인식 정도, 정부지원 수준, 보험금, 보험제도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⁵⁾⁶⁾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반시민들은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하여 보험의 경제적 보상 기대와 위험 인지가 모두 낮은 수준이다. 특히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비례보상의 성격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부처에서 재해보상비 및 보험을 통해서도 온실이나 사업장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설계의 차별성이 높지 않는 한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보험설계 상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홍보방식의 개선 및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예산편성 시 제시한 계획을 충족하는 적절한 보험가입률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Gollier, Christian, (2003). "To Insure or Not to Insure?: An Insurance Puzzle,"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Theory, 28(1): 5-24., 28(1), PP.5-24.

5) Shao, W., Feng, K., & Lin, N. (2019). Predicting support for flood mitigation based on flood insurance purchase behavior.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4(5), pp.14-54.

6) 박창균·여은정. (2013). 국내 풍수해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문제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 35(3):41-63.

III

개별 사업 분석

1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의 문제점

가. 현 황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범죄 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²⁾하고, 출연 내역사업을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제도 개선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CCTV 통합관제센터지원 내역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31억 9,000만원 중 85.0%에 해당하는 27억 1,15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7,85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9회계연도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구축	3,340	3,340	0	0	3,340	2,861.5	85.7	478.5	0
CCTV 통합관제 센터지원	3,190	3,190	0	0	3,190	2,711.5	85.0	478.5	0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31-300

2) 동 사업의 초기 추진 시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시·군·구에 설치된 방법,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어린이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업 추진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진행 상황 및 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연례적인 이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29개 전(全)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비율: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30%, 그 외 기초자치단체는 50%)으로 추진되었으며, 2019년 5개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지방자치단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적]

(단위: 개)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지자체 수	34	27	33	29	22	19	18	16	5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 동 사업의 예산현액 31억 9,000만원 중 세입부족을 이유로 27억 1,15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며, 이 중 25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월한 4억 7,85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월한 1억 7,350만원을 합하면 총 6억 5,2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19년도 CCTV통합관제센터 지원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3,190	2,711.5	2,711.5	3,253	2,711.5	2,538	173.5	0	79.6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명	교부액	실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강원도 ¹⁾	2011.5	18,38	0	173.5
전라남도	700	700	0	0

주: 1) 강원도 평창군, 속초시, 양양군, 화천군과 전라남도 진도군을 포함한 5개 지자체에 국비가 교부되었으나, 행정안전부가 교부대상인 광역자치단체별 실집행 정보를 제공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집행액과 이월액은 확인이 어려움.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의 최근 5년 결산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집행률은 평균 약 69% 수준이었으며, 예산액의 24%~65%에 해당되는 금액이 연례적으로 이월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실집행액	이월액	이월률	불용액
2015	13,299	5,478	8,702	65.4	114
2016	12,690	8,371	5,503	43.4	330
2017	10,950	8,312	2,593	23.8	2
2018	10,212	6,943	3,253	31.8	16
2019	3,190	2,538	652	24.0	0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3년 간 이월사유를 보면 관제센터 구축 예정 장소였던 신축건물의 설계 변경에 의한 지연, 시·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착공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일례로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2018년도 사업이었으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연말에서야 관급자재 계약을 실시하여 2019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2019년도 강원도 화천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는 동 센터를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물에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건물 공사가 지연되면서 통합관제센터 구축 일정도 순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집행계획을 제출받고 이에 따라 국비를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면밀한 사업계획 부족 등 지자체 내부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이 이월의 주된 사유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보조금을 배정할 책임이 있다. 연례적인 실집행부진과 이월은 피보조단체의 사업계획과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실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계없이 8월에 예산의 83.1%를 교부하는 등 실집행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집행을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실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2019년도 종료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축완료 시점까지 지속적 사업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안전정보영상 인프라구축사업은 229개의 지방자치단체에 CCTV통합관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종료되었으며 행정안전부 내 사업관리 조직도 재편된 상태이다.

그러나 2018년 추진사업 중 전라남도 담양군, 2019년 추진사업 중 강원도 속초시, 화천군 및 전라남도 진도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20년도에도 사업이 진행 중(20.5월 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실적 및 현황]

(단위: 개)

사업연도		'17년	'18년	'19년
지자체 수	구축목표	18	16	5
	진행 중 사업 ¹⁾	-	1	3

주: 1) 2020년 5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실행이 진행 중이므로 구축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고, 종료 시점에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제3항¹⁾에 근거하여 3개의 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이 중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에 활동이 종료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정책기획위원회 및 각 특별위원회를 각각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③ 위원회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기 능	위원구성 ¹⁾ (현원)	2019년 집행액
정책기획위원회	- 국정과제 조정·추진 및 관련 회의 지원 -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 분야별 정책현안 연구	100명 이내 - 현 98명	4,181
-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²⁾	- 조세제도·조세행정에 관한 개혁과제 발굴 및 개혁방안 마련 - 예산 및 재정관리에 관한 개혁과제 발굴 및 개혁방안 마련	30명 이내 - 현 28명	237
-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 신남방정책 기본방향·추진전략 수립 - 신남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선정 - 신남방정책 부처별 추진범위 조율	20명 이내 - 현 8명	2,165
-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 소득주도성장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평가 - 일자리 창출, 임금 근로자 소득개선 및 임금격차 해소	30명 이내 - 현 28명	2,775

주: 1) 현원은 2019년 12월 기준이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종료 당시(2019.2) 현원임.

2)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8.4~2019.2임.

자료: 행정안전부

2-1.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은 행사를 위한 전용 및 조정 지양 필요

가. 현황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¹⁾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경비 성격의 사업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소관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 사업²⁾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 사업³⁾ 역시 신남방정책 대상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증진과 소득주도성장 관련 현안 연구 및 정책 공감대 확산이라는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경비 성격의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2019년 예산현액 47억 6,500만원 중 4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을 이월했으며 5억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현액 25억 3,400만원 중 21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이월했으며 3억 5,300만원을 불용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 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 예산현액 35억 6,800만원 중 2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9,500만원을 이월했으며 6억 9,800만원을 불용했다.

[2019회계연도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4,507	4,507	258	±568	4,765	4,181	87.7	75	509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341	341	9	0	350	237	67.7	0	113
신남방정책특별 위원회 운영	2,534	2,534	0	±135	2,534	2,165	85.4	16	353
소득주도성장특별 위원회 운영	3,568	3,568	0	±163	3,568	2,775	77.8	95	698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 1) 코드: 일반회계 7035-300
- 2) 코드: 일반회계 7035-305
- 3) 코드: 일반회계 7035-304

나. 분석의견

정책기획위원회와 소관 특별위원회는 연례적으로 당초 계획하지 않은 행사와 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 전용 및 조정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향후 불요불급한 전용·조정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는 2019년 총 예산액 106억 900만원 중 12.3%인 8억 6,600만원을 전용 및 조정하여 집행하였다. 내역을 보면 주로 예산편성 당시 계획하지 않은 국내·외 행사개최 및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조정이 주요 사유이다.

먼저 정책기획위원회는 당해연도 예산확정 이후 결정된 사무실 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을 공사비로 전용(2억 100만원)하였으며, 조정 내역의 대부분은 국제행사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로 편성된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집행(1억 4,900만원)한 경우이다. 기타 정책연구용역 및 기관 물품관리 대금과 공용차량 임차료 등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세목을 조정(2억 300만원)하여 집행하였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신남방정책 대국민캠페인 광고 및 위원회 브랜드 이미지 홍보영상 제작 등을 위해 회의체 운영경비 및 임차료를 조정하여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기타 신남방정책과 위원회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용역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집행하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역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제컨퍼런스(주제: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인터콘티넨탈호텔 코엑스, '19.12.03.) 공동 주최를 위한 경비 2억 1,200만원 집행을 위해 1억 9,500만원을 조정하였다.

[정책기획운영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 예산 전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조정사유	조정내역	금액
정책기획 위원회	사무실 이전 비용충당	· 전용 : 일반수용비·여비 → 공사비	201
	홈페이지 유지보수	· 조정 : 일반수용비 → 관리용역비	20
	국제세미나 대행용역 계약	· 조정 : 일반수용비·임차료 → 일반용역비	131
	정책연구용역 계약	· 조정 : 일반연구비→정책연구비	21
	국제세미나 부대비용	· 조정 : 임차료 → 일반용역비	18
	내부행사 추진 및 물품 관리 대금지급	· 조정 : 임차료 → 시설장비유지비 · 조정 : 임차료 → 일반용역비	62
	Inclusive Korea 행사추진	· 조정 : 일반수용비·공공요금 및 제세 → 임차료	87
	공용차량 임차대금	· 조정 : 일반용역비 → 임차료	4
	주요행사 참석여비	· 조정 : 국외업무여비 → 국내여비	4
	PC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조정 : 일반용역비 → 일반수용비	3
	회의수당 지급	· 조정 : 일반용역비 → 일반수용비	2
신남방정책 특별 위원회	신남방정책 광고 등 홍보사업	· 조정 : 일반수용비·임차료 → 일반용역비	166
	신남방정책 및 위원회 소개 홍보물 제작	· 조정 : 임차료 → 일반수용비	74
	기타운영비	· 조정 : 공공요금 및 제세 → 기타운영비	2
소득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 조정 : 일반수용비·임차료·시설장비유지비 →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165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각 특별위원회들은 정부의 주요 현안 검토 및 사회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국정현안에 대한 적시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조정을 통해 집행한 주요 내역을 보면 ①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위원회 회의 수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은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산이 가능했던 부분으로 당초 예산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편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② 정책기획위원회가 하반기에 개최한 소규모 국제세미나와 연말에 집행된 신남방정책위원회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영상 제작 등은 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했던 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더불어 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 결과적으로 일반수용비 2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타 비목에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조정하였고, 임차료와 일반용역비 역시 이와 같은 조정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집행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8년도 결산 당시에도 예산현액의 15.9%인 6억 1,900만원을 전용·조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당해연도 집행내역을 보면 이에 대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불요불급한 경비 집행을 위한 예산변경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2.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집행관리 개선 필요

가. 현황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¹⁾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 사업²⁾,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 사업³⁾에는 각 위원회가 정부의 주요 정책의제를 감안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일반연구비(260-01)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700만원을 포함한 20억 5,800만원이며, 이 중 15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600만원을 이월했으며, 3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 연구용역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정책기획위원회	1,000	258	1,258	914	75	268
재정개혁특별위원회	0	9	9	9	0	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40	0	240	205	16	19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560	0	560	376	95	89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7035-300

2) 코드: 일반회계 7035-305

3) 코드: 일반회계 7035-304

가. 분석의견

정책위원회와 소관 특별위원회는 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의 85% 이상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입찰 하도록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⁴⁾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 용역에 대해 경쟁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 연구용역의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전체 과제의 96.1%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2019년도에도 87.0%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계약방식]

(단위: 건)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과제 수	계약방식		과제 수	계약방식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정책기획위원회	23	21	2	29	27	2
재정개혁특별위원회	13	13	0	-	-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	2	0	5	4	1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3	13	0	20	16	4

자료: 행정안전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경우가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적시에 대응 가능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의 신속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과제 46건 중 경쟁입찰 방식에서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는 6건에 불과하다. 또한 위원회에서 진행한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등은 내용상 집행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개별 현안과제에 대한 대안의 적시성에 관해서는 위원회 위원 및 민간 자문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위원회 별로 분야별 전문위원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 정부부처의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분석과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례적으로 연구용역비 집행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용역비의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집행 관리의 측면에서 유사한 규모의 연구용역비 이월과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도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정책기획위원회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14개 과제의 이월액 2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5,800만원이다. 당해연도에도 5개 과제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7,500만원이 이월된 상황이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도 연도말에 발주된 과제 5건으로 인해 1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19년도 연구용역비 예산현액의 21.3%에 해당하는 2억 6,800만원을 불용했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예산현액의 15.9%인 8,900만원을 불용했다.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비 총 불용 규모는 3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7,40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9회계연도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 연구용역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정책기획위원회	1,000	258	1,258	914	75	26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40	0	240	205	16	19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560	0	560	376	95	89

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운영이 2019년 2월에 종료되어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음

자료: 행정안전부

더불어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목적은 현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정관리 및 정책 어젠다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2019년도에 수행된 연구 중 일부는 이러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례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일부는 최종보고서에 연구요약문 부분만 수록된 상태로 연구목적인 한반도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제시 근거와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는 연구용역과제의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구용역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과제 검토·선정, 과제 관리를 충실히 수행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역공동체 일자리 내역사업은 취업취약계층¹⁾의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²⁾의 내역사업이다.³⁾ 동 사업은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예산액 전액이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율은 50%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현액 530억 2,700만원 중 506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1,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공동체일자리	40,947	60,832	0	60,832	58,420	96.0	0	2,412
지역공동체일자리	33,142	53,027	0	53,027	50,615	95.4	0	2,412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⁴⁾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 자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단기적인 생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취업취약계층은 ① 저소득층(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④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 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⑫ 노숙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2)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31-300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역사업과 마을기업 육성내역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변경과 함께 한 개 세부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이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내역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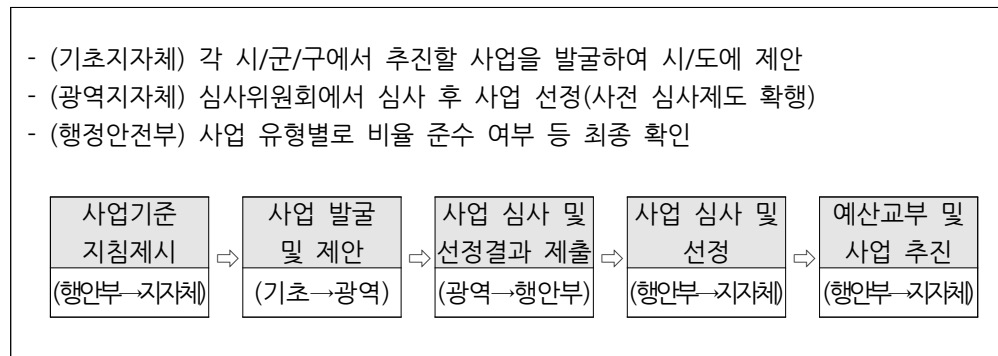
4)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다. 2019년도 기준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5%는 1,889,234원이다.

계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와 연계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4개월(3~6월), 하반기 6개월(7~12월) 총 10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임금기준은 시간당 8,3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수준(1일 8시간 기준 66,800원)이며, 1일 8시간 이내이면서 주 4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⁵⁾으로 한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심사·선정하여 제출한 결과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 예산을 교부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 및 역량제고를 통한 취업연계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일자리 비율 확대 및 참여자 기술습득 기회제공 강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의 종료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신설되었다.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 공동체적 마을 일자리 확립 및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이전의 희망근로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5) 1일 5,000원 이내 간식비 등은 별도 지급되며, 2019년 4월에 당초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사업지침을 변경하였다.

동 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지원형 및 지역공간개선형 등 4대 유형⁶⁾으로 구분되며, 해당 유형별로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선정 결과를 보고할 때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유형별 지원자 비율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한다.

그런데 2019년도 유형별 참여인원 현황을 보면, 취업연계성이 가장 높은 지역기업연계형 사업의 경우 참여인원이 793명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반면, 단순 노무 중심의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에는 56.7%에 해당하는 9,962명이 참여하였다.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유형별 인원 및 비율]

(단위: 명)

유형	'19년도 사업내역 예시	참여인원 (비율)
【1유형】 지역자원활용형 (지역특산물 상품화 등)	· 체험먹거리 단지 조성, 산채 재배단지 조성 등 ·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불법광고물 폐현수막 재생사업	5,587 (31.8%)
【2유형】 지역기업연계형 (공동작업장 운영 등)	· 공방(목공예품 등) 공동작업장 사업 · 희망일자리 발굴단 사업	793 (4.5%)
【3유형】 서민생활지원형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등)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다문화자녀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1,227 (7.0%)
【4유형】 지역공간개선형 (지역 시설활용사업 등)	· 공원 및 도심 내 화단조성 · 보행자도로 보도 블록 정비 · 산책로·꽃길 조성 및 정비	9,962 (56.7%)
합 계		17,569 (100%)

자료: 행정안전부

6) 지역자원활용형은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자원재생 사업 등을 포함하며, 지역기업활용형은 공동작업장 운영,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서민생활지원형의 경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사업이며, 지역공간개선형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지역공간 개선형 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꽃길 조성, 도로 정비, 산책로 정비 등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및 2019년도에 실시된 희망근로사업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지역공간개선형 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공공근로사업 내역 비교]

지역공간개선형 일자리사업	2019년도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서울시 사례)
· 공공시설 주변 화단 조성 · 산림·해안가 쓰레기 수거 · 전통시장 주변 환경정비 · 주요산책로/꽃길 정비 · 공공체육·공원 환경정비	· 공공시설 주변 화단 조성 · 산림·해안가 쓰레기 수거 · 전통시장 주변 환경정비 · 주요산책로/꽃길 정비 · 공공체육·공원 환경정비	·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 · 주요산책로/꽃길 정비 · 서울대공원 주변환경 정비 · 초등학교 등하교 지도 ·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최근 3년 간 유형별 일자리 비율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취업연계성이 높은 유형의 비율확대 등 유형별 비율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기업 연계형과 서민생활 지원형 사업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지역공간 개선형 일자리의 비중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동 사업의 목표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유형별 일자리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2017	11,638	3,246(28%)	575(5%)	1,057(9%)	6,760(58%)
2018	13,271	3,964(30%)	803(6%)	1,058(8%)	7,446(56%)
2019	17,569	5587(32%)	793(4%)	1,227(7%)	9,962(57%)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사업 참여자의 고용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전자정부지원 사업¹⁾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부처 간 연계 및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869억 4,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자정부지원	86,949	86,949	0	0	86,949	86,949	0	0

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²⁾에 따라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사업의 추진 절차에 따라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31-500

2)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화사업 중에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총 예산은 지원사업 예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5개 분야, 21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① 범정부 공통인프라 구축 분야의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국가 기준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7개 과제에 332억 9,200만원, ② 첨단기술 도입분야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인공지능기반 민원신청시스템 구축 2개 과제에 56억 7,100만원, ③ 다수시스템 융복합 분야의 행정서віт 통합제공,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등 5개 과제에 275억 4,500만원, ④ 정보보호 분야의 인공지능 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등 3개 과제에 142억 4,200만원, ⑤ 국정·현안 과제 해결지원분야의 데이터 기반 통합지원봉사 서비스 확대, 청와대 업무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4개 과제에 64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9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목록 및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액	실집행액
'19년 완료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ISP	행안부	800	680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대비실	2,500	2,268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권익위	7,008	6,956
'20년 이월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2차 구축	행안부	5,853	4,056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1차)	국토부	5,833	4,254
	인공지능 기반 병무 민원신청시스템 구축	병무청	1,536	845
	CIQ정보공유시스템 전면 개편	관세청	2,050	893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시스템 구축	행안부	3,677	2,140
	공공자원 개방 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등	2,758	1,245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행안부	2,253	1,243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권익위	3,307	1,992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4차)	행안부	2,256	1,663
	e시스템 고도화	행안부	5,148	3,707
	데이터 기반의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축	행안부	650	386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1차)	환경부	2,254	1,216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2차 구축	행안부 등	6,459	4,616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1차)	행안부	7,568	4,389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구축	보훈처	1,045	700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2단계3차)	행안부	7,390	4,513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2단계)	외교부	7,634	4,806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행안부	6,370	3,735
합 계			84,349	58,779 (69.7%)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미집행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이월 사업의 50%가 국회 예산심의 당시 ISP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인식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업제안 혹은 수요를 받아 한국정보화진흥원 하의 전자정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처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한다.

2019년도에 이러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1개 과제의 집행 현황을 보면 2개 과제는 연도 말에야 계약이 체결되었고, 전체 사업의 실집행률은 69.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예산액의 30%에 가까운 255억 7,100만원이 미집행 이월되었으며, 21개 중 18개 과제가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2019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한국정보화진흥원)					
	예산액 (추경기준)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전자정부지원	86,949	86,949	86,949	61,169	25,571	209	70.3
직접사업비	84,349	84,349	84,349	58,779	25,571	1	69.7

주: 1. 전자정부 지원사업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직접경비(기반조성비)도 포함되며, 실제 사업 추진 소요비용인 직접사업비를 기준으로 보면 실집행률은 69.7%임.

2.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년 10월에 최종 정산예정으로 집행액은 잠정적 금액이라고 설명함.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대규모로 추진되고 복잡성을 갖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과제 특성 상 적정 사업기간 확보 의무화 문제와 조달과정의 유찰 등에 의한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분기별 계약현황을 보면 3, 4분기에 추진과제의 51.8%가 집중되고 있고 10월 이후 체결되는 과제들이 특별한 과제별 특성이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 일정계획 및 공정률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분기별 계약현황]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17년	-	17개	12개	4개	33개
2018년	1개	10개	14개	2개	27개
2019년	1개 (2개)	9개	9개	2개	23개

주: 2019년 1분기에 계약된 3건 중 2건은 2018년도 사업임.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2019년 10개의 신규과제 중 이월된 7건은 모두 2019년도 국회 예산심의 당시 ISP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검토 당시 ISP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지원과제로 선정하여 예산안에 편성하면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제약이 생기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으나,³⁾ 행정안전부는 당초 계획대로 동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이 모두 2019년도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액의 64%가 이월되어 2020년도 10월에서야 완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주의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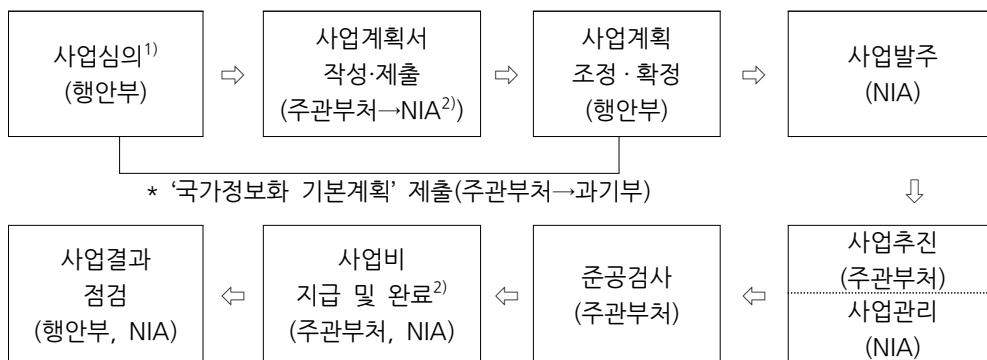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 선정 시 연내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여 선정 및 적정예산을 교부하고, 출연기관 등의 사업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부처 사업인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특성 상 동일 과제가 연도별로 다른 소관부처의 다른 사업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총 사업비 계상 및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27-29.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사업계획을 조정 및 확정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되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부처이다. 또한 각 주관부처에서는 별도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제출하고 과기부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전자정부 지원사업 추진절차]



주: 1)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됨.

2) NIA(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의미함.

1. 주관부처가 준공검사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비 지급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제작성

그런데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각 주관부처가 자체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제출하나, 행정안전부가 사업계획을 조정 및 확정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업관리를 하는 구조로 책임주체가 명확하여 일부 총사업비 관리부분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을 포함한 정보화시스템구축 사업은 상당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통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리된다. 이 때 전자정부 사업의 경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계상 시에도 BPR/ISP의 수립비용과 실제 시스템 구축비용 등이 함께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 중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ISP/BPR 수립 이후 부처 자체 사업으로 구축되거나, 부처 자체 예산으로 ISP를 수립한 후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구축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과제 중 환경부의 ‘국가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 구축’을 포함한 3건이 ISP수립은 부처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추진과제 중 부처사업으로 ISP수립한 사업]

(단위: 백만원)

주관기관	과제명	ISP수행기간	예산액
환경부	국가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 구축	’18.5~’18.7	2,254
국토교통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17.9~’18.8	5,833
관세청	CIQ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18.4~’18.8	2,206

자료: 행정안전부

위의 사례와 같이 ISP수립 부처와 실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 부처가 다를 경우,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 사업에서 총사업비를 확인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동 사안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서도 동 내역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즉,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ISP는 이전에 각 주관부처의 자체 재원으로 수립된 경우, ISP 수립비용이 총사업비 계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대로 ISP는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수립되었으나 이후 시스템 구축사업은 부처가 자체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한 사업비 계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당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의 특성 상 과제별 정확한 사업비의 계상이 불가능하면 재정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정보화사업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총사업비를 중심으로 각 정보화시책에 따른 사업들을 관리함으로써 국가정보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일한 전자정부 사업이 연도별로 다른 부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모색하고 동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은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내진성능평가비 60%, 인증수수료 30%)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수준과 민간자부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22억 5,000만원 중 19억 2,100만원(85.4%)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4,530	8,730	570	±2,250	9,300	8,790	94.5	510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2,250	2,250	0	±2,250	2,250	1,921	85.4	329

자료: 행정안전부

[2019회계연도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의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교부액(A)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2,250	1,921	1,921	64	281	3.3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731-307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미집행 이월이 발생한 데 대해 ①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회성 교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필수적인 민간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유인구조 재설계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의 비목변경에 따른 지방비 확보 지연, 민간참여 저조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교부하여 미집행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므로(실집행률 3.3%)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예산의 85.4%에 해당하는 19억 2,100만원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²⁾에 교부하였으나 이 중 6,400만원만 집행되고 15억 7,000만원이 미집행 이월되었다. 불용액은 2억 8,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3.3% 수준이다.

[2019회계연도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의 교부 및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부일	교부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A/B)
서울특별시	11.25	94	43	50	0	46.3
부산광역시	6.7	176	0	176	0	0
대구광역시	6.7	117	0	117	0	0
인천광역시	7.5	15	0	15	0	0
광주광역시	6.7	45	0	45	0	0
대전광역시	6.7	18	0	18	0	0
울산광역시	6.7	54	8	46	0	15.2
세종특별자치시	7.26	23	0	23	0	0
경기도	7.5	324	7	249	69	2.1

2) 강원도는 교부 미신청으로 미교부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부일	교부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A/B)
충청북도	6.7	8	0	8	0	0
충청남도	6.7	144	6	40	98	4.2
전라북도	6.7/10.7	122	0	8	114	0
전라남도	6.7	86	0	86	0	0
경상북도	6.7	342	0	342	0	0
경상남도	6.7	311	6	305	0	1.9
제주특별자치도	7.26	45	0	45	0	0
합 계	-	1,921	64	1,570	281	3.3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320-01목)으로 (국비 보조율: 내진성능평가비 60%, 인증수수료 30%) 편성되어 민간자부담이 내진성능평가비의 경우 40%, 인증수수료 7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으로 민간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나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이 가능하도록 5월에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로 비목을 변경하였고, 당해연도 9~10월경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칭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였다.³⁾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비목 변경 및 이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집행률 저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방비 확보 후 실집행까지 기본 행정소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 과정의 절대공기(5~6개월)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는 교부 결정 당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 지방자치단체에 6~7월경에 당초 계획액의 대부분을 교부하였다.

3) 경상북도만 예외적으로 2019년 4월에 대응 지방비를 확보하였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관리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교부해야 하며,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위와 같은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의 교부방식은 동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방비 확보가 10월 전후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인 6~7월경에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사안의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전검토에 따라 비목을 설정하고 지방비 확보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함으로써 교부액의 97% 이상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민간참여 저조로 인증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면밀한 원인 분석에 근거한 사업의 유인 구조 재설계와 홍보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도에 경주·포항 지진 이후 지진이 실재적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내용은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에서 안전한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지진에서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도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실제 규모 5.0이상의 대규모 지진발생 지역인 경상북도 및 지진을 경험한 전라남도의 집행이 전무하며, 경상남도 역시 실집행률이 1.9%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동 사업의 특성상 민간 건물주가 인증평가를 실시해야 지원이 가능하나, 대국민 홍보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홍보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의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고보조를 하는 것은 동 법령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진의 위험성을 경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여 실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2020년 예산에는 홍보예산 2억원을 별도로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년도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사업 교부지역별 특성]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액 ¹⁾	'17-'19 지진빈도 ²⁾	민간 자부담 비율(%) ³⁾	
			내진성능평가	인증수수료
서울특별시 ⁴⁾	43	0	10	40
부산광역시	0	0	10	40
대구광역시	0	0	0	0
인천광역시	0	0	0	0
광주광역시	0	0	10	10
대전광역시	0	0	0	0
울산광역시	8	0	10	40
세종특별자치시	0	0	10	0
경기도	7	0	10	40
충청북도	0	0	40	40
충청남도	6	0	0	40
전라북도	0	0	0	10
전라남도	0	1	40	70
경상북도	0	13	0	0
경상남도	6	2	0	40
제주특별자치도	0	0	10	40

주: 1) 집행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비교부액 실집행기준임.

2) 지진발생빈도는 규모 3.0이상 지진에 한정하며 기상청 날씨누리 웹페이지(국내지진목록)에서 '17.1.1.~'19.12.31. 기준 지역 발생만을 집계함.

3) 민간자부담비율은 2019년도 기준으로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율이 변경되어 5월 현재 기준과 다소 상이함.

4) 서울특별시는 기본적으로 지방비 30%를 지원하나 구별로 추가지원이 있어 민간자부담비율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 자치구 따라 평가비용 10%, 수수료 40%보다 낮을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민간참여의 저조문제는 동 사업의 유인구조 차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 건물주의 입장에서 5~6개월 간 시간과 물자를 소요하여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건축물의 시장가치 인상 등 실익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기본적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비용 30%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5층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약 300만원의 자부담이 예상된다.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불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소요한 자부담 비용은 전액 매몰비용이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도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투입대비 편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동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낮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일정기준 건축물에 대한 인증 의무화 및 인증을 받은 건물주에 대한 후속 인센티브 방안 등 사업방식 변경과 추가적 조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희망근로 지원사업¹⁾은 고용·산업위기지역²⁾ 및 특별재난지역³⁾의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예산현액 1,188억 9,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희망근로 지원사업	0	77,123	41,771	0	118,894	118,894	1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해 일시적 지표개선에서 나아가 합리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2018년에는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으로 121억 4,900만원(국고보조율 80%)이 편성되어 고용위기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이후에 목적예비비 245억 1,600만원(국고보조율 90%)을 배정하여 2차 사업이 추진되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일반회계 : 3131-302

2)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창원시(진해)·거제시·통영시·고성군

3) 강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2019년에도 1월에 목적예비비 417억 7,100만원(국고보조율 90%)을 배정받아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동 사업을 신규로 추진⁴⁾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71억 2,300만원(국고보조율 90%)을 편성하여 2차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산업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모두 목표인원을 상회하는 인원이 참여하고 목표에 준하는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업 목표 대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8년 및 2019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실적현황]

(단위: 명)

구분		대상지역	사업기간	목표인원	실적(참여인원)
2018 년도	추경예산	고용위기지역 8개	'18.7~'18.12	1,910	2,781
	예비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 기대응특별지역 9개	'18.12~'19.1	10,379	10,770
2019 년도	예비비		'19.3~'19.5	9,901	10,652
	추경예산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9개, 특별재난지역 5개	'19.7~'19.12	13,949	16,00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그러나 참여인원과 사업기간 내 공공일자리 수는 단기지표 개선의 효과일 뿐 실질적 정책성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 사업의 성과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재진입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2009년과 2010년도에 이루어진 동 사업의 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참여인원과 집행률을 통해 알 수 있는 단기 소득보전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① 농촌 일손돕기 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 파견 사업 등은 노동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었고,⁵⁾ ② 참여자 이력분석 결과 당초 목표 집단인 취약계층보다 추가소득을 원하는 비경

4) 2019년에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규사업으로 추진됨.

5) 일례로 농촌지역은 일손이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 사업에 대거 몰리면서 농촌지역 임금을 상승시키고 동시에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농가의 불만이 표출되었으며 파견인력도 해당업체의 기존 인력과의 처우 및 하는 일에 대한 마찰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음.

제활동인구의 참여율이 더 높았으며, ③ 희망근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 일자리가 약 20% 감소하여 사업효과를 상쇄했다. 또한 ④ 준토목사업 성격의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빈번한 산재로 이후 산재보험료 요율인상의 요인이 되었으며, ⑤ 대규모의 일자리 사업이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되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 탈진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⁶⁾

정책추진 시기의 차이가 있지만, 2019년도 실집행내역을 보면 2010년도와 사업내용(일손돕기, 환경미화 등)이나 정책대상 등 사업설계에 차별성이 높지 않고 상황적 조건도 유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 결과는 최근 희망근로 지원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2019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정부부처 합동)’에 의하면 직접 일자리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이 60.1%였고, 많은 직접일자리사업이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반복참여자를 양산(반복참여자 비율 39.9%, 취업률 평균 16.8%)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직접 일자리사업의 공통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성과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한시사업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성과평가와 관리체계도 결여되어 있어 이러한 사안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책사업이 면밀한 평가와 피드백, 구체적 목표와 추진·실천전략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매년 면밀한 정책수요와 목적에 근거한 사업설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목표인원과 일자리 수를 설정하여 배분하고 지역별로 촉박하게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환경정비사업 중심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제공되는 측면이 있다.

6) 윤윤규, 2011.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이광석·원종학, 2011.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희망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4): 55-81.

박찬임, 2009. “희망근로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2019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지자체명	사업내용	집행액
울산 동구	공공체육시설 환경정화, 청사 주차장 관리,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정비, 공원 환경 정비	4,974
전북 군산	골목상권활성화지원, 어린이 하foot길 안전도우미사업, 공공시설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13,589
전남 목포	산림쓰레기 수거·환경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질서 단속, 소하천 환경 정화사업	20,843
전남 영암	관광지 안내 및 환경정화, 체육시설물 환경정비, 공공도서관 업무지원	11,305
전남 해남	산불예방 및 감시원 운영, 전통시장 주변 환경정비, 해양쓰레기 수거, 하천 정비사업	7,524
경남 창원	농산물 가공지원사업, 꽃동산 조성 등 환경정비,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	32,878
경남 통영	공원관리사업,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사업, 생활쓰레기 배출 관리	4,109
경남 거제	산림휴양지 환경정비, 공영주차장 관리·환경정비, 공원·녹지 환경정비	10,837
경남 고성	엄홍길전시관 및 도시공원 녹지조성, 생활주변 환경정화, 농촌 용·배수로 및 소공원 정비	2,167
강원 고성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산림재해 예방, 화진포 관광지 환경정비	2,741
강원 속초	체육시설 환경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공원 내 제초	4,162
강원 강릉	폐자원 재활용 선별, 마을주변 환경정비, 산림훼손 감시 녹지대 유지관리	4,574
강원 동해	공단 및 도로변 제초작업·쓰레기수거, 관광지주변 시설정비	3,300
강원 인제	공공체육시설 개선·안전사고 감시,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계도	1,124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단기적 일자리 수 증가 및 취약계층의 일시적 소득보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지향하는, 민간일자리 취업을 돕기 위한 ‘경과적 일자리’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은 의도치 않은 정책의 부정적 효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정책목표와 로드맵이 반영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단기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약계층의 경과적 일자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4개의 계정(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8개 사업군으로 구성¹⁾된다.

2019년 국가균형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세입결산은 25억 200만원 규모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는 동 계정의 세출 예산현액 2,107억 5,900만원 중 1,990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37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86억 400만원을 이월하였다. 이월액 86억 400만원은 전액 세입부족에 따른 이월이다.

[2019회계연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결산	2019			수납률· 집행률 (B/A)	2020 예산
		예산액		결산(B)		
		본예산	추경(A)			
세입	1,847	606	606	3,830	631.8	2,284
지역지원계정	169	606	606	2,502	412.9	606
세출	547,216	660,815	680,700	667,735	98.1	545,976
지역지원계정	106,816	190,874	210,759	199,015	94.4	319,137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 1) 지역자율계정은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편성되고 지역지원계정은 부처직접편성사업만 편성됨.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경우 자율편성사업과 부처직접편성 사업이 추진되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통해서는 자율편성사업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사업, 부처직접편성 사업이 추진됨.

나. 분석의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지출구조조정 등의 노력으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부처직접편성사업은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지자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에는 동 계정을 통해 추진된 사업 중 접경권 발전지원, 섬발전 협력지원추진사업,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세수 부족에 의해 총 86억 4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19회계연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사업 세입재원 없는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계정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지원 계정	접경권발전지원	39,126	39,126	39,126	30,013	76.7	7,825	1,288
	섬발전협력지원 추진	2,700	2,700	2,700	2,399	88.8	300	1
	어린이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3,340	3,340	3,340	2,862	85.7	479	0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세수 부족은 주요 세입인 주세의 연례적 세입결손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일례로, 「주세법」에 따라 세입의 60%가 지역지원계정의 수입으로 귀속되는데, 최근 3년간 매년 세입예산 대비 과소 수납되고 있다.²⁾

이러한 사유로 연례적인 세입 재원의 과소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8년도에도 동 회계 사업의 세입 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4,767억원 발생하였고, 지역지원계정의 세계잉여금은 △1,215억원이다.

2) '17년도 2,992억원, '18년도 2,332억원, '19년도 2,990억원이 세입예산 대비 과소 수납되었다.

결과적으로 2019년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는 86억 400만원의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나, 이와 같이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월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³⁾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단위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이월 사용이 가능하나,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세출 예산을 이월하게 되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자금 배정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전년도에 재원 없이 이월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초과 세입이 없는 이상 자금이 예산보다 적게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아야 할 자금을 적시에 받지 못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우선 국비 대신 자체 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자비용 만큼의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규모에 맞추어 세출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이에 동법 제48조는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다음연도 수입으로 우선 이입하도록 규정하여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가. 현 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¹⁾은 소방, 경찰, 군 등 재난 관련 핵심기관 8대 분야²⁾ 333개 재난대응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자가망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난안전 분야의 통신망은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구축·운용되고, 서비스 지역이 제한되며 단방향의 음성 중심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주요 재난안전 분야의 통신망을 통합적으로 구축·운용하여, 전국을 서비스 지역으로 기관 간 통합적 의사소통이 양방향으로 다양한 매체(문자·음성·영상)를 통해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 이월액 917억 3,600만원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현액 2,417억 7,500 중 1,999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407억 1,600만원을 이월했으며, 11억 4,200만원을 불용했다.

[2019회계연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	150,039	150,039	91,736	0	241,775	199,917	82.7	40,716	1,142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총 사업비(2015~2025년)는 1조 6,436억원이다. 시범사업으로 강릉·평창·정성 지역에 구축(2016년 구축, 2017년 보강 구축)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02.9.~25.)에 시범운영을 하였다. 본 사업은 1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031-502

2) 소방, 경찰, 해경, 군, 지자체, 전기안전, 가스안전, 의료분야

단계 사업이 2018년 중부권 5개 시·도(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를 대상으로, 2019년 2단계 사업이 남부권 9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를 대상으로, 2020년 3단계 사업이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를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구축이 완료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예정이었다.

[연도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

준비단계	시범·보강사업	본 사업		
		1단계 2018년	2단계 2019년	3단계 2020년
		<변경> '18년-'19년	<변경> '19년-'20년	<변경> '21년
2014~2015년	2015~2017년			
정보화 전략 계획 (ISP) 수립	평창 동계 올림픽지역 특별보강사업	본 사업 1단계	본 사업 2단계	본 사업 3단계
	강릉, 평창, 정선 등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서울, 경기, 인천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본 사업이 1단계 구축의 지연으로 순연되어 2단계 구축 및 제2운영센터 구축 역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미집행 이월이 과다하게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PS-LTE기술 방식³⁾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당초 정보화전략계획(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89.5%를 기지국을 활용한 통신망 커버리지로 설정하였으나 2015-2016년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검증 결과, 산악지역 등 지형에 따른 전파도달 거리 축소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획재정부가 ‘사세출입계획

3)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는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말하며 일반적인 LTE에 무전통신기능이 추가된다. 2014년 12월 舊 국무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대역으로 700MHz대 중 20MHz(718~728, 773~783)를 배분하였다.

적정성 재검토('16.11~'18.1)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면적의 40.5%를 통신망 커버리지로, 기타 면적은 상용망, 이동기지국, 기타망(철도망, 해상망) 등을 활용하는 'All-4-one' 전략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2018년 4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9,595억 5,100만원)을 확정하였다.

[All-4-one 전략에 따른 커버리지 구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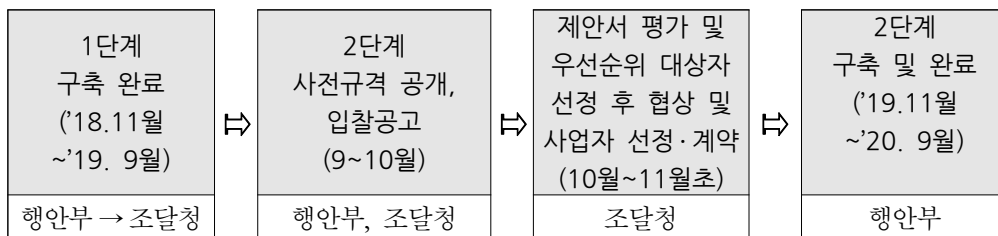
구 분	국가 기반 시설	도로	인구 밀집 지역	산지	농어업 지역	실내/ 지하	해상	철도
고정기지국	◎	◎	◎	○ 도로 주변	○ 도로 주변	○ 주요 시설		
상용망		○		○	◎	◎		
이동기지국				◎	○	○	◎	
기타망				○ 철도망	○ 철도망	○ UHF, 철도망	○ 해상망	◎ 철도망, TRS

주: ◎는 주력, ○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인프라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당초 2018년 완료 예정이었던 본 사업 1단계 구축이 지연되면서 2019년 9월에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은 2019년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0년 9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본 사업 1단계 완료 및 2단계 추진 내역]



자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당시 이러한 사업의 순연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당초 계획액을 그대로 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07억 1,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구축된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된 사업출연금을 전액 교부했으나,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실집행은 19.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교부된 당해연도 예산액 26억 3,400만원 대비 81.3%인 21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결산 시 본 사업 1단계의 집행지연을 감안하여 2단계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구축기간의 최소화 노력과 2,3단계 동시 추진 등을 고려하여 완료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9년에도 전년도 사업지연에 의한 순연과 집행가능성의 면밀한 검토에 의한 예산편성, 출연금 교부가 미흡하여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의 2020년 집행과정에서는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¹⁾은 범국가 차원의 정보공개 운영활성화 지원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의 운영·유지 및 재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청구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의 2019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1,0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예산현액의 85.1%에 해당하는 47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공개 활성화	5,361	5,361	240	0	5,601	4,769	85.1	722	110
정보공개제도 운영활성화 지원	187	187	0	0	187	182	97.3	0	5
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014	1,014	0	0	1,014	1,003	98.9	0	11
정보공개시스템 재구축	4,160	4,160	240	0	4,400	3,584	81.5	722	94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935-305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원문공개율과 사전 정보제공율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문공개율이 낮은 기관의 원인파악 및 공개율 제고, 사전정보 목록 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청구할 시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행정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공급자 시작에서 선정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는데서 발전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특정 사유의 비공개 정보 외에는 문서 원본을 공개하도록 하는 원문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시스템의 청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년 정보공개 건수는 1,065,549건으로 '15년 691,963건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정보공개율은 최근 4년 간 9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질적 측면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공급자 측면에서 정제된 정보가 아니라 시민이 가급적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문 공개현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가 원문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도별 원문정보 공개 현황을 보면 전체 원문 공개율은 연도별 편차가 있지만 2014년 51.5%, 2015년 45.4%에 대비해볼 때 2019년 41.1%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의 원문 공개율은 전년대비 각각 증가한 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사전정보 공개제도 역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사전정보 건수 역시 최근 4년 간 공개 수준이 정체되어 있으며 사전 원문 공개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연도별 원문정보 및 사전정보 공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건수		13,254,366	14,011,521	14,985,426	15,363,819	16,097,945
원문 공개율 (%)	중앙	43.3	50.3	43.9	47.0	44.1
	지자체	66.2	66.1	64.5	59.9	56.2
	교육기관	42.6	29.9	29.7	26.9	39.7
	공공기관	-	54.0	50.2	57.4	57.5
비공개 불복신청		3,559	3,910	4,905	6,577	-
비공개 불복신청 결과 인용비율 (%)	이의제기	35	37	34	37	-
	행정심판	4	6	7	9	-
	행정소송	27	32	31	42	-

주: 2019년도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신청 및 결과는 정산중으로 확인이 불가함.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대검찰청, 감사원, 국방부, 외교부 등 안보 및 수사 관련 기관의 원문 공개율이 낮아 평균 공개율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고, 담당자 인식교육 및 정보공개 기관 평가 지표의 개선을 통해 원문공개 및 사전 공표율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수사 분야의 원문공개율은 매년 23% 전후 수준에서 유사하고 비공개에 대한 불복신청 시 인용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감소 추세에 원인을 설명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은 비공개 기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 불명확하고 세부기준이 미비하여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 개인정보보호 문제와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조정 기능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해연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이 고도화되더라도 원문 공개율 감소

등 각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적 측면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실현’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원문공개율 및 사전정보 공개율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사업인 정보공개운영 실태평가 및 연차보고서 발간사업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활성화 지원내역사업에 매년 정보공개운영 실태평가 및 연차보고서²⁾ 발간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위해 별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실태평가와 연차보고서 작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현황과악 및 개선과제 도출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첫째,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 및 평가결과로 제시하는 개선방향 부문에 동일한 문구가 매년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공개건수, 처리일수 등의 양적지표에 대한 정보만 기술되어 있을 뿐 청구자 만족도나 사전정보 내용의 충실성 등 질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결여되어 있다.

2) 연차보고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주요내용과 연도별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실태평가에 근거한 운영성과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개요부문,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시범조사 결과,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사례 및 이의신청 사례, 정보공개 운영현황 및 관련법령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목적차는 모든 년도에 걸쳐 동일하다.

[연도별 정보공개 실태평가 보고서 '개선방향' 부분의 내용]

발간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방안	· 원문정보공개의 확산 ·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 · 정보공개 업무 처리 역량강화 ·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원문정보공개의 질적 향상 ·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 · 업무담당자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 역량 강화 ·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원문정보 공개 및 사전정보 공표의 내실화 · 정보공개 업무 처리 역량 강화 ·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원문정보 공개 및 사전정보 공표의 내실화 · 적극적 정보공개 업무처리 ·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강화 ·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정보목록 공개 강화

주: 2019년도 연차보고서는 금년도 8월에 발표될 예정임.

자료: 행정안전부

더불어 정책평가는 그 결과에 근거한 피드백으로 사업의 개선이 뒤따르는 것이 핵심이며, 정보공개 실태평가의 실시목적도 동일하다. 그러나 동 평가의 결과에 근거한 별도의 개선안이나 계획은 수립되지 않으며, 차년도 보고서의 추진경과 및 운영성과 보고 부문에서도 국정과제 대응현황만 제시될 뿐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점은 찾기 어렵다.

일례로 2018년도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원문정보 공개 및 사전정보 공표의 내실화, 정보목록 공개 강화’이나 2019년도에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결과 역시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개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정보공개 업무처리 권고에 대해서는 운영성과에서 공공기관 담당자 워크숍, 기관 방문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 초기부터 해오던 것으로 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특히 2019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38명의 평가단(전문가 24명, 국민평가단 14명)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557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합평가의 지표는 사전정보(등록건수, 공표 충실성), 원문공개(원문공개율, 원문충실성), 청구처리(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관리(고객 수요분석 실적, 고객만족도)로만 구성되어 있다. 충실성, 적정성, 만족도 등의 주관적 지표는 38명의 평가단이 세부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고 등록건수와 공개율은 시스템을 통해 도출 가능한 해당연도 공개건수이다.

[2019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내역]

구분	내용	
평가대상	· 행정기관 305개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자치구, 시도교육청) · 공공기관 272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평가주체	· 평가단(전문가 24명, 국민평가단 14명)	
평가지표	분야	지표
	1. 사전정보(20)	①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10) ② 사전정보공표 충실성(10)
	2. 원문공개(30)	③ 원문공개율(20) ④ 원문공개의 충실성(10)
	3. 청구처리(30)	⑤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10) ⑥ 청구처리 적정성(20)
	4. 고객관리(20)	⑦ 고객 수요분석 실적(10) ⑧ 고객 만족도(10)
평가결과	· 기관 유형별 순위를 기준으로 3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부여,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 · 기관유형별 비교 및 지표별 평균 점수 제시	
조치내용	· 각 기관에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사항 통보 · 정보공개 기관 담당자 워크숍에 활용	

주: 2019년도 연차보고서는 금년도 8월에 발표될 예정임.

자료: 행정안전부

평가결과를 보면 기관별 평가결과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기관 유형별로(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수준을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도 각 기관에 단순히 결과내역과 일괄적 개선사항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해당 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보완조치를 강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억원 이상을 소요하여 10개월 동안 실시한 종합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보고서 상에 매년 지적되는 문제점의 원인분석이나 기관별 정보공개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층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벗어나 정보공개의 현황과 문제점의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실태평가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¹⁾은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감소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구간 등 위험구간의 구조를 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330-03목)으로 국고보조율은 50%이다. 국가균형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통해 집행되며 그 외 지역은 지역지원계정을 통해 지원되어 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예산현액 319억 6,2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세종)의 예산현액 6억 2,7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제주)의 예산현액 5억 3,4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였다.

[2019회계연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험도로구조 개선	31,962	31,962	0	0	31,962	31,962	0	0
위험도로구조 개선(세종)	627	627	0	0	627	627	0	0
위험도로구조 개선(제주)	534	534	0	0	534	534	0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231-30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231-301(세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231-306(제주)

나. 분석의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상반기에 예산 전액을 교부하나 공사지연에 인한 미집행 이월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사업대상지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도로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2019년도에는 66개소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이 중 광주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 등 17개소의 구조개선 사업을 완료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2019년도에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15개 자치단체 모두 미집행 이월이 발생하였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76.7%로 총 102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당해연도 교부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추경기준)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부산	1,710	1,710	1,448	3,158	680	2,478	21.5
대구	4,750	4,750	383	5,133	5,133	0	100
인천	600	600	0	600	598	2	99.7
광주	2,790	2,790	920	3,710	1,710	2,000	46.1
대전	800	800	855	1,655	1,543	108	93.2
울산	696	696	600	1,296	897	399	69.2
경기	2,900	2,900	1,490	4,390	3,656	734	83.3
강원	372	372	0	372	262	110	70.4
충북	1,912	1,912	1,469	3,381	3,128	253	92.5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추경기준)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충남	3,110	3,110	761	3,871	3,022	849	78.1
전북	1,680	1,680	659	2,339	2,017	322	86.2
전남	5,889	5,889	29	5,918	5,783	135	97.7
경북	1,240	1,240	1,039	2,279	2,122	155	93.1
경남	3,513	3,513	1,478	4,991	2,533	2,376	50.8
세종	627	627	221	848	621	227	73.2
제주	534	534	0	534	425	109	79.6
합계	33,123	33,123	11,352	44,475	34,130	10,257	76.7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3년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70% 수준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의 30~40% 수준의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례적 실집행부진의 사유는 사업개소 별로 설계단계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지연과 보상단계에서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연기되거나 민원발생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에 의한 것이다.

[최근 3년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국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원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추경)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2017	30,000	30,000	16,971	46,971	33,663	12,625	71.6
2018	25,385	25,385	12,625	38,010	26,321	11,351	69.2
2019	33,123	33,123	11,351	44,474	34,130	10,257	76.7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연례적인 미집행 이월과다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의 실제 사업 추진현황과 공사일정에 상관없이 예산 전액을 당초 계획에만 의거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동일 일자에 일괄 교부하고 있다. 201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공사예정 지역 66개 중 30개소 이상이 보상·설계 협의 지연으로 착공 일자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6월 초에 이미 국고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

[최근 3년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교부 내역 및 일자]

연도	교부대상	1차 교부일	2차 교부일	교부율 ¹⁾
2017	16개 지자체 일괄	2017.06.22.	2017.10.11.	100%
2018	16개 지자체 일괄	2018.06.26.	2018.10.18.	100%
2019	16개 지자체 일괄	2019.01.23.	2019.06.03.	100%

주: 1) 예산액 대비 교부액을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관리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교부해야 하며,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위와 같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집행관리 방식은 동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독려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¹⁾은 기존 도심지 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빗물일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예산현액 553억 1,800만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2019회계연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우수저류시설 설치	55,318	55,318	0	0	55,318	55,318	1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은 침투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로서 2019년에는 우수저류시설 20개소(신규 4, 계속 7, 신규 6) 설치를 위해 동 예산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50%로 사업이 추진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완공된 우수저류시설은 총 192개소이며, 국비 총 6,379억원이 투입되었다.

나. 분석의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률 저조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근거한 사업 개소 선정 및 공정을 제고 등을 통해 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732-301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시·군·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사업대상지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민간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우수저류시설은 주로 도심지에 집중되고 직접적인 침수피해 지역 외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보상 및 사업반대 민원 등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게 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최근 연도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60~70%대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2019년도에 82.1%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는 2018년도 이월액 중 약 10억원이 사업취소가 된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 역시 교부액 대비 19.6%의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연도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5	88,130	88,130	88,130	7,009	95,139	85,398	9,346	935	89.8
2016	71,839	71,839	71,839	9,346	81,185	61,491	14,101	5,593	75.7
2017	71,046	71,046	71,046	14,101	85,147	53,255	30,127	1,765	62.5
2018	69,546	69,546	69,546	30,127	99,673	75,421	17,384	6,868	75.6
2019	55,318	55,318	55,318	7,338	62,656	51,456	10,830	370	70.7

주: 2019년도의 전년도 이월액과 2018년도의 이월액 간의 차이는 부산 망미지구의 사업취소에 기인함. 동 지구는 '1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며 당해연도에 반납 처리됨.

자료: 행정안전부

당해연도 이월 사유를 보면 창원 양덕 등 신규 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 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민원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착공 시기가 연말로 연기되었고, 충북 청주시 등 일부 계속 지구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비 지출 시기가 미도래한 데서 이월액이 발생하였다.

[2019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구별 결산 현황 및 이월률]

(단위: 백만원)

지구명	구분	2019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률
부산 동래구 온천2	계속	7,500	48	7,548	7,268	280	3.7%
연제구 연제	신규	1,476	0	1,476	600	876	59.3%
인천 남동구 구월	신규	500	0	500	82	418	83.6%
남동구 간석	신규	500	0	500	82	418	83.6%
부평구 부평6	신규	500	0	500	137	363	72.6%
서구 석남1	신규	500	0	500	138	362	72.4%
광주 광산구 우산	신규	500	0	500	500	-	0.0%
충북 청주 수곡	계속	5,499	0	5,499	3,290	2,209	40.2%
충남 천안 불당	마무리	5,110	247	5,357	5,289	68	1.3%
공주 신관	신규	1,000	0	1,000	967	33	3.3%
전북 전주 송천1	마무리	4,194	0	4,194	3,988	206	4.9%
전북 익산 인화	계속	6,000	0	6,000	4,390	1,610	26.8%
전남 순천 장천	계속	3,850	355	4,205	3,996	209	5.0%
경남 창원 양덕	신규	2,850	0	2,850	-	2,850	100.0%
경남 거제 회진	신규	2,000	0	2,000	2,000	-	0.0%
경남 의령 서동	신규	1,000	0	1,000	582	418	41.8%
제주 제주 금성	계속	4,500	263	4,763	4,763	-	0.0%
서귀포 대포	마무리	890	0	890	890	-	0.0%
서귀포 천미	계속	5,100	0	5,100	5,100	-	0.0%

자료: 행정안전부

창원시와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등 이월률이 70% 이상인 신규 지구의 경우 설치 예정지역주민과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간 개소 설치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선정했다면 착공 지연에 의해 실집행이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 지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과도하게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규 보조사업 대상 개소를 선정하고, 계속 지구에 대해서는 정기 실적조사와 공정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지연에 의한 실집행률 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은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일 반선박으로 운송할 수 없는 섬에 가스, 석유 등의 생필품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 송·공급할 수 있는 연료운반선 건조를 지원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 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의 2019년 예산현액 27억원 중 23억 9,900 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이월했으며, 100만원을 불용했다.

[2019회계연도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2,700	2,700	0	0	2,700	2,399	88.9	300	1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2,000	2,000	0	0	2,000	1,700	85.0	30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은 선박 건조사업의 진행 과정과 절대공기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집행방식으로 매년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구조를 개 선할 필요가 있다.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2개 지방자치단체에 단체 당 50~100ton급 한 척의 연료운반선 건조를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지원을 50%, 약 10억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고보조 대상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41-300

얼마나 정기 민간 화물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 지역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2018년도에는 보령시와 군산시가 선정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통영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2019년도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19억 9,200만원을 포함한 2019년 예산현액 총 36억 9,200만원 중 13억 3,450만원이 이월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령시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했으나, 해당연도에 8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0.8%에 그쳤다. 2019년도에도 건조 준공일이 지연되어 이월액 9억 9,200만원 중 8억 1,100만원만 집행되고, 1억 8,100만원은 재이월되었다. 2019년도 지원 대상인 통영시와 제주도의 사업 역시 행정안전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액 3억원을 제외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두 지방자치단체 모두 절반 이상의 예산을 이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집행률은 50%, 통영시의 경우는 4.7%로 낮은 수준이다.

[2019회계연도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의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방자치 단체명 (지원년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보령시(2018)	1,000	1,000	1,000	992	992	811	181	0	81.1
군산시(20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	0	100.0
통영시(2019)	1,000	850	850	-	850	46.5	803.5	0	4.7
제주도(2019)	1,000	850	850	-	850	500	350	0	50.0

자료: 행정안전부

저조한 실집행률의 원인은 연료운반선 건조에 소요되는 절대적 소요시간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의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연료선 건조 일정을 살펴보면 연료운반선 설계와 건보 업체선정을 위한 조달절차에 각각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설계에 4~6개월, 건조에 8~10개월, 검사 및 시운전에 1~2개월이 소요된다. 즉, 해당 사업은 사업대

상지로 선정 후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준공까지 최소 2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1년 단위로 완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단년도 사업계획 수립으로 매년 과도한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연료운반선 건조 추진 일정]

지원 연도	지자체명	지자체 선정	보조금 교부	설계용역 발주	설계용역 완료	연료운반선 건조발주	연료운반선 건조완료
2018	보령시	2018.1	2018.3	2018.11	2019.3	2019.3	2020.2
	군산시	2018.1	2018.3	2018.5	2019.1	2019.2	2020.4
2019	통영시	2018.6	2019.6	2019.6	2019.12	2020.3	2021.3 ¹⁾
	제주도	2018.6	2019.4	2019.6	2019.11	2019.10	2020.8

주: 1) 통영시와 제주도 연료운반선 건조완료 시기는 예정일자임.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계연도에 걸쳐 편성하더라도 사업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적어 지자체가 총 지원예산 기준으로 조달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낮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2개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연도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교부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이월 과다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사업은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¹⁾의 내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9년 단년도(시범) 사업으로 민간공용화장실의 출입구 분리 또는 층별 분리,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안전개선(CCTV, 비상벨 설치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330-03목)으로 추진되었다.²⁾

행정안전부는 동 내내역사업의 2019년 예산현액 22억 6,000만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2019회계연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발전 활성화	3,252	3,252	0	0	3,252	3,208	85.0	0	4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2,372	2,372	0	0	2,372	2,372	100	0	0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비용 지원	2,260	2,260	0	0	2,260	2,260	100	0	0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231-303

2)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을 통해 우수 공중화장실 선정 및 시상, 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지원,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제작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2019년에는 특별히 22억 6,000만원을 별도 편성하여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분석의견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비용 지원 시범사업은 민간참여가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계 시 유인구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미집행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사업은 공용화장실 1개소당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국비 25%(500만원), 지방비 25%(500만원), 민간자부담 50%(1,0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452개소(226개 지방자치단체*2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2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예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으나, 실집행액은 3억 7,0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6.4%에 그쳤다. 이로 인해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액의 83.6%인 18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19년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 지원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개소)

지자체명	집행내역				사업추진개소		
	교부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목표	완료	목표대비 완료율
서울특별시	250	21	229	8.4	50	6	12.0
부산광역시	160	24	136	15	32	7	21.9
대구광역시	80	9	71	11.3	16	2	12.5
인천광역시	95	0	95	0	19	0	0
광주광역시	50	32	18	64.0	10	8	80.0
대전광역시	45	5	40	11.1	9	1	11.1
울산광역시	45	9	36	20.0	9	3	33.3
세종특별자치시	10	0	10	0	2	0	0
경기도	310	29	281	9.4	62	11	17.7
강원도	180	32	148	17.8	36	10	27.8
충청북도	105	29	76	27.6	21	6	28.6
충청남도	145	27	118	18.6	29	6	20.7
전라북도	140	22	118	15.7	28	17	60.7
전라남도	220	19	201	8.6	44	5	11.4

(단위: 백만원, %, 개소)

지자체명	집행내역				사업추진개소		
	교부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목표	완료	목표대비 완료율
경상북도	230	63	167	27.4	46	16	34.8
경상남도	180	49	131	27.2	36	11	30.6
제주특별자치도	15	0	15	0	3	0	0
계	2,260	370	1,890	16.4	452	109	24.1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개소를 기준으로 보면 분리공사가 완료된 개소는 목표수준 452개소 대비 24.1%인 109개소였으며, 공사를 추진 중인 곳은 목표 대비 8.0% 수준인 36개소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실집행부진은 민간자부담 비용 및 개방 부담 등의 문제로 개인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총 50%(1,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나 나머지 금액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하며, 1개소당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자부담 비용은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비용은 영세상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부담으로 건물의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은 기대하기 어려워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대상지로 선정 시 해당 화장실을 공용으로 개방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비용지출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더불어, 일선현장의 자료에 의하면³⁾ 공사 기간 중에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고 건물 구조변경 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물주와 임차인 998명 중 3.9%인 39명만이 남녀화장실 분리사업 참여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미집행 이월된 예산의 차년도 실집행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서울특별시는 2019년 5~8월간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서대문구·마포구·서초구·강동구 등 7개 자치구의 민간 건물 화장실 24,21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자료에서 건물주 및 임차인들이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도 동 시범사업이 실집행이 추진 중이므로 종료 시까지 이행 결과를 추적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 사업과 같이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계획 시 목적과 유인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규모와 방식을 설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경상적 경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320-01목)이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총 796억 4,300만원 중 735억 5,400만원을 교부하였고, 44억 200만원을 불용했다.

[2019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79,643	△2,250	77,956	73,554	0	4,402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조치를 하는 등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¹⁾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²⁾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고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받아 검토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³⁾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제1항⁴⁾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정산보고서 등의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상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및 정보공시 의무]

구분	제출 방법	기한	법적근거
실적보고서 제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다음연도 2월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제1항
정보공시	‘e나라도움’에 공시 (1,000만원이상 보조사업)	다음연도 4월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2019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일자를 확인한 결과, 4개 세부사업에서 교부된 민간보조사업은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중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풍수해보험 민간보험사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것과 달리 나머지 보조사업자는 단순 회계정산보고서만 제출되고 구체적 사업성과와 실적에 대한 정보는 미흡하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보조사업 보고서 제출/공시의무 미준수 사례]

(단위: 백만원, 일자)

세부사업명	피보조단체명	교부액	정산보고서 제출일	e나라도움 정보공시 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2,666	'20.03.04.	'20.04.29.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지원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²⁾	2,000 1,500	'20.03.03.	미공시
풍수해보험	5개 민간보험사	14,373	'20.05.27.	'20.04.28.

주: 1) '20.05.10일 기준

2) 2019년도에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의 경상경비 지원금 20억원과 별도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 15억원이 교부됨.

자료: 행정안전부, 'e나라도움' 시스템 추출

더불어 2019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정보공시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 328개(보조사업자 기준) 중 4월말까지 정보공시가 확정된 보조사업 수는 264개로 64개(19.5%) 사업은 정보공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보조사업의 정보공시 현황]

(단위: 개)

기준일	보조사업 수	공시확정	미공시
'20.4월말 기준	328	264	64

주: 1. '20.05.10일 기준

2. 2019년도에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의 경상경비 지원금 20억원과 별도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 15억원이 교부됨.

자료: 행정안전부, 'e나라도움' 시스템 추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충분한 실적정보를 기재한
보고서의 제출 및 정보공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서는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사업¹⁾은 재난사고 원인조사 체계 구축 및 조사단 운영을 통한 주요재난사고 조사 및 후속조치 점검, 재난원인조사분야 협업체계(23개 국가재난조사기관) 및 미래대형복합재난 연구분야 협업체계(중앙·지방 연구개발 협의체)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9회계연도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 재난대비	396	396	120	0	516	400	77.5	56	60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조사단 및 협의체의 운영경비로 이루어져있으나, 국내외 주요 재난·사고조사 정책 등의 연구와 미래재난 이슈별 위험영향 분석을 위해 매년 연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사업은 2019년도 연구용역을 연도 말에 추진하여 당해연도 모든 용역과제가 이월되는 등 연구용역의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732-301

2019년도에 진행된 재난원인조사 및 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사업의 연구용역 과제 5건 중 2건은 2018년도 하반기에 착수되어 당해연도에 진행된 사업이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한 3건 중 2건은 연도 말에 착수하였고, 전 과제가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2019년도에 진행된 연구용역과제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2018	재난원인조사 업무편람	'18.10.24. ~'19.03.06.	44.8	31.4	13.4
	화확사고 현장대응 정보 공유체계 개선사업	'18.08.03. ~'19.01.30.	404.8	106.8	116.6
2019	숙박시설 화재원인 및 정책 실태조사	'19.12.10. ~'20.02.10.	19.5	13.7	5.9
	재난원인조사 기능강화방안 연구	'19.09.25. ~'20.03.13.	48.5	24.2	24.3
	재난사고 이슈분석 및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	'19.12.30. ~'20.04.07.	26	0	26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차차년도 기획조사를 위한 사전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발주되거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소요로 연도 말에 집행되었으며, 대부분 과제 수행에 5~6개월이 소요되는 연구들로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1년 기획조사를 위한 사전연구용역인 ‘숙박시설 화재원인 및 정책실태조사’의 경우, 신규과제 발주 당시 이미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차차년도 조사의 사전연구역이므로 차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 가능했던 내역이다. 반드시 2019년도에 추진해야하는 과제였다면 당초 연구용역 계획수립 시 이를 포함하여 연내 추진 가능하도록 집행될 필요가 있었다. ‘재난원인조사 기능강화방안 연구’와 ‘재난사고 이슈분석 및 대국민 인식 설문조사’ 역시 4개월의 연구기간을 예상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추진되어 이월된 사례이다.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 이월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 매년 연구용역 예산대비 37~71%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연도 말 계약에 의한 연구용역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연도 말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에도 연구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차년도에 진행되는 결산 심사 시 해당 연구용역의 적절한 수행 여부 검토를 어렵게 하여 국회 결산 심의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주제 선정 및 수행 시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연례적인 이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행기준 검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1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사업의 성과 지표 재검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1



인사혁신처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92억 8,000만원이며, 605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7%인 604억 1,8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6,4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9,280	59,280	59,280	60,582	60,418	164	0	99.7

자료: 인사혁신처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9,686억 3,900만원이며, 이 중 99.9%인 2조 9,657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967,912	2,967,912	2,968,639	2,965,774	0	2,864	99.9
합계	3,646,065	3,646,065	2,968,639	2,965,774	0	2,864	99.9

자료: 인사혁신처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1조 2,478억 2,300만원이며, 21조 219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7%인 20조 9,620억 6,200만원을 수납하고 576억 1,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2억 8,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21,247,823	21,247,823	21,247,823	21,021,960	20,962,062	57,614	2,284	99.7
합계	21,247,823	21,247,823	21,247,823	21,021,960	20,962,062	57,614	2,284	99.7

자료: 인사혁신처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21조 2,563억 5,800만원이며, 이 중 98.6%인 20조 9,620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2,942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21,247,823	21,247,823	21,256,358	20,962,062	-	294,296	98.6
합계	21,247,823	21,247,823	21,256,358	20,962,062	-	294,296	98.6

자료: 인사혁신처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15조 2,28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404억 5,700만원(2.3%)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824	5,908	5,908	7,046	1,138	222
기금	14,881,372	15,513,782	15,513,782	15,221,607	△292,175	340,235
합계	14,888,196	15,519,690	15,519,690	15,228,653	△291,037	340,457

자료: 인사혁신처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총지출은 19조 1,655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1,525억 8,400만원(6.4%)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86,978	193,259	193,259	191,121	△2,138	4,143
기금	17,825,990	19,138,371	19,138,371	18,974,431	△163,940	1,148,441
합계	18,012,968	19,331,630	19,331,630	19,165,552	△166,078	1,152,584

자료: 인사혁신처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인사혁신처의 자산은 19조 774억 9,400만원, 부채는 807조 1,743억 2,100만원으로 순자산은 △788조 968억 2,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조 2,442억 6,800만원, 투자자산 10조 4,995억 8,800만원, 일반유형자산 5조 1,918억 6,400만원, 무형자산 150억 8,300만원 및 기타비유동자산 1,266억 9,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259억 9,500만원(3.4%)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자산재평가 및 천안상록리조트 리모델링 완공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5,926억 3,100만원 증가, 공무원연금기금이 보유한 지분증권 평가액의 증가 등으로 인한 투자자산 1,593억 5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조 6,169억 6,800만원, 장기차입부채 2조 7,748억 1,300만원, 장기충당부채 801조 8,195억 9,1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9,629억 4,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9,467억 6,800만원(0.2%)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장기차입금 감소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824억 300만원 감소, 장기임대보증금 등 감소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4,595억 6,600만원 감소, 단기임대보증금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 4,759억 100만원 증가 및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등의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2조 1,128억 3,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9,077,494	18,451,499	625,995	3.4 %
Ⅰ. 유동자산	3,244,268	3,430,752	(186,484)	(5.4 %)
Ⅱ. 투자자산	10,499,588	10,340,283	159,305	1.5 %
Ⅲ. 일반유형자산	5,191,864	4,599,233	592,631	12.9 %
Ⅳ. 무형자산	15,083	14,523	560	3.9 %
Ⅴ. 기타비유동자산	126,691	66,709	59,982	89.9 %
부 채	807,174,321	805,227,553	1,946,768	0.2 %
Ⅰ. 유동부채	1,616,968	1,141,067	475,901	41.7 %
Ⅱ. 장기차입부채	2,774,813	2,957,216	(182,403)	(6.2 %)
Ⅲ. 장기충당부채	801,819,591	799,706,755	2,112,836	0.3 %
Ⅳ. 기타비유동부채	962,949	1,422,515	(459,566)	(32.3 %)
순 자 산	△788,096,827	△786,776,053	△1,320,774	△0.2
Ⅰ. 기본순자산	4,688,907	4,688,907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796,292,596	△793,838,785	△2,453,811	△0.3
Ⅲ. 순자산 조정	3,506,862	2,373,825	1,133,037	47.7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1조 5,361억 9,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8조 1,220억 2,900만원, 관리운영비 933억 3,200만원, 비배분비용 763억 5,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5조 90억 2,200만원, 비배분수익 3,419억 8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조 4,045억 9,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조 8,660억 6,800만원(6%) 증가한 32조 9,407억 8,5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 1조 9,178억원 3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프로그램(33조 702억 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94억 만원과 경비 202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675억 00만원, 평가손실 151억 1,500만원 등으로, 배배분수익은 이자수익 1,719억 200만원, 자산처분이익 1,154억 7,300만원, 비교환수익은 정부외자산수증 1조 5,516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3,113,007	31,195,204	1,917,803	6.1%
가. 프로그램 총원가	48,122,029	45,070,788	3,051,241	6.8%
나. 프로그램 수익	15,009,022	13,875,584	1,133,438	8.2%
II. 관리운영비	93,332	83,440	9,892	11.9%
III. 비배분비용	76,354	108,253	(31,899)	(29.5%)
IV. 비배분수익	341,908	312,179	29,729	9.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2,940,785	31,074,717	1,866,068	6.0%
VI. 비교환수익 등	1,404,591	1,551,610	(147,019)	(9.5%)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1,536,194	29,523,107	2,013,087	6.8%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786조 7,760억 5,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88조 968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조 3,207억 7,400만원(0.2%) 감소하였다.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2조 130억 8,700만원 증가하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82조 8,419억 6,100만원 증가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7,996억 6,5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2조 9,676억 7,215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기타재원이전 등 재원의 이전 2조 4,741억 187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5,081억 7,027만원, 자산재평가이익 6,248억 6,68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가 28조 5,888억 1,304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786,776,053)	(705,426,070)	(81,349,983)	(11.5%)
II. 재정운영결과	31,536,194	29,523,107	2,013,087	6.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93,570	1,293,235	(799,665)	(61.8%)
IV. 조정항목	29,721,850	(53,120,111)	82,841,961	156.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788,096,827)	(786,776,053)	(1,320,774)	(0.2%)

자료: 인사혁신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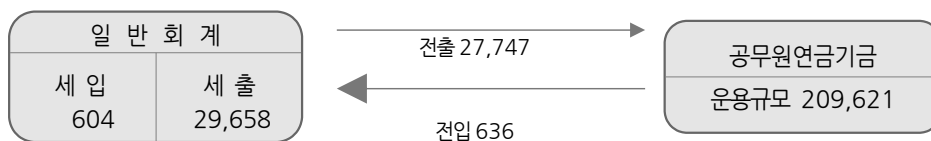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조 7,747억원 전출되었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636억 원 전입되었다.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인사혁신처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가시험시행 사업, ② 교육개발 평가지원 사업, ③ 교육기관교류협력 사업 ③ 퇴직급여 사업, ④ 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있다.

국가시험시행 사업은 7급 공채 PSAT 문제개발 예산이 1억원 감액(130.8억원 → 129.8억원)되었고³⁾, 교육개발평가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 교육 프로그램 연구예산이 0.4억원 감액(5.8억원 → 5.4억원)되었다.⁴⁾ 교육기관교류협력 사업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개원 7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0.5억원 감액(7.9억원 → 7.4억원)되었다. 퇴직급여 사업은 퇴직급여 재산정 결과 감소 예상액 4,000억원이 감액(14조 4,771억원 → 14조 771억원)되었고, 임대주택건설 사업은 임대주택 재건축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예산 13억원이 감액(434억원 → 421억원)되었다.⁵⁾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 ① 교육환경개선유지 사업, ②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 사업은 교육시설구축 예산이 1억원 증액(53.9억원 → 54.9억원) 되었다.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사업은 퇴직급여 사업과 임대주택건설 사업 예산이 4,013억원 감액됨에 따라 여유자금 4,013억원이 증액(7,352억원 → 1조 1,365억원)되었다.

3)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4)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5)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인사혁신처는 ①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② 공직 다양성 제고 및 개방 확대, ③ 인재개발 혁신을 통한 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 ④ 공직사회 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추진, 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확산을 2019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사업은 ① 동 사업 예산을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내역사업 등 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②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안건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차등화된 기준 수립으로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교육 내역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초과집행이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9회계연도의 경우 초과집행 금액이 예산액 대비 69%수준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어 적정예산 편성을 통해 초과집행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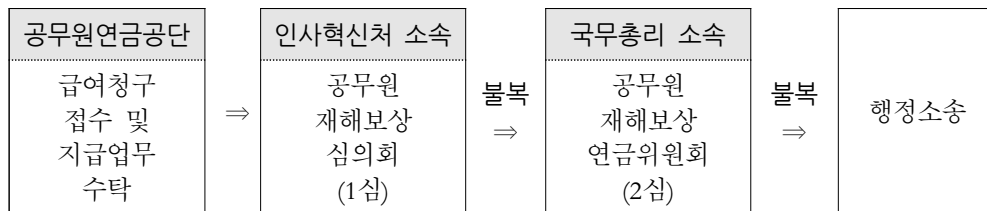
1

공무원 재해보상사업의 문제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으로 요양을 하거나 그로 인해 장애 상태가 된 때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이다.¹⁾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는 재해공무원 등이 급여를 청구하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를 접수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1심)에서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동 심의회 결정에 대해 청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재심이 이루어지며 동 심의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청구 및 결정절차]



자료: 인사혁신처

기존에는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초점을 두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해보상급여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18년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인사혁신처 내 재해보상정책실을 신설하고 동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상요양비, 장애급여, 유족보상, 순직유족급여로 이루어진다.

1-1. 공무원재해보상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부적절

가. 현 황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¹⁾은 공무원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신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배상금 500만원 전용을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사업 예산현액 4억 7,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 재해보상	467	467	0	5	472	472	0	0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사업 예산을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기본경비 및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은 보상금 지급을 중심으로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해보상급여 사업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단순 금전보상에서 나아가 재해 예방과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2018년도에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연구·검토가 추진되었고, 당해연도 9월에 재해보상정책관실이 신설되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634-531

이에 따라 2019년에는 관련 심의회 운영경비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이 신규 편성되었고, 본부기본경비에 재해보상정책관실의 운영경비가 추가되었다. 한편 재해보상급여 접수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전과 같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해보상급여 사업 예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무원 재해보상사업 및 재해보상정책관실 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코드)	내역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공무원 재해 보상 (1634-531)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214	5	219	219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230	±26	230	230
	제도소개 홍보 워크숍	23	23	23	23
재해보상 정책관실 (7011-268)	재해보상정책관실 기본경비	88	0	88	87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2019년도 공무원재해보상사업 지출내역을 보면 동 사업과 무관한 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에 상당액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무원 후생복지지원의 내역사업인 공무원 상담센터 관련 비용,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운영 사업비,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기본경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동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2019년도 타 사업추진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사업 운영사업 예산 집행 예시]

(단위: 천원)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사업의 목적 외 지출 내역	금액	적정 세부사업
재해보상정책관실 운영·사무물품 구입비 지급	12,040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기본경비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비용	2,660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2020~21년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위탁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소요비용	2,527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단위: 천원)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사업의 목적 외 지출 내역	금액	적정 세부사업
정부청사(서울,과천,세종)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간판 제작비용 지급/마음건강센터 협력방안 마련 관계 부처 회의 개최 소요비용	755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기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서류심사 및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비용, 부조급여제도 개선 간담회 비용 등	102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운영·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기본경비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센터 간판제작 비용 및 기타 운영경비 및 위탁용역 추진 경비 등은 동 사업예산을 통해 집행될 필요가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관련 연구용역 추진경비 역시 해당 세부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운영 중이므로 동 사업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보상정책관실의 업무추진비 등 경비의 경우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과 재해보상정책관실 기본경비로 세부사업이 별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편성과 상이한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 세부사업 내에서 세목조정을 하여 집행하거나 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재해보상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의 예산편성 및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코드)	내역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1644-303)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735	680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1644-305)	과제수행 활동비	3,654	3,654
	사업관리 및 운영	89	85
재해보상정책관실(총액) (7011-218)	재해보상정책관실 운영비	12	12
재해보상정책관실 (7011-268)	재해보상정책관실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88	87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집행내역을 보면 모두 공무원후생복지지원 단위사업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며, 공무원 상담센터 운영사업은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나 동 세부사업에는 위탁운영비만 편성되어 있어 해당 부대비용은 재해보상사업 운영사업에서 지출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45조²⁾에서는 예산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과 운영방식 등 예산이 정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과 조건이 집행단계에서 변경된다면, 이는 국회가 확정된 사업과 사실상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① 동 사업을 통해서도 관련 심의회 운영 및 제도 홍보를 우선하고 이에 필요한 관서의 운영경비는 재해보상정책관실 기본경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며, ② 당해연도에 공무원 재해보상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별도 설치한 것은 정책의 목적, 법적 근거에 있어 기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성과관리를 엄밀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동 사업의 집행방식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타 사업 및 관서 운영경비 등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2.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심의회 위원수당 지급기준 개선 필요

가. 현 황

인사혁신처는 심사청구 내역에 대해 공상급여 및 부조급여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동 위원회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와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내역을 결정하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의 수당은 내부규정에 따라 회당 출석심의 35만원(전자심의의 경우 안건 당 8만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수당은 회당 55만원과 기타 실비를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	참석수당	15만원
	안전검토수당 (전자심의)	20만원 (8만원)
	합 계	35만원+실비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	참석수당	15만원
	안전검토수당	40만원
	합 계	55만원+실비

주: 지급내역은 여비 등의 실비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안전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차등화된 기준 수립으로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재해보상제도,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 장애급여, 순직·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재해보상심의회 2019년도 위원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출석심의 참석위원에 대해 회당 35만원(실비 별도), 전자심의 위원에게 회당 8만원을 지급하며, 연간 94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2억 930만원을 집행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재해보상심의회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재심 및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당 위원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1일 55만원을 제공한다. 단, 평균적으로 15인의 위원이 참석하나 일부에 대해서는 55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수당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지급기준 및 내역	개최횟수	집행액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출석심의) 회당 350,000원*10인	47	209.3
	(전자심의) 회당 80,000원*10인	47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회당 550,000원*6~9인 회당 150,000원*6~7인	12	222.3

주: 실제 지급인원은 회차 별로 상이하어 지급액에 차이가 있음.

자료: 인사혁신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해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참석 외에 자료수집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수당 규정을 보면 이를 준용하여 회의 참석수당 외 안전검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안전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 논의시간 당 혹은 검토 건당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에 반하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모두 회의 운영시간과 안전의 특성에 상관없이 1일 참석수당과 안전검토수당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매회 동일 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비상임위원 심의회 관련 수당]

(단위: 만원)

구분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 위원회	금융 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안전 검토 수당	회당 4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5만원 추가)	회당 30	회당 30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만원 추가)	건당 30

주: 참석 수당은 회당 1일 10-15만원 별도 지급(회의 운영시간에 따라 단가 상이)

자료: 각 기관별 자료에 근거하여 제작성

재해보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심의회 등의 기관을 비교해보면, 관련 위원회는 회의별 안전의 개수나 쟁점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시간과 심사건수 등을 감안하여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고 있다.

[의료분쟁·재해보상 관련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심의회	근로복지공단 (산재관련) 자문이사회의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
- 회의수당: 시간당 상이 - 1일 최대 25만원 - 검토수당: 건당 5만원	회의수당: 시간당 상이 - 최대 3시간, 21만원 (1일 평균안전 20건 기준)	- 회의수당: 회당 15만원 - 검토수당: 회당 40만원

자료: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2019년도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의내역을 보면 회차 별 안전 수의 차이가 최대 57건 수준이고, 심의 전 주요 안전검토 자료인 의학영상자료의 숫자도 회차별로 최소 3건에서 최대 72건으로 편차가 상당한 수준이다. 회차별 검토할 의학영상자료의 차이는 회차별 안전의 쟁점수준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매회 회의 참석수당과 검토수당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 운영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참여위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보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건수 및 검토자료 내역]

회 차	개최일	건 수	의학영상자료
제1회	2019. 2. 21.	70건	64개
제2회	2019. 2. 26.	13건	5개
제3회	2019. 4. 25.	69건	71개
제4회	2019. 4. 29.	13건	3개
제5회	2019. 6. 24.	69건	56개
제6회	2019. 6. 27.	15건	13개
제7회	2019. 8. 26.	35건	46개
제8회	2019. 8. 29.	60건	72개
제9회	2019. 10. 28.	39건	7개
제10회	2019. 10. 31.	60건	66개
제11회	2019. 12. 16.	43건	37개
제12회	2019. 12. 19.	42건	21개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사업과 관련한 심의회 운영에 있어 안전의 특성에 따라 위원수당을 세분화·차등화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재설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의 연례적 초과집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공무원인재개발 사업¹⁾은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대학의 위탁교육, 장·단기 국외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2019년 예산현액 458억 2,900만원 중 99.5%에 해당하는 455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무원인재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인재개발	45,829	45,829	0	45,829	45,596	0	233
대학원 위탁교육	4,830	4,830	0	4,830	2,449	0	2,381
국내대학 위탁교육	2,162	2,162	0	2,162	2,008	0	154
외국어교육	465	465	0	465	629	0	△164
민간위탁교육	693	693	0	693	1,171	0	△478
장·단기국외훈련	37,161	37,161	0	37,161	388,96	0	△1,735
기타 운영경비등	518	518	0	518	443	0	75

자료: 인사혁신처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632-300

나. 분석의견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초과집행이 나타났고 2019년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초과집행 금액이 69% 수준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 바,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집행액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2019년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에 외국어교육, 민간위탁교육, 장·단기 국외훈련 분야²⁾에서 각각 1억 6,400만원, 11억 7,100만원, 17억 3,500만원의 초과집행이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교육과 민간위탁교육의 경우 초과집행이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2018년도 결산 시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초과집행액은 오히려 전년대비 32% 이상 증가했다.

민간위탁교육의 2019년 초과집행액 규모는 4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6억 9,300만원)의 6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공무원인재개발 사업 일부 내역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구분	2017	2018	2019
외국어교육	예산액	465	465	465
	집행액	604	530	629
	초과집행액	139	65	164
민간위탁교육	예산액	693	693	693
	집행액	924	1,114	1,171
	초과집행액	231	421	478
장·단기 국외훈련	예산액	39,709	38,057	37,161
	집행액	37,995	34,778	38,896
	초과집행액	△1,514	△3,279	1,735

주: (△금액)은 불용액 규모임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외국어교육 및 민간위탁교육 등의 경우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급·직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은 희망자에 대해 교육을 제공

2) 장·단기 국외훈련 내역사업의 초과집행은 장기 국외훈련에 의한 것이며, 예산편성 당시 환율대비 당해연도 환율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기 때문에 예상대비 위탁교육 수요가 증가할 경우 초과집행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집합교육과 외국어 교육은 수강인원에 비례하여 위탁기관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므로 수강인원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집행액도 증가한다. 특히 2019년도의 경우 관리자급 이상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확대하였고, 부처의 교육확대 요청에 대응하여 해당 과정의 수강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초과집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하였다.

[민간위탁교육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명)

과정명	과정 내용	과정 운영 횟수	예산 편성 현황		집행 현황	
			예산액	수강 인원	집행액	수강 인원
집합교육	- 목적 : 민간분야 최신 지식·기술·경험 등 습득 및 직무역량 향상 - 운영과정 : 글로벌 리더십, 사회적 가치, 4차 산업혁명, 멘토링 등	69개 과정 (상·하반기 2회)	405	1,350	584	2,134
세종청사 아카데미	- 목적 : 공무원 정책역량 배향 및 공무원과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간 교류 기회 마련	26개 과정 (상·하반기 2회)	174	232	200	241
청사 외국어 교실	- 목적 : 세종·대전 지역 공무원의 외국어 교육 지원	89개 과정 (상·하반기 2회)	114	492	387	1,094

자료: 인사혁신처

그러나 청사외국어교실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상인원 대비 3~4배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강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수효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69개 과정 가운데 59개 과정은 20~30명의 인원이 수강한 반면, 특정 부처의 수요

에 따라 추진한 ‘창의력을 키움’ 등의 과정과 관리자급 대상으로 실시한 ‘세종리더십 세미나’ 등은 수강인원이 70여명 이상으로 수강인원이 많아 편차가 상당하다.

[민간위탁교육 중 50명 이상 수강한 집합교육 내역]

(단위: 명)

집합교육 프로그램 명	수강인원
세종리더십세미나	206
HRD 전문성 강화 과정	146
나를 찾는 즐거움1	102
창의력을 키움	95
감정관리 공감여행 과정	75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관계변화	50
성공적인 직무보좌를 위한 전문비서교육	50
나를 찾는 즐거움 2	50
SERICEO ¹⁾	100
Creative TV	100

주: 1) SERICEO과정과 Creative TV프로그램의 경우 실제로는 온라인 콘텐츠 교육으로 진행됨
자료: 인사혁신처

사업 특성 상 인사혁신처에서 프로그램별 사업인원을 조정할 수 없다면 당초 면밀한 수요분석에 근거하여 교육사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동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교육훈련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편성된 기타보전금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초과집행을 하고 있어 동 재원이 감소할 경우 수요에도 불구하고 적정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면밀한 수요분석에 근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수강인원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업방식을 검토하여 연례적인 초과집행 문제를 개선하고 동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임대주택건립¹⁾ 사업은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공무원에게 시중 전세금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은 2019년 당초계획액 421억 200만원에서 271억 8,100만원 감액된 계획현액 149억 2,100만원 중 149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했다.

[2018회계연도 임대주택건립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임대주택건립	42,102	13,557	1,364	14,921	14,916	0	5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임대주택건립 사업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불용 및 계획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건립 사업은 공무원 연금공단이 직접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과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임대주택건립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2019년도에는 직접사업으로 서울 개포9단지 임대주택건립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민간 아파트 재건축 참여 사업으로 9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251-361

[2019회계연도 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당초	변경			
서울개포9단지	29,894	5,655	1,364	7,019	7,017
재건축참여	12,208	7,902	0	7,902	7,899

자료: 행정안전부

이 중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은 2018년 4월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12월에 착공, 2021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인·허가문제 및 지역 주민(학교) 등과의 협의로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²⁾되면서 2018년도 기금 계획액 137억 8,600만원 중 11억 300만원만을 집행하고 13억 6,400만원은 이월했으며 113억 1,900만원을 불용했다.

이러한 사업지연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예산편성 당시 당초 일정에 근거하여 298억 9,400만원을 계획하였다. 2019년 3월에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착공시기가 8월경으로 순연되었으나, 2019년 12월에 예산의 81.1%(242억 3,900만원)를 감액한 56억 5,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다.

인사혁신처는 대규모 건축 사업인 만큼 인·허가 및 주민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보상요구 문제로 예상하지 못한 착공지연이 발생^(18년 12월 예상→19.8월)했으며, 이로 인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공사비를 퇴직급여 부족액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일정의 순연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2)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전체 아파트 단지를 소유하고 있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전반적인 적용이 어려워 공무원 연금공단은 「주택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개포 9단지 재건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제의 인·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사업 관련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추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었다. 더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주변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원초등학교 교사증원 비용부담 및 중동중학교 학교시설 교체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 추가적 행정소요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예산편성 후 연도 중에 기존 계획액의 81% 이상을 감액 변경한 것은 소요액 계상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당해연도 3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을 당시 공사일정의 순연과 이로 인한 기금계획액의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2019년 11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연도 말에 변경한 점을 감안하면 면밀한 집행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향후 사업의 추진일정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하게 집행관리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¹⁾²⁾ 사업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과정, 정보화교육과정, 글로벌역량교육 등 유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가공무원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19년 초과지출액 7억 2,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3억 3,800만원 중 98.8%인 23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사업은 국가공무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³⁾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교육생에 대한 교육편의 제공 및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운영 경비로 사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인재원 수입 대체경비	1,611	1,611	0	727	2,338	2,309	0	29

자료: 인사혁신처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731-650

2)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는 유료과정의 교육비를 수입으로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충당하는 구조이다.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경우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례적인 초과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및 초과지출승인액 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는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 5억 3,800만원의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이보다 약 2억원이 더 증가한 7억 2,700만원의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하였다.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1,347	2,142	1,682	1,611
예산현액	1,347	2,142	2,220	2,338
초과지출승인액	0	0	538	727
집행액	1,239	1,856	2,190	2,309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초과지출의 주요 사유가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외국 정부의 교육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매년 실수요보다 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되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예산의 현실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계획인원(A)	4,424	3,980	3,853	3,034
실제교육인원(B)	4,460	2,430	2,988	2,493
예측 차이(B-A)	36	△1,550	△865	△541

자료: 인사혁신처

실제 동 사업으로 추진되는 7개 교육과정 중 연례적으로 초과지출 사유가 되는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협력사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외국 공무원 교육기관 개발 컨설팅 과정’과,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외국 정부 주문형 교육 과정’, 그리고 ‘외국공무원 교육기관 개발 컨설팅 과정’이다.⁴⁾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사업 계획과 집행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과정내용	계획내역	집행내역
		과정횟수·인원	과정횟수·인원
고위정책과정	공직가치관, 국정철학 및 정책역량 심화교육 등	840	826
		1회·72명	1회·69명
전문교육과정	직무역량기반 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강화	56	55
		10회·330명	14회·486명
정보화교육과정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 및 정책현장과의 연계	175	174
		65회·1,307명	58회·1,462명
글로벌역량 강화과정	글로벌 기본·전문교육, 장기국외훈련자과정	103	103
		9회·255명	8회·285명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공공분야 인사·HRD, 행정혁신 등 교육	51	247
		2회·40명	3회·41명
외국정부주문형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발전경험, 우수 혁신사례 공유 등	54	166
		1회·20명	5회·80명
외국공무원교육기관 개발컨설팅	우즈베키스탄 국가행정 아카데미 역량강화사업	72	434
		1회·10명	4회·70명
교육운영부대경비	기숙사시설 운영	243	305
국정과제워크숍	고위공직자 국정성과에 대한 종합적 이해력 제고	17	-
		5회·1,000여명	-

자료: 인사혁신처

그러나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의 특성 상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렵다고 해도 적정예산 확보와 더불어 사전협의 강화 및 수요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편성과 실제 운영 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연례적인 초과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단, 2019년 초과지출액에는 국가인재원 기숙사시설 운영경비 6,200만원 증액분이 포함된다.

특히 동 사업의 경우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53조⁵⁾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연도 중 별다른 절차 없이 부처에서 증액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이다. 초과지출 승인액은 지출목적이 제한⁶⁾되지만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세출예산 추계를 통해 연도 중 초과지출 승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면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근거한 집행을 통해 초과지출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6) 초과수입 직접 관련 경비로 지출 목적이 제한된다.

가. 현 황

공무원 연금대부사업¹⁾은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확보 및 기금증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추진하는 기금 사업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년 계획현액 8,000억원 중 99.9%인 7,999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공무원 연금대부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공무원 연금대부 사업	600,000	800,000	0	800,000	799,919	81

자료: 인사혁신처

나. 분석의견

공무원연금대부(융자)사업 계획액은 대부액 조기소진에 따라 연례적으로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2,0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으므로, 적정 계획액을 반영하여 과도한 기금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은 공무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으로, 일반대출과 특례대출로 구분된다. 일반대출은 '12년까지 대출상환 완료 후 신규대출이 없는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대부이고, 특례대출은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 3자녀 이상을 둔 경우, 신혼인 경우,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12종의 요건을 한정하여 대부하는 것을 지칭한다. 2019년도 대출이율은 일반대출의 경우 평균 3.12%, 특례대출은 3%수준이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731-650

공무원연금대부는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대출 소요기간이 1일로 입금이 신속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입금 희망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대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대부 연도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출건수	37,031	46,130	37,419	39,754
대출금액	6,300	8,000	7,954	7,999
회수금액	6,395	6,575	7,192	7,045

자료: 인사혁신처

최근 5년 간 동 사업 계획액의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모두 상반기(각 5월, 3월)에 모두 소진되었고 2017년과 2018년에도 7월에 전액 소진되었다. 기존 계획액이 모두 상반기 중에 소진되면서, 2017년부터는 연례적으로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2,000억원을 증액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대부 계획액 소진시기]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	증액분	당초	증액분	당초	증액분
대출재원	7,000	6,300	6,000	8,000	6,000	8,000	6,000	8,000
소진일	5.19.	3.16.	7.10.	10.16.	7.13	10.10.	7.11.	10.13.

자료: 인사혁신처

한편, 공무원연금대출은 퇴직금에서 원리금 공제가 가능하여 채권 부실화 가능성이 낮고, 수익률도 2017년 3.3%, 2018년 3.6%, 2019년 3.3%로 안정적인 기금증식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대부수요와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운용과의 수익률 비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대부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연례적인 기금 계획액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인사혁신처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공무원연금기금 임대주택건설 사업의 연례적인 불용 및 기금계획 변경 지양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7



경찰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633억 3,900만원이며, 1조 9,766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8.8%인 9,646억 1,900만원을 수납하고 9,871억 1,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49억 4,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82,507	882,507	882,507	1,892,734	880,702	987,089	24,944	46.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80,832	80,832	80,832	83,939	83,917	22	0	100.0
합계	963,339	963,339	963,339	1,976,673	964,619	987,111	24,944	48.8

자료: 경찰청

2019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조 496억 7,500만원이며, 이 중 97.3%인 10조 7,516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90억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89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939,083	10,947,082	10,964,576	10,673,003	9,043	288,965	97.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80,832	80,832	80,832	74,397	0	6,435	9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267	4,267	4,267	4,267	0	0	100.0
합계	11,024,182	11,032,181	11,049,675	10,751,667	9,043	288,965	97.3

자료: 경찰청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 8,400만원(0.3%) 이 감소한 9,159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11억원(5.9%)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864,826	918,333	918,333	915,949	△2,384	51,123

자료: 경찰청

2019회계연도 경찰청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797억 6,900만원(2.5%)이 감소한 10조 7,038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393억원(4.3%)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10,264,544	10,975,662	10,983,661	10,703,892	△279,769	439,348

자료: 경찰청

다.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은 14조 1,268억 5,000만원, 부채는 1,994억 3,300만원으로 순자산은 13조 9,274억 1,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조 29억 9,600만원, 일반유형자산 13조 376억 400만원, 무형자산 459억 1,2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03억 3,8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535억 2,500만원(5.6%)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경찰관서 신축 등에 따른 토지 4,047억 5,700만원 증가, 건물 80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356억 5,300만원, 장기충당부채 742억 8,0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343억 6,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75억 6,400만원(16.0%)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충당부채 약 225억원의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4,126,850	13,373,325	753,525	5.6
Ⅰ. 유동자산	1,002,996	991,094	11,902	1.2
Ⅱ. 일반유형자산	13,037,604	12,299,749	737,855	6.0
Ⅲ. 무형자산	45,912	46,865	△953	△2.0
Ⅳ. 기타비유동자산	40,338	35,617	4,721	13.3
부 채	199,433	171,869	27,564	16.0
Ⅰ. 유동부채	35,653	33,464	2,189	6.5
Ⅱ. 장기차입부채	55,135	50,295	4,840	9.6
Ⅲ. 장기충당부채	74,280	51,816	22,464	43.4
Ⅳ. 기타비유동부채	34,366	36,294	△1,928	△5.3
순 자 산	13,927,417	13,201,456	725,961	5.5
Ⅰ. 기본순자산	1,348,315	1,274,624	73,691	5.8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1,792,052	11,367,375	424,677	3.7
Ⅲ. 순자산 조정	11,791,872	11,367,226	424,646	3.7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1조 7,939억 4,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3,865억 5,400만원, 관리운영비 10조 5,544억 4,100만원, 비배분비용 72억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61억 8,700만원, 비배분수익 1,178억 8,6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억 8,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267억 5,300만원(3.8%) 증가한 11조 7,941억 2,8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522억 3,200만원(4.5%)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치안인프라구축프로그램(3,714억 6,900만원)과 교통안전·소통확보 프로그램(2,853억 644만원), 사회질서 유지 프로그램(2,219억 1,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조 3,194억 9,400만원과 경비 2조 2,349억 4,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68억 157만원과 기타비용 4억 5,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350,366	1,274,624	75,742	5.9
가. 프로그램 총원가	1,386,554	1,307,579	78,975	6.0
나. 프로그램 수익	36,187	32,954	3,233	9.8
II. 관리운영비	10,554,441	10,102,209	452,232	4.5
III. 비배분비용	7,207	73,069	△65,862	△90.1
IV. 비배분수익	117,886	82,527	35,359	42.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1,794,128	11,367,375	426,753	3.8
VI. 비교환수익 등	180	150	30	2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1,793,948	11,367,226	426,722	3.8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13조 2,014억 5,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3조 9,329억 1,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314억 5,600만원(5.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1조 7,939억 4,800만원인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 규모는 채원의 조달 및 이전 12조 2,619억 1,700만원, 조정항목 2,634억 8,600만원 등 총 12조 5,254억 3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채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채원의 조달 12조 4,739억 3,4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채원의 이전 △8,620억 5,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511억 6,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3,201,456	12,705,689	495,767	3.9
II. 재정운영결과	11,793,948	11,367,226	426,722	3.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2,261,917	11,611,875	650,042	5.6
IV. 조정항목	263,486	251,117	12,369	4.9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3,932,912	13,201,456	731,456	5.5

자료: 경찰청

라.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경찰청의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38억원이 전출되었다.

[2019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일 반 회 계		전출 43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8,807	106,730		839	74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42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의경운영및관리 사업, ② 교통행정전산화 사업 등이 있다.

의경운영및관리사업은 내역사업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을 실제 소요 예산에 부합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5억 3,500만원이 감액(1,234억 5,300만원→1,219억 1,800만원)되었고¹⁾, 전산시스템 보강 사업을 자치경찰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경찰 교통전산 연계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20억 3,000만원이 감액(26억 7,700만원→24억 7,400만원)되었다.²⁾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청사시설관리 사업, ② 사이버 수사시스템 사업 등이 있다.

21~30년 경과된 노후 경찰관서 리모델링 및 여성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69억원이 증액(251억 8,900만원→320억 8,900만원)되었고, 사이버 치안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불법자료 검색 및 추적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0억원이 증액(72억원→82억원)되었다.

1)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2)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경찰청은 ①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치안역량 강화, ② 사회의 정의를 실현을 위한 법집행 활동 적극 지원, ③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경찰청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13개 세부사업 예산 일부를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목으로 전용한 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우회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반영한 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용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집행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의 동의를 근거로 진술녹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정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진술녹음 대상절차 및 녹음된 내용의 용도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차 시범운영에 비하여 2차 시범운영 실시 결과 조사대상자의 진술녹음 실시율과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은 실시율이 낮은 원인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여 보완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진술녹음제도 전면 시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현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¹⁾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제주자치경찰²⁾을 대상으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³⁾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제주자치경찰이 수행 가능한 사무의 범위와 인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시범운영 현황]

구분		2018년 4월	2018년 7월	2019년 1월	2020년 2월
인력	제주자치경찰	178명	274명	411명	419명
	국가경찰 파견	27명	123명 (27명+96명)	260명 (123명+137명)	268명 (260명+8명)
사무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제주 동부서	제주 전역	제주 전역	좌동
	112출동	-	제주 동부서	제주 전역	좌동
	지구대·파출소	-	1개소	7개소	좌동
	주취자 센터	-	-	2개소	좌동

자료: 경찰청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 1) 우리나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이념 구현 등을 위하여 여러 차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치적 상황 및 다양한 자치경찰 모델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인하여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사무를 각각 병행하여 수행하는 이원화 모델이다.
- 2)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은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3)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한 제주자치경찰단은 당초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경찰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확대 시범운영은 제주자치경찰에 지구대·파출소 등을 임시로 편성하여 국가경찰을 파견하고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이원화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1-1.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위한 연례적 전용 문제

가. 현 황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경찰청은 2019년도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등 일반회계의 13개 사업에서 총 13억 8,5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액 교부하였다.

[2019회계연도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관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등 13개 사업	0	0	0	1,385	1,385	1,385	0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13개 세부사업 예산 일부를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목으로 전용한 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우회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반영한 후 집행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경찰청의 전용 내역을 보면,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등 13개 세부사업에서 운영비(210)·업무추진비(240) 등 다양한 비목의 예산 총 13억 8,5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목으로 전용한 후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경찰청은 최초로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한 2018년부터 매년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8년 4억 1,780만원, 2019년 13억 8,520만원, 2020년 14억 7,53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확대 시범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목으로 전용한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세목(코드)	2018년	2019년	2020년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1131-311)	일반수용비(210-01)	1,600	2,400	3,400
범죄대응역량강화(1131-312)	특근매식비(210-05)	450	2,190	2,190
여성청소년보호활동(1132-311)	일반수용비(210-01)	50,110	100,117	92,725
	공공요금및제세(210-02)	416	600	600
아동안전지킴이(1132-313)	일반수용비(210-01)	877	1,418	1,418
교통안전교육홍보(1331-311)	일반수용비(210-01)	13,100	23,580	23,580
교통안전활동(1331-312)	일반수용비(210-01)	4,097	7,161	7,162
	특근매식비(210-05)	27,720	49,140	49,140
교통과학장비관리(1331-313)	시설장비유지비(210-09)	5,484	6,292	6,292
차량관리(4231-312)	유류비(210-08)	55,486	206,027	227,774
	시설장비유지비(210-09)	5,105	4,056	4,056
피복관리(4231-313)	피복비(210-03)	67,151	169,442	111,590
경찰유무선망개선(4233-311)	공공요금및제세(210-02)	7,080	12,600	12,600
제주청기본경비(총액)(7111-242)	특근매식비(210-05)	7,350	54,179	64,898
제주청기본경비(7111-282)	일반수용비(210-01)	4,635	51,180	94,031
	공공요금및제세(210-02)	4,175	41,030	60,943
	유류비(210-08)	560	8,736	0
	시설장비유지비(210-09)	1,680	17,605	18,991
	국내여비(220-01)	1,820	23,222	43,975
	관서업무추진비(240-02)	500	6,668	6,756
행정업무지원(7131-311)	특정업무경비(250-03)	158,400	597,559	643,200
계		417,796	1,385,201	1,475,321

자료: 경찰청

이처럼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을 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확정을 우회하는 집행으로, 이러한 목적의 전용을 승인한 것은 재정당국이 국회의 예산 심사를 우회하는 형태의 집행을 허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특히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은 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 내용이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확대 시범운영에 따라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국가경찰 사무 일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세부사업에서 일정 예산을 전용한 후 제주특별자치도도에 보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2019년에 전용한 총 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35%이나, 각 세부사업별 전용 금액 증가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1000%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등 세부사업과 관련된 사무 이관을 고려한 기준 하에서 전용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성과 운영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확대 시범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예산의 재원을 전용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안정적인고 계획적인 확대 시범운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경찰청은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후 국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다.

1-2.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집행 관리 소홀 문제

가. 현 황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13개 세부사업에서 총 13억 8,5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목으로 전용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액 교부하였다.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성격의 보조금을 편성·집행하는 비목으로, 해당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관리되어야 한다.

나. 분석의견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¹⁾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부신청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9년도에 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별도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최초로 확대 시범운영 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반복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보조금을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교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청은 이를 하나의 건으로 관리하여 지침을 위반하였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자치단체보조사업 집행 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교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13개 세부사업에서 각각 일정 금액을 자치단체경상보조 비목으로 전용하였으나, 세부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해당 세부사업에서 바로 집행하였으므로 13개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교부관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실적보고 및 정산 시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교부관리하여 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2. 자치단체보조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최소 2차례에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청은 연례적으로 보조금을 1차례에 전액 교부하여 지침을 위반하였다.

경찰청은 2018년도에는 4월 30일과 8월 30일 총 2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하여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2019년에는 4월 4일, 2020년에는 4월 24일 각각 한 차례에 보조금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였으며, 이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2. 자치단체보조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향후 보조사업 집행 시 관련 법률 및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관리 소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진술녹음제도¹⁾는 수사과정의 임의성·투명성 제고 및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녹음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경찰청은 2019년도 예산현액 7억 9,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범죄수사역량강화	51,224	51,224	0	0	51,224	51,039	0	185
진술녹음제도	791	791	0	0	791	791	0	0

자료: 경찰청

진술녹음제도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존 영상녹화 대상 사건²⁾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7월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포함한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 2018년 1차 시범사업과 2019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 12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전면 시행하였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위하여 2019년 진술녹음장비 구매, 진술녹음 저장장치 및 관리시스템 개발에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231-311의 내역사업

2)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경찰청 지침)에 따라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 피의자 신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인 사건의 피해자 조사 등에는 영상녹화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2019년 말 전면 시행된 진술녹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찰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의 동의를 근거로 진술녹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정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진술녹음 대상절차 및 녹음된 내용의 용도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를 경찰청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³⁾ 경찰청은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도 진술녹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술녹음제도보다 앞서 도입된 진술영상녹화제도는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⁴⁾를 두고 있다는 점, 진술녹음제도의 대상절차 및 녹음된 내용의 용도 등이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제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청은 향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진술녹음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1차 시범운영에 비하여 2차 시범운영 실시 결과 조사대상자의 진술녹음 실시율과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청은 실시율이 낮은 원인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여 보완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진술녹음제도 전면 시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제20대국회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2012930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2002402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4)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2019년도 말 진술녹음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1차 시범운영은 대전지방청 2개 서에서 3개월 간 실시하였으며, 2차 시범운영은 범위를 확대하여 전 지방청의 21개 경찰관서에서 3개월간 실시하였다.

그런데,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진술녹음 실시율이 44.2%에서 19.4%로 감소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된 진술녹음 만족도는 81.7%에서 5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결과]

구분	1차 시범운영	2차 시범운영
기간	2018. 1. ~ 2018. 3.	2018. 12. ~ 2019. 3.
실시 기관	대전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유성경찰서	전 지방청 21개 경찰관서
실시 방식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의 모든 과정을 녹음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 기존의 조서는 병행하여 작성	
실시율	44.2% (679건 중 300건 실시)	19.4% (14,739건 중 2,858건 실시)
만족도	진술녹음 실시 대상자 중 81.7% 만족	진술녹음 실시 대상자 중 58% 만족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2차 시범운영 당시 성폭력사건 등 조사대상자가 녹음을 기피하는 사건을 다루는 수사부서가 포함되었고,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진술녹음실 수가 부족하여 진술녹음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실시율이 1차 시범운영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진술녹음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진술녹음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조사대상자 인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은 진술녹음실 증설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진술녹음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확인하는 등 제한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족도의 경우에도 경찰청은 조사대상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진술녹음제도 운영 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등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가. 현 황

지문·얼굴검색을 통한 모바일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¹⁾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신원확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외사경찰활동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경찰청은 2019년도 예산액 1억 8,9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외사경찰활동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외사경찰활동	18,396	18,396	0	0	18,396	17,999	0	397
지문·얼굴검색을 통한 모바일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189	189	0	0	189	0	0	189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2019년도 신규 사업인 지문·얼굴검색을 통한 모바일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로 인해 무산되었으므로,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3132-311의 내역사업

2017년부터 경찰관은 직무 수행시 폴리폰(경찰관 업무 전용 모바일 단말기)으로 외국인 체류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에 필요한 특정 정보(외국인등록번호·영문명·생년월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신원을 확보할 수 없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2019년 지문·얼굴검색을 통한 모바일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는 법무부의 지문·사진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과 폴리폰을 연계함으로써,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2)에 근거하여 보호조치를 취할 때 외국인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관이 외국인인 구호 대상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문·얼굴정보를 폴리폰으로 수집하여 법무부 시스템에 제공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해당 생체정보와 일치하는 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폴리폰으로 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2019년도 동 사업의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액 1억 8,9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19년 9월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지문·얼굴정보 수집을 통한 신원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부합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의·의결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져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문·얼굴검색을 통한 모바일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경과]

구분	추진 경과
2018. 3.	경찰관 직무 수행상 외국인 신원조회 필요성 제기
2018. 8.	모바일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결정, 예산 반영 논의
2018. 12.	경찰청·법무부 회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필요 의견 제기
2019.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 외국인 구호대상자의 지문 또는 사진을 수집하여 법무부에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이 곤란하더라도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이나 사진을 수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업 계획 수립과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향후 경찰청은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를 포함하여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명확히 한 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R&D)¹⁾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체계와 관련된 법제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2019년도 예산현액 37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R&D)	3,700	3,700	0	0	3,700	3,700	0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3개 신규 과제에 대하여 1차년도 9개월분의 과제비를 편성하였으나, 2개 과제의 경우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실제 연구 기간이 5개월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분의 과제비를 지급하여 예산을 과다 집행하였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시내 도로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기준 마련 등이 요구됨에 따라, 경찰청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하였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4235-501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다년도 신규과제에 대하여는 1차년도에 연구기관 선정 및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9개월분의 과제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동 사업의 3개 과제에 각 9개월분 연구비 총 37억원을 편성하였다.

[세부 과제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안)
계	3,700	3,700	8,883
자율주행 관련 운행체계 및 AI 운전능력 검증체계 개발	600	600	950
자율주행을 위한 AI 신호제어시스템 개발	1,300	1,300	2,850
IoT 기반 교통안전시설 정보제공 및 운영관리 기술개발	1,800	1,634	4,700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	166	383

자료: 경찰청

경찰청과 동 사업의 전담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2월 경 사업을 공고하여 3월 중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4월부터 수행기관이 연구에 착수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 추진 계획]

일정(안)	추진내용
2019. 2. 15	사업 공고
2019. 2	사업설명회 개최
2019. 3. 16	신청서 접수마감
2019. 3.	선정(서류·발표·총괄)평가 실시
2019. 4.	선정과제 연구 착수

자료: 도로교통공단

그런데 동 사업의 2019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1개 과제(자율주행 관련 운행체계 및 AI운전능력 검증체계 개발)의 경우 계획대로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2개 과제(자율주행을 위한 AI기반 신호제어시스템 개발, IOT 기반 교통안전 시설 정보 제공 및 운영관리 기술 개발)의 경우 주관 기관 선정 지연으로 인하여 7월 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과제 수행 기간이 5개월에 그쳤다.

[과제별 수행기간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간		주관기관	예산액	집행액
	총 기간	1차년도			
자율주행 관련 운행체계 및 AI 운전능력 검증체계 개발	33개월 (2019.4.1.~ 2021.12.31.)	9개월 (2019.4.1.~ 2019.12.31.)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600	600
자율주행을 위한 AI기반 신호제어 시스템 개발	29개월 (2019.7.30.~ 2021.12.31.)	5개월 (2019.7.30.~ 2019.12.31.)	서울연구원	1,300	1,300
IOT 기반 교통안전 시설 정보 제공 및 운영관리 기술 개발	29개월 (2019.7.25.~ 2021.12.31.)	5개월 (2019.7.25.~ 2019.12.31.)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1,800	1,800

자료: 경찰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과제 착수가 지연된 2개 과제에 대해서도 편성된 과제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이는 예산에 편성된 9개월분의 과제비 중 4개월분의 과제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과제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연도 말까지 1차년도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인원 수와 투입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비를 전액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지침이 예산결산 과정과 연구개발 사업 관리의 연계를 위하여 회계연도와 과제연도 종료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과제 공모가 지연되어 재공고하게 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연구비 규모를 축소하여 공고하고 차년도 예산을 조정하여 연구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경찰청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과제 선정이 지연되어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바와 달리 연구기간이 단축된 경우 연구기간에 비례하여 적정 규모의 과제비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¹⁾는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경찰청은 2019년도 예산현액 89억 3,600만원 중 89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8,635	8,635	0	301	8,936	8,908	0	28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100	100	0	0	100	95	0	5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첫째, 경찰청은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상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를 현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위반한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향후 우수 경찰관에 대한 대회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타운영비(210-16)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2019년 경찰청은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사업에서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반수용비(210-01) 총 9,5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그 중 1,800만원을 무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찰관에게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111-262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²⁾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수용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성격의 비목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를 재원으로 하여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 이는 국고금관리법령 및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향후 우수 경찰관에게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현금 지급이 허용되는 기타운영비(210-16)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최근 3개년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상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지급액	1,800	1,800	1,800
집행 비목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210-01)
지급 형태	현금 지급	현금 지급	현금 지급
지급 대상	경찰청장기 무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찰관		
지급 내용	총 4개 종목 1위(10명): 각 100만원 2위(10명): 각 50만원 3위(10명): 각 30만원		

자료: 경찰청

둘째,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는 경무인사기획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본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매년 경찰인재개발원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인재개발원 사업비로 이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된다. 이 중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를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공공요금·여비·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등이 기본경비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매년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사업 예산으로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행사 추진은 기본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요사업비를 통해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경찰청장기 무도대회가 연례적으로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사업비 중 일부를 경찰인재개발원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는 점, 실질적인 행사 개최 부서는 경찰인재개발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인재개발(4132-311) 사업 내에 경찰청장기 무도대회를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예정)
집행액	93	95	95
세부사업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7111-262)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7111-262)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7111-262)
최종 집행관서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인재개발원

자료: 경찰청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지문 등 사전등록률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활동 및 홍보 강화 필요

가. 현 황

지문 등 사전등록¹⁾은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여성청소년보호활동의 내역사업이다. 경찰청은 2019년도 예산현액 12억 900만원 중 12억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13,422	13,422	0	0	13,422	13,327	0	95
지문 등 사전등록	1,209	1,209	0	0	1,209	1,200	0	9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 이용자 중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의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방문활동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 신청에 따라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지문 등 정보를 실종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신원 미확인 아동등을 보호하게 될 경우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2-311의 내역사업

경찰청은 2012년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²⁾에 근거하여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발견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미등록 시 약 56시간이나, 사전등록 시 소요시간은 약 52분으로 현저히 단축되어 제도의 효과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전등록 여부에 따른 발견 평균 소요시간 비교]

구 분	평균소요시간	18세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사전등록 시	52.37분	52.59분	52.82분	52.27분
미등록 시	3,388분 (56.4시간)	4,902분 (81.7시간)	4,554분 (75.9시간)	708분 (11.8시간)

자료: 경찰청

그런데 대상자별 사전 등록 현황을 보면, 아동의 경우 사전등록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나 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 20%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사전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대상자별 사전등록 현황(2019년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누계	18세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대상	9,005,545	8,128,423	335,760	541,362
사전등록	4,536,591	4,304,764	92,871	138,956
사전등록률	50.4	53.0	27.6	25.6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사전등록제 인지도가 높고, 현장 방문 등록 시 사전등록 비율이 높으나 장애인·치매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연령층이 아동 보호자의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모바일 앱을 통한 자체등록 비율이 낮고 인지도 역시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발견에 소요되는 시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등록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장애인 및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보호 및 치료시설 등과 연계하여 현장 방문 등록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치매환자의 사전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행정업무지원¹⁾은 공공요금, 경무·인사관리, 인사이동여비,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등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2019년도 예산현액 4,535억 8,900만원 중 4,39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41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사정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업무지원	453,568	453,568	22	△3	453,589	439,450	0	14,138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고용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경찰청은 행정업무지원 사업에서 3억 7,727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 집행하였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³⁾는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그 근로자의 총수의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일반회계 7131-311

2)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1000분의 3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동 법 제33조4)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사업주의 지위에서 민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경찰청도 동 법률이 정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3억 7,727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 집행하였고, 2020년에도 2019년 대비 4억 9,249만원이 증액된 8억 6,977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였다.⁵⁾

[경찰청 장애인고용부담금 집행 및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천원, 명)

연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집행액	경찰청 민간근로자 고용 현황			
		상시근로자 (A)	장애인고용 (B)	장애인고용률 (B/A)	의무 고용률
2017	159,928	1,885	35	1.85	2.9
2018	156,346	1,800	36	2.00	2.9
2019	377,274	2,426	37	1.52	2.9
2020	869,768	3,182	48	1.50	3.4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민간인력 직접 고용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다.

- 3)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 4)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 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각 부처는 매년 1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동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적으로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집행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은 민간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장비관리유지¹⁾는 현장 경찰관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장비를 개발·보급하여 치안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찰청은 2019년도 예산현액 161억 100만원 중 149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장비관리유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비관리유지	15,892	15,892	209	0	16,101	14,904	1,139	58
실종자 수색용 경찰 무인비행 장치	2,867	2,867	0	0	2,687	1,741	1,126	0

자료: 경찰청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내역사업 중 실종자 수색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사업은 사건현장에서 실종자에 대한 선제적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예산에 2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사업에서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관리유지 사업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 공고업체 선정 등 계약 절차를 상반기에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4231-314

경찰청은 2019년도 예산에 실종자 수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드론) 구입을 위하여 2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36대의 드론 및 임무관제장비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실제 2019년도 동 사업의 집행 현황을 보면, 총 38대의 드론을 구입하였으며, 예산현액 28억 6,700만원 중 17억 4,098만원을 집행하고 11억 2,55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이 60.7%에 그쳤다.

[실종자 수색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예산액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내역	이월액
드론 구입비	2,687	1,561	1,126
수리비용	180	180	0
계	2,867	1,741	1,126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드론의 주요 기능 부품 중 하나인 통신모듈의 입고가 늦어지면서 제품 완성 후 이루어지는 완제품 시험 및 검사 일정 역시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잔금을 이월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입찰 공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9년 9월이라는 점에서 상반기부터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을 경우 부품 입고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수색용 경찰 무인비행장치 사업 추진 경과]

- 경찰 무인비행장치 사전 규격 공개(2019. 8. 27 ~ 2019. 9. 4)
- 경찰 무인비행장치 입찰공고(2019. 9. 9 ~ 2019. 10. 2)
- 경찰 무인비행장치 성능시험 및 제안서 평가(2019. 10. 7 ~ 8)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2019. 10. 18)
- 경찰 무인비행장치 8대 완제품 검사 완료(2019. 12. 12)
- 경찰 무인비행장치 8대 1차 납품 완료(2019. 12. 17)
- 경찰 무인비행장치 30대 완제품 검사(2020. 1. 16 ~ 22)
- 경찰 무인비행장치 30대 2차 납품(2020. 1. 28 ~ 31)

아울러,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이월액 규모가 2018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도의 경우도 이월액 규모가 상당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 사유도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약 및 납품 지연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여러 품목의 장비를 대량 구입하는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특성상 구매계약 및 납기 지연에 따른 사고 이월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장비관리유지 사업 최근 3년간 결산 내역]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7	11,776	12,408	10,237	86.9	82.5	2,118	53
2018	12,873	14,992	14,731	114.4	98.3	209	51
2019	15,892	16,101	14,904	93.8	92.6	1,139	58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장비관리유지 사업에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절차를 상반기에 조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경찰청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비에서 경상경비 성격인 종합부동산세 등 집행 부적정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55
2	도로교통공단의 연구개발 전담기관 업무의 법적 근거 미흡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억 3,800만원이며, 8억 9,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8,600만원 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38	838	838	892	886	6	0	99.3
합계	838	838	838	892	886	6	0	99.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480억 3,700만원이며, 이 중 94.4%인 3,287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1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43,572	343,572	348,037	328,719	166	19,152	94.4
합계	343,572	343,572	348,037	328,719	166	19,152	94.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산은 6,155억 2,600만원, 부채는 24억 100만원으로 순자산은 6,131억 2,6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7억 1,800만원, 일반유형자산 6,009억 3,800만원, 무형자산 60억 7,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7억 9,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60억 2,200만원(12.0%)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 및 자산재평가, 신축청사 취득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675억 6,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8억 4,300만원, 장기차입부채 14억 4,500만원, 장기충당부채 1억 1,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 4,000만원(5.5%) 감소하였다. 이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 1억 5,200만원 증가,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부채의 감소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2억 1,9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615,526	549,504	66,022	12.0
Ⅰ. 유동자산	3,718	4,148	△430	△10.4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600,938	533,376	67,562	12.7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6,073	7,727	△1,654	△21.4
Ⅵ. 기타비유동자산	4,797	4,254	543	12.8
부 채	2,401	2,541	△140	△5.5
Ⅰ. 유동부채	843	691	152	22.0
Ⅱ. 장기차입부채	1,445	1,664	△219	△13.2
Ⅲ. 장기충당부채	113	186	△73	△39.2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613,126	546,963	66,163	12.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669억 7,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873억 2,200만원, 관리운영비 2,836억 7,900만원, 비배분비용 14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54억 9,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11억 3,100만원(△16.2 %) 감소한 3,669억 7,400만원이며, 이는 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774억 1,0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873억 2,200만원으로 선거의공정한관리 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025억 600만원과 경비 811억 7,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14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5억 7,200만원, 기타수익 48억 5,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87,322	164,732	△77,410	△47.0
II. 관리운영비	283,679	274,960	8,719	3.2
III. 비배분비용	1,468	182	1,286	706.6
IV. 비배분수익	5,494	1,769	3,725	210.6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66,974	438,105	△71,131	△16.2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66,974	438,105	△71,131	△16.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5,469억 6,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131억 2,600만원으로 전기 대비 661억 6,300만원(12.1%)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순자산이 전기 대비 259억 3,4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711억 3,1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전기 대비 469억 6,400만원 증가,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778억 6,7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3,911억 8,6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3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473억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546,963	521,029	25,934	5.0
II. 재정운영결과	366,974	438,105	△71,131	△16.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85,837	463,704	△77,867	△16.8
IV. 조정항목	47,300	336	46,964	13,977.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613,126	546,963	66,163	12.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②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이 있다.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은 과다 편성된 홍보대사 위촉예산 700만원과 내역사업인 ‘선거장비 통합보관 관리’ 등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면서 24억 9,200만원이 감액(41억 8,800만원→16억 9,600만원) 되었다¹⁾.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은 A-WEB 대한 감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부 ODA사업 예산이 감액(54억 100만원→15억 100만원) 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선거장비 및 물품관리 사업, ②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사업이 있다.

선거장비 및 물품관리 사업은 선거 때마다 각 선거관리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선거장비·물품관리 예산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면서 24억 8,500만원이 순수 증액되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사업은 선거정당관계자 과정 확대와 유권자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유권자 정치페스티벌’ 사업을 위하여 300만원이 증액(36억 2,000만원→36억 2,300만원)되었다.

1)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②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③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④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 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 ⑥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 ⑦ 위원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역량 강화, ⑧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정치환경 조성, ⑨ 세계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등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비용은 이를 위탁하는 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집행은 별도의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입과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정려금은 법률에 명확한 지급근거를 갖추어 예산외로 운용되는 선거경비가 아닌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추진활동비나 직원 간담회비 등 일상적·경상적 경비지출을 위해 예비금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위탁선거관리 사업¹⁾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경선 및 협동조합의 조합장, 국립대학 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역변경 등에 의한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5억 7,400만원 중 80.3%에 해당하는 4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탁선거관리	663	663	0	△223 134	574	461	0	11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일부 공통경비를 외에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131-306

위탁선거관리 사업에서 추진하는 위탁선거 경비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및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동 사업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각 위탁선거별 준비·관리를 위한 경비는 동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위탁선거를 위탁하는 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공공기관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②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과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에 따라 매년 5억원에서 270억원 가량의 경비²⁾가 위탁선거와 관련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되고 있다.

2) 경비의 편차가 큰 이유는 주기적으로 대규모로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위탁선거가 있기 때문이며, 2015년과 2019년의 경우 선거 소요가 많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시행되어 위탁선거 경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위탁선거관리 사업 중 예산외로 운용되는 경비 현황]

(단위: 천, 백만원)

위탁 유형	선거종류	구분	연도별 집행액 및 집행건수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무	· 농·수·산림조합장 · 대학의장	건수	1,354	56	67	21	1,371
	· 농·수협중앙회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집행액	25,414	1,176	1,440	469	27,431
임의	· 산림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임원	건수	13	11	3	6	5
	· 신탁임원 · 업연초조합장	집행액	241	249	19	102	166
합 계		건수	1,367	67	70	27	1,376
		집행액	25,655	1,425	1,459	571	27,59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동 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7조3)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53조4)의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임기만료 동시조합장선거를 제외한 임의위탁선거는 물론 의무위탁선거라 하더라도 법령개정에 따

3)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른 위탁대상의 증감, 사전예측이 어려운 사망, 당선무효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선거의 규모 및 시기 등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사전에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산으로 편성 시 선거기간이 연도 말에서 연초에 걸쳐있는 선거의 경우 경비의 이월처리 문제가 있고, 선거비용의 부담주체별로 공통·고유경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총계주의에 따른 현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상으로는 그와 같이 부담주체별 관리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대로 동 경비를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지만, 세입·세출 예산외로 동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위탁선거와 관련되어 지급되고 있는 특별정려금은 법률에 명확한 지급근거를 갖추어 예산외로 운용되는 선거경비가 아닌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지급될 필요성이 있다.

선거사무의 경우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합당한 수당인 휴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선거사무는 절차적 하자 발생 시 그 파급력이나 책임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가 집중되는 일정기간 동안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정려금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⁵⁾는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법」

-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①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 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선거,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개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5개월 간 5급 공무원은 1개월 당 15만원, 6급 이하 공무원은 1개월 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수권을 받은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이 아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의 규정⁶⁾에 의거⁷⁾하여,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는 각 위탁선거의 선거경비에서 다른 공직선거 등의 특별정려금과 그 기간은 상이(2개월 또는 1개월)하지만 동일한 금액기준에 따라 특별정려금을 지급받고 있다. 2019년의 경우에는 3억 4,100만원이 위탁선거 수행과 관련된 특별정려금으로 지급되었다.

[위탁선거관련 특별정려금 지급 기준]

동시조합장선거	그 외 위탁선거
■ 5급 : 15만원×2월 ■ 6급이하: 10만원×2월 (중앙, 시도 직원 제외)	■ 5급 : 15만원×1월 ■ 6급이하 : 10만원×1월 ※ 조합장선거 2월, 재·보궐선거 1월 ※ 단순 투·개표지원인 경우 미지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7조(특별정려금 지급 등) ① 관할위원회는 특별정려금 및 수당을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7) 해당 규칙의 수권법률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정려금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탁선거관련 특별정려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선거건수	관리경비 (예산외)	특별정려금 지급액	지급대상
2015	1,367	25,655	482	5급, 6급이하 직원
2016	67	1,425	82	
2017	70	1,459	89	
2018	27	571	29	
2019	1,376	27,597	34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정려금은 선거수행과 관련된 공무원의 업무 부담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로서 위탁선거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선거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헌법」 제114조제5항⁸⁾에 따라 법규범의 효력을 가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의 주무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대로 특별정려금이 선거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수당 성격의 경비이고 위탁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무에 대하여 특별정려금이 지급될 필요성은 있으나, 특별정려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만 특별히 인정되는 수당이라는 점, 다른 공직선거 등의 특별정려금은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위탁선거 전반에 걸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위탁선거 관련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기관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기관의 고유사무라는 점, 고유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보수의 일종인 수당 성격의 경비를 예산외로 운

8)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용되는 경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에 대하여 법률에 지급근거를 갖추고, 적정 재원을 동 사업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예비금의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부적절

가. 현황

예비금¹⁾은 선거·정당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족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예비금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중 4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했다.

[2019회계연도 예비금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비금	460	460	0	460	456	0	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예비금을 활용한 정상적 경비의 집행은 예비금의 편성취지와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비금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²⁾에 의하여 설치된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의 재원이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133-334

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예비금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 점검 등을 위한 출장여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우수위원회 격려금 등에 집행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면 예비금의 편성취지인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이 어려웠던 선거·정당 사무의 부족 경비’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집행내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예비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세목코드)	비목별 집행액	집행내역(부적정 사례)
기타운영비 (210-16)	53	- 위원회 직원 축의금/조의금 지급 - 월별 과운영비 및 국운영비 지급(매월)
사업추진비 (240-01)	163	- 사회복지무요원 고충면담 및 간담회 식비 - 직원격려/화합을 위한 간담회 식비 - 업무실적심사위원회 위원 오찬제공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집행내역이며 예비금의 정상적 집행은 본예산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예비금은 연례적으로 발생되어 예측이 가능한 일상적·정상적 경비로의 집행을 지양해야 하며, 기타 예비금의 각 비목 집행에 대해서도 본 지침에서 정한 비목별 집행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2019년도 집행내역 중 직원 경·조사비 지원, 직원 화합을 위한 만찬 등은 모두 각 부서의 기본경비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정상경비에 해당하며, 최근 3년 간 매월 각 사무국 및 각 과에 운영비를 예비금을 이용하여 배분하고 있는 것 역시 예비금의 편성취지와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추진비나 직원 간담회비 등 일상적·정상적 경비지출을 위한 예비금 집행을 지양하고 합리적 지출소요가 있는 정상경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가. 현 황

연구용역비는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용역비용인 일반연구비(260-01)와,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에 대한 용역비용인 정책연구비(260-02)를 포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일반연구비 예산현액 7억 6,600만원 중 7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정책연구비 예산현액 1억 8,4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연구용역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연구비 (260-01)	690	690	76	766	727	0	39
정책연구비 (260-02)	192	192	△8	184	177	0	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88% 이상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입찰하도록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연구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¹⁾에서는 비리와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 용역에 대해 경쟁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의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전체 과제의 97%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고, 2019년도에도 88.2%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최근 3년 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과제 계약 현황]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과제 수	계약방식		과제 수	계약방식		과제 수	계약방식	
	수의	경쟁		수의	경쟁		수의	경쟁
28건	25건 (89.3%)	3건 (10.7%)	33건	32건 (97.0%)	1건 (3.0%)	17건	15건 (88.2%)	2건 (11.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부분 2,000만원 이하의 과제이고 적시에 대응 가능한 연구 수행을 위해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용역과제를 공모하고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당해연도에 진행한 ‘정당의 사회적 기반 확대방안 연구’, ‘선거비용 규제를 통한 선거운동의 합리성 제고방안’ 등은 내용상 집행의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만원 이하로 발주한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분석, 해외 국가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 해외 정당 정책연구소 현황 등 선거제도 관련 국내외 현황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동 내용은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내 연구인력(전임교수 8인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연구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선거제도 및 조직 현황 분석이나 정책적 대안에 대한 기본연구들은 이들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보다 심도 있는 연구·분석과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2019년도에 수행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연구는 분석내용의 충실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행정효율과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연구용역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연구결과의 평가 측면에서 과제담당관은 결과보고서의 평가 시 과제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연구결과가 미흡한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2019년도에 수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는 유사율이 13%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내규로 8~10% 미만이 되도록 관리한다는 점, 학술지 논문의 경우 1~2%의 유사도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²⁾

[선행연구와 유사율이 높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명	유사율(%)
생활정치 활성화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제도 개선안	13
선거비용 규제를 통한 선거운동의 합리성 제고 방안	14
해외국가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에 관한 연구	17/37

주: 해외국가의 국고보조금 제도 연구의 경우 제도현황 부분으로 인해 유사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동 부분을 제외해도 유사율이 17%로 보고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분석하여 재작성

2) 논문유사율은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표절검사서비스 분석결과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유사도와 표절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검증 외 전문적인 질적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일부 연구는 용역비 대비 내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지능형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의 경우 선거 관련 위법 게시물에 대한 선제적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1,5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여 5개월 간 추진되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다수의 화면 캡처본을 포함하여 11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제공한 기존의 텍스트 파일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몇 개의 알고리즘을 써서 분류해보고 향후 사용가능한 방식들을 모색하는 수준이다. 용역의 목적인, 인터넷 게시물의 맥락적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마이닝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용역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과제의 검토·선정, 과제 관리를 충실히 수행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관서운영경비는 관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고금관리법」 제24조¹⁾에서는 그 성격상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²⁾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281개 관서(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249개 구·시·군위원회 포함)에서 세출예산액의 14.6%에 해당하는 502억 4,5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관서운영경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일반지출	관서운영경비	
총지출	343,572	343,572	348,378	328,719	278,474	50,245	19,15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2019회계연도 관서운영경비 세목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인건비 (110)	운영비 (210)	여비 (220)	업무추진비 (240)	직무수행경비 (250)	보전금 (310)	민간이전 (320)	해외이전 (340)	유형자산 (340)
10,088	23,927	5,298	3,174	4,978	637	1,066	12	1,06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건당 500만원을 초과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을 초과한 자산취득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³⁾에 의하면 관서운영경비로 지정된 운영비 예산(210목, 복리후생비 등 일부 세목 제외)은 건당 50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고,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는 관서운영경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유형자산은(430)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3)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 미만인 물품의 취득 경비

자료: 기획재정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그러나, 2019년도 관서운영경비 지급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총 54건이며, 해당 집행액은 5억 691만원이다.

[관서운영경비 지급 최고금액(500만원) 초과집행 일부예시]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건명	집행액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청사이전에 따른 업무편의시설 공사비	35,299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용역비	21,000
재보궐선거관리	특근매식비	읍·면 위원회 지급	19,716
기획실 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청사내부 벽체공사 및 전기설치공사	18,877
기획실 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국외훈련 파견자 훈련비 지급	18,617
기획실 등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한가위 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	13,120
민주시민의식함양 및 지원	일반수용비	민주시민교육 대학 강사료 지급	11,491
위원회운영	사업추진비	한가위 선물 구입	10,790
청사관리사업	시설장비유지비	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10,087
기획실 등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	설 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	9,454
민주시민의식함양 및 지원	일반수용비	선거체험관 설치 공사 계약금	10,000
합 계		기타 44건 포함 54건	506,914

자료: 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에 근거하여 제작됨

한편, 기획실 등 기본경비사업과 청사관리사업의 집행내역 중 총 자산취득비(430-01)를 건당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는 총 171건이며 해당 건의 집행액은 2억 5,615만원이다.

[자산취득비(유형자산) 지급 최고금액(50만원) 초과집행 일부예시]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건명	집행액
청사관리	사무용 OA가구 구입	34,018
청사관리	사무용 의자 구입	10,221
청사관리	근무환경 개선물품 구입	6,650
기획실 등 기본경비	전임직원 사무용의자 및 회의실 탁자구입	6,237
기획실 등 기본경비	파티션 등 구입	4,989
청사관리	소파, 회의탁자, 책장 등 구입	4,950
청사관리	사무용가구 구입	4,035
기획실 등 기본경비	탁자 및 접이식 의자구입	4,000
합 계	기타 163건 포함 총 171건	256,147

자료: 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에 근거하여 재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249개 구·시·군위원회에서는 관서운영경비만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고, 각급 위원회의 회계업무 경력이 짧은 신규 직원의 착오 또는 부주의로 관서운영경비 범위를 벗어나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국고금 관리법」에서 관서운영경비의 건별 지급한도를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금액이 큰 지출 건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관의 지출결의 등 일반적인 지출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건별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함에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비를 다수 집행하였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수하여 관서운영경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절차를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5억 3,700만원으로, 27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7억 8,100만원을 수납하고 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537	2,537	2,537	2,791	2,781	2	8	99.6

자료: 소방청

2019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427억 7,200만원이며, 이 중 91.2%인 2,215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154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19,720	228,692	242,772	221,504	15,476	5,792	91.2

자료: 소방청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소방청의 자산은 순자산과 동일한 3,365억 9,4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4억 400만원, 투자자산 4억 5,100만원, 일반유형자산 3,232억 7,100만원, 무형자산 105억 8,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8억 8,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9억 300만원(3.3%) 증가하였다. 이는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37억 8,100만원 증가, 소방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무형자산 75억 2,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9,000만원(100.0%) 감소하였다. 이는 미지급금 감소에 따른 유동부채 5,900만원 감소,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납입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3,1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36,594	325,691	10,903	3.3
Ⅰ. 유동자산	1,404	1,816	(412)	(22.7)
Ⅱ. 투자자산	451	-	451	-
Ⅲ. 일반유형자산	323,271	319,490	3,781	1.2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10,583	3,057	7,526	246.2
Ⅵ. 기타비유동자산	884	1,329	(445)	(33.5)
부 채	-	90	(90)	(100.0)
Ⅰ. 유동부채	-	59	(59)	(100.0)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	31	(31)	(100.0)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336,594	325,601	10,993	3.4
Ⅰ. 기본순자산	102,344	102,344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08,316	200,040	8,276	4.1
Ⅲ. 순자산 조정	25,934	23,217	2,717	11.7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231억 7,0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433억 2,100만원, 관리운영비 826억 6,700만원, 비배분비용 7억 5,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익 9억 4,400만원, 비배분수익 26억 2,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008억 1,500만원(82.4%) 증가한 2,231억 7,000만원이며, 이는 자치단체 보조비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708억 3,2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소방정책지원 프로그램(1,423억 7,700만원)이며,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57억 7,800만원과 경비 268억 8,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억 5,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42,377	71,545	70,832	99.0
가. 프로그램 총원가	143,321	71,545	71,776	100.3
나. 프로그램 수익	944	-	944	-
II. 관리운영비	82,667	73,598	9,069	12.3
III. 비배분비용	752	3,733	(2,981)	(79.9)
IV. 비배분수익	2,626	26,521	(23,895)	(90.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23,170	122,355	100,815	82.4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23,170	122,355	100,815	82.4

자료: 소방청

소방청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3,256억 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365억 9,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09억 9,300만원(3.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008억 1,5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9억 6,300만원 감소,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418억 3,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2,350억 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5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7억 1,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소방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25,601	254,668	70,933	27.9
II. 재정운영결과	223,170	122,355	100,815	82.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31,447	189,609	41,838	22.1
IV. 조정항목	2,716	3,679	(963)	(26.2)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36,594	325,601	10,993	3.4

자료: 소방청

소방청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신규채용 인력규모 조정이 논의됨에 따라 채용 및 교육비 4억 6,600만원과 동 조사에 따라 2018년에 채용된 인력 중 6개월 미만 단기 채용인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일부인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 공통으로 인건비 3억원을 감액하였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다.

소방청은 ① 현장중심의 화재안전특별대책 중점 추진, ② 사람중심 국민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교육 확산, ③ 소방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④ 대형·특수 국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소방안전특별조사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방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보조사업의 수행 시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헬기 추락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원인 규명 및 정비 강화 등 소방헬기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소방헬기 통합관리 등 운영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각 영업주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화재안전특별조사 후속조치 마련 필요 등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밀양 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안전특별대책’¹⁾의 일환으로서 소방청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화재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798개 조사반을 구성하여 전국 다중이용시설 55만 4,000동(2018년 17만 2,000동, 2019년 38만 2,000동)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8개월 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를 위해 소방청은 2018년 예비비 115억 6,700만원 및 2019년 예산 324억 6,400만원 등 총 44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0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8	0	0	11,567	0	0	11,567	8,837	76.4	445	2,285
2019	32,464	32,464	0	445	△754	32,155	31,450	97.8	0	705

자료: 소방청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6788-4641)

1)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은 2018년 4월 발표되었으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비롯하여 「건축물 관리법」 제정 등 화재안전제도 개선, 국민참여 화재예방활동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1-1. 화재안전특별조사 후속조치 마련 필요

가. 현 황

화재안전특별대책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한시적인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소방청은 화재안전특별대책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317억 1,000만원 중 310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화재안전특별대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화재안전특별대책	32,464	32,464	0	△754	31,710	31,005	97.8	0	705

자료: 소방청

제천·밀양 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안전특별대책’¹⁾의 일환으로서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비 115억 6,700만원이 배정²⁾되었으며, 2018년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실시되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사업기간은 18개월(2018. 7. ~ 2019. 12.)로서 전국 다중이용시설 55만 4,000동(2018년 17만 2,000동, 2019년 38만 2,000동)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화재안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798개 조사반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소방청은 2018년 1단계 사업을 통해 총 173,296개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잔여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6788-4641)

1)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은 2018년 4월 발표되었으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비롯하여 「건축물 관리법」 제정 등 화재안전제도 개선, 국민참여 화재예방활동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 2018년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예비비 외에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232억원), 지자체 부담분(51억원) 등의 재원으로 수행되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주기적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근거법령 신설을 통해 지속적인 화재예방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화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한시적인 전수조사로서 2019년 12월 조사가 종료되었다. 다만, 소방청은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특정소방대상물³⁾ 총 146만 여 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각 시도별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정보조사의 법적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서, 동 조항은 ‘소방특별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주요 행사 지역, 화재발생취약 지역에 대해 시행하며, 특히 같은 조 제3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사가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을 각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정보조사의 법률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후 략)

자료: 소방청

실제 소방청이 2016~2017년 수행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소방본부 기준 총 건수는 737건으로, 계절이나 이슈에 따른 일부 업종(요양병원, 사우나업소 등) 또는 장소(건축현장 등)에 대해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피난통로 확보, 소방설비 점검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주기적인 소방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016~2017년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

(단위: 회)

구분	2016	2017
실시 횟수	365	372

자료: 소방청

또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은 매년 신·개축되어 새로운 조사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조사결과는 시설노후화, 관리주체 변경, 리모델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관리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정기조사 실시방안 및 관련 규정 신설에 관한 검토를 통해 화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화재안전 조사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기 및 가스 분야에 관한 조사·점검 결과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2018~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전국 55만 여 동의 건축물의 화재, 건축, 가스, 전기 등에 관한 조사를 종료한 이후, 2020년부터는 화재안전정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동 조사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는 달리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조사내용은 건축 및 소방 분야로서 가스 및 전기 분야에 관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가스 및 전기 분야의 점검은 가스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자료를 소방안전정보 시스템에 축적하고, 향후 필요 항목도 상호 협의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 공유에 관한 필요항목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않은 상황이며, 동 자료가 축적될 정보화 시스템인 ‘소방안전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⁴⁾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정보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및 자료입력 채널, 자료 수준 등 시스템 구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료 공유 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4) 소방청 소관 정보화사업인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일반회계 1150-50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약 11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1-2. 보조사업 수행 시 지방비 부담에 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각 시·도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으로서 2019년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는 254억 2,400만원이 편성·교부되었으며, 233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화재안전특별대책 사업 내 자치단체경상보조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비목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액 (C)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목)	25,424	25,424	0	25,424	25,424	23,334	100.0	91.8	0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지자체 별 투입재원의 편차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보조사업 수행 시 지방비 재원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이 50%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퇴직급여와 차량집기 임차 등에 관한 내역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보조사업 전체 예산액은 508억 4,400만원이며, 466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각 상기 보조사업 내역 외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건축경력직 인력 운영 등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지출한 결산액은 268억 800만원으로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비는 국비 결산액 대비 2.1배인 501억 4,100만원이다. 이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소요된 사업비가 정부가 편성한 사업비보다 컸으며,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6788-4641)

[자치단체별 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동, 개, 백만원, %)

자치 단체	조사수량	운영 조사반 (A)	보조사업 예산액			보조사업 결산액			추가 지방비 결산액 (C)	총 결산액 (B+C)	조사반당 결산액 [(B+C)/A]
			계	국비	지방비	계(B)	국비	지방비			
서울	43,557	91	5,700	2,850	2,850	4,640	2,320	2,320	3,151	7,791	85.6
부산	22,034	46	2,876	1,438	1,438	2,728	1,364	1,364	1,216	3,944	85.7
대구	17,148	36	2,370	1,185	1,185	2,012	1,006	1,006	1,606	3,618	100.5
인천	15,210	32	1,994	997	997	1,994	997	997	1,352	3,346	104.6
광주	19,350	38	2,524	1,262	1,262	1,980	990	990	1,607	3,587	94.4
대전	16,744	35	2,330	1,165	1,165	2,330	1,165	1,165	1,702	4,032	115.2
울산	11,060	23	1,620	810	810	1,494	747	747	731	2,225	96.7
세종	1,862	4	372	186	186	270	135	135	241	511	127.8
경기	76,167	159	9,772	4,886	4,886	9,420	4,710	4,710	5,814	15,234	95.8
강원	23,145	48	3,016	1,508	1,508	2,928	1,464	1,464	1,811	4,739	98.7
충북	11,343	24	1,554	777	777	1,360	680	680	502	1,862	77.6
충남	22,900	41	2,942	1,471	1,471	2,874	1,437	1,437	1,964	4,838	118.0
전북	19,021	40	2,602	1,301	1,301	2,576	1,288	1,288	383	2,959	74.0
전남	14,727	32	2,022	1,011	1,011	1,768	884	884	353	2,121	66.3
경북	30,807	65	4,190	2,095	2,095	4,052	2,026	2,026	1,765	5,817	89.5
경남	29,620	64	3,852	1,926	1,926	3,314	1,657	1,657	1,893	5,207	81.4
제주	8,107	19	1,108	554	554	926	463	463	717	1,643	86.5
계	382,802	797	50,844	25,422	25,422	46,666	23,333	23,333	26,808	73,474	92.2

자료: 소방청

한편, 이와 같이 추가적인 지방비가 소요될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투입된 재원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반 당 결산액을 살펴보면, 세종의 경우 1개 조사반 당 1억 2,700만원이 투입된 반면, 전남의 경우 1개 조사반 당 6,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지자체에 따른 편차가 최대 약 2배 수준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동 조사는 ‘화재안전특별대책’이라는 국가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조사품질 및 투입재원은 전국적으로 균일할 필요성이 높고, 사업형태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사업 수행체계 및 재원분담을 고려한 것으로서 지자체별 재원 투입규모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소방청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의 예산소
요 및 재원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재원투입 편차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앙119특수구조대는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내 조직으로 각종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역 단위 4개 특수구조대가 운영 중에 있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조직도]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각 특수구조대 장비 확충 및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해 2개 세부사업을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동 사업들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604억원이며, 497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95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19회계연도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수도권대, 영남대)	1,491	2,991	98	1,869	4,958	3,867	848	243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충청강원대, 호남대)	47,122	47,122	10,046	△1,726	55,442	45,905	8,724	814
계	48,613	50,113	10,144	143	60,400	49,772	9,572	1,057

자료: 소방청

2-1. 소방헬기 안전관리 대책 강구 필요 등

가. 현 황

2020년 4월 기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내 4개 119특수구조대는 대형, 특수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헬기 4기를 운용하고 있다. 수도권에 배치된 소방헬기는 2기이며, 영남대 및 호남대에 1기씩 배치되었고, 충청강원대에 배치될 헬기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보유헬기 현황]

특수구조대	헬기 구분	도입시기	취득가격	비고
수도권대	대형헬기(EC225LP)	2008. 12.	447억원	
	중형헬기(AS365)	1997. 1.	37.7억원	
영남대	대형헬기(EC225LP)	2016. 3.	414억원	추락사고(2019. 10.)로 파손 - 대체헬기 도입 사업 추진 중
	중형헬기(AS365)	1999. 12.	67.8억원	
호남대	대형헬기(EC225LP)	2020. 1.	460.1억원	
충청강원대	대형헬기(EC225LP)	도입사업 추진 중	417.7억원	납품 지연 중 - '19.12. 환율기준으로 통관수수료 부가세 미확정 - 납품 후 취득가격확정 예정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첫째, 소방청은 소방헬기 추락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 규명 및 정비 강화 등 소방헬기 안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31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운용된 소방헬기 1대가 독도에서 이륙한 직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사건¹⁾이 발생하였다. 동 헬기는 영남119특수구조대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6788-4641)

에 배치되어 운용 중이던 대형헬기(영남1호기)로서, 현재 사고조사가 진행 중²⁾이다.

한편, 2019년에는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의 추락사고³⁾도 발생한 바 있는데, 2010년 이후 발생한 헬기 추락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1건의 사고 중 소방헬기가 4건으로 군(4건)과 함께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행정기관 소속 헬기 추락사고 발생 현황]

발생시기	기관 구분	사고 지역	사고기종
2010. 3.	육군	경기 남양주시	500MD
2011. 3.	충남소방본부	충남 서산시	SOKOL
2011. 5.	산림청	강원 강릉시	AS350-B2
2013. 5.	산림청	경북 안동시	S-64E
2014. 7.	강원소방본부	광주 광산구	AS365
2015. 3.	해양경찰청	전남 신안군	B-511
2016. 2.	육군	강원 춘천시	UH-1H
2016. 9.	해군	강원 양양시	Lynx
2018. 7.	해병대	경북 포항시	마린온
2019. 2.	경남소방본부	경남 합천군	AS365-N3
2019. 10.	소방청	경북 울릉군	EC225LP

주: 2020년 5월 지리산 인근에서 추락한 헬기는 경남소방본부에서 위탁운용한 민간헬기로 행정기관 소속 헬기가 아님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소방청은 헬기 발생 사고의 원인을 정밀히 분석하여 기술적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소방항공 인력 확보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방헬기 조종 및 정비 인력을 살펴보면, 전국 소방헬기 조종사 현원은 정원(174명) 대비 69%인 120명이며, 정비인력은 정원(116명) 대비 78%인 91명으로 헬기 전문인력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방청의 경우에도 소속 조종사 및 정비인력 정원은 각각 24명, 16명이나 현원은 22명, 11명에 그치고 있다.

1) 2019년 10월 31일 어선 작업 도중 부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가 독도에서 이륙한 직후 해상에 추락하였다.

2) 동 사고조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수행 중이며, 현재 예비보고서 작성 단계로 이후 시험·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거친 조사결과는 약 1년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3) 2019년 2월 27일 경남 소방헬기가 산불진압 훈련 도중 합천호에 추락하였으며,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방헬기 관련 인력 정·현원 현황(2019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중앙 4대	서울 3대	부산 2대	대구 2대	인천 2대	광주 1대	울산 1대	경기 3대	강원 2대	충북 1대	충남 1대	전북 1대	전남 2대	경북 2대	경남 1대	제주 1대
조 정원	174	24	18	12	12	12	6	6	18	12	6	6	6	12	12	6	6
종 현원	120	22	10	8	8	5	5	6	13	11	6	4	5	5	7	3	2
정 정원	116	16	12	8	8	8	4	4	12	8	4	4	4	8	8	4	4
비 현원	91	11	6	8	8	8	3	3	11	6	3	4	3	4	6	3	4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헬기 조종사의 24시간 근무체계 및 고난이도 임무(화재·구조·구급 등 비계획 출동)로 항공인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항공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유지될 경우, 연·병가 시 대체인력 부족 및 근무시간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직업 만족도 저하로 추가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조종사 채용 및 근무여건 개선, 교육훈련 강화 등 항공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방헬기 운영 조직을 살펴보면, 현재 소방청 내 항공전담 조직은 1계 5명 수준에 불과한데, 헬기를 운영하는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타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소방헬기가 시·도별로 관리·운용되고 있고, 현재 소방청 소속 헬기는 소수(4기)이기 때문이다.

[소방헬기 관련 인력 정·현원 현황(2019년 12월 기준)]

구 분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조 직	1계(5명)	1과 2계 1대(21명)	1본부 4과 3계(97명)	1과 3계 1대(27명)
인 력	항공계 5	항공기획계 6 항공안전계 4 항공정비대 11	항공지원과 23 산림항공과 28 항공안전과 10 항공정비과 36	항공기획계 6 항공안전계 3 항공정비계 5 항공정비대 13
헬 기	30대	18대	47대	26대 (헬기20, 고정익6)

자료: 소방청

그러나 헬기의 경우, 다양한 부품이 소요되고, 전문적인 정비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헬기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헬기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

특히, 소방청은 소속 헬기의 100시간 이하 점검을 제외한 정비는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산림청의 경우 5년, 10년 점검 등을 제외한 주요 정비를 자체정비로 해결하고 있다.

[헬기 정비범위 비교]

정비 구분	소방청	산림청
100시간 이하 점검	자체정비	자체정비
300시간 이상 점검	외주정비	자체정비
엔진, 기어박스 등 중요 부속 교환	외주정비	자체정비
5년, 10년 점검	외주정비	외주정비

자료: 소방청

또한, 향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의 추가 도입(총 8대 운용)이 예정되어 있고, 시·도 소방헬기 교체 및 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헬기 정비 및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운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소방헬기 시·도 통합 정비창 신설 또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와의 헬기정비업무 협업가능성을 타진하여 안정적인 헬기 정비 등 관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대형헬기 도입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헬기 도입 사업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충청강원 및 호남 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될 대형헬기 2기 도입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동 사업은 2019년 도입을 목표로 3개년 사업(2017~2019년)으로 진행되었으며, 총사업비는 944억 1,100만원이다.

4) 소방항공 관리 조직의 확대 및 통합체계 구축 등 개선과제는 과거에도 제시된 바 있다.[항공안전업무 전담부서 설치(국무총리실, 2011. 7.), 헬기안전관리기능 보강(행정안전부, 2011. 9.), 시·도 항공대 통합운영(강원소방헬기 추락사고 조사위원회, 2016. 3.) 등]

[충청강원대 및 호남대 대형헬기 도입 사업(각 1대) 현황]

(단위: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계
예산액	28,800	28,800	36,811	0	94,411
집행액	28,800	28,800	25,955	8,724 (이월집행 예상액)	92,279

주: 2020년 집행액 8,724백만원은 2019년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위해 이월되었음

자료: 소방청

그러나 2019년에 도입된 헬기는 없는 상황으로, 2020년 1월에 도입된 헬기 1기는 호남대에서 운용 중이나, 충청강원대 헬기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대형헬기 2대를 주문함에 따른 업체의 순차적 제작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에서의 최종시험평가가 지연되어 1기가 납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헬기 도입시기인 2019년에 납품이 되지 않음에 따라 1기의 납품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고, 헬기의 순차제작은 사업 추진 당시 예측가능한 조건이므로 소방청은 헬기 도입 사업 수행 시 납품일정에 관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은 영남대 대체헬기 구매사업(144억원) 및 호남대·충청강원대 중형헬기 2기 구매사업(138억원) 등 3기의 소방헬기 도입 사업 첫 해이므로, 납품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규 헬기 도입 사업 예산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2020	2021	2022	계
영남대 대체헬기 1기 구매	14,400	14,400	19,200	48,000
호남대·충청강원대 중형헬기 2기 구매	13,800	13,800	18,400	46,000

자료: 소방청

셋째, R&D 사업으로 개발된 소방헬기 시뮬레이터는 지정검사를 받지 못해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방헬기 시뮬레이터는 구조용 헬기 비행훈련설비로서 소방헬기 조종사의 계기비행 경험 유지⁵⁾를 위한 훈련시간 확보 및 소방헬기 증가에 따른 비상상황 등의 훈련을 위해 개발되었다. 연구개발 총사업비는 38억원으로 3년 6개월간(2015. 6. ~ 2018. 12.) 추진되었으며, 동 설비의 교육센터 신축사업은 시뮬레이터 개발완료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 중앙119구조본부(대구) 부지 내 준공되었다.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개발 및 교육센터 신축 사업 연도별 집행액]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2015	2016	2017	2018	계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개발	1,150	1,220	1,430	0	3,800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신축	0	0	0	668	668

주: 소방헬기 시뮬레이터는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 개발(R&D) 사업(코드: 일반회계 1160-600) 내 연구과제로서 추진되었으며, 소방헬기 시뮬레이터 교육센터 신축사업은(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수도권대, 영남대) 사업(코드: 일반회계 1171-301)에서 추진되었음

자료: 소방청

그러나 현재 동 시뮬레이터는 부산지방항공청의 지정검사⁶⁾가 수행되지 않고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4조(계기비행의 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6) 소방헬기 시뮬레이터와 같은 모의비행장치는 아래 「항공안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의 지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39조(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⁷⁾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과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제 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 략)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라 해당 모의비행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 략)

있는데, 이에 대해 부산지방항공청은 지정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에서 사용되는 비행데이터와 해당 기종(AS365N2)의 실제 비행데이터의 일치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종 제작사(Airbus)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소방청은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터의 신뢰성 확보자료(KSR⁷⁾ Report 등)를 제출하고 있어 원 제작사의 추가적인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⁸⁾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45억원이 투입된 헬기 시뮬레이터 사업은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음에도 활용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며, 지정검사 완료 후 관리 전환 시 시뮬레이터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2019년부터 편성된 관리용역비(210-15목) 1억 6,700만원은 전액 조정집행되었고, 2020년에 편성된 동일 규모의 관리용역비도 정상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소방청은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긴밀히 수행하여 해당 시뮬레이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헬기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 수행 시에는 사업계획 및 행정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KSR(Kohlman Systems Research)은 최첨단 비행 테스트 기술, 테스트 계획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FAA(미국 연방 항공국) 승인 시뮬레이터 모델 및 데이터 패키지를 제공하는 미국 법인 단체이다.

8) 해당 기종의 제작사인 Airbus社は 자사의 시뮬레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입장으로, 해당 시뮬레이터 비행데이터의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 자산취득비 연례적 이월 지양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은 특수구조대의 헬기, 차량, 장비 등 소방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비중이 높다. 2019년 2개 지원사업의 자산취득비의 예산현액은 380억 7,400만원이며, 274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95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19회계연도 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 내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수도권대, 영남대)	116	1,616	66	0	1,682	591	848	243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충청강원대, 호남대)	37,231	37,231	887	△1,726	36,392	26,855	8,724	813
계	37,347	38,847	953	△1,726	38,074	27,446	9,572	1,056

자료: 소방청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충청강원대, 호남대)의 자산취득비 규모가 큰 이유는 대형 소방헬기 예산(368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수도권대, 영남대)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은 재난현장회복차 등 특수차량 구매 사업비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차량 및 장비 등 보강 사업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비조달 및 예산집행 가능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사업 내 차량 및 장비 등 보강 사업은 연례적으로 10억원 내외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비의 약 20~40%가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 차량 및 장비 등 보강 사업 예산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이월액	예산액	이월액	예산액	이월액	예산액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수도권대, 영남대)	496	0	412	66	1,616	848	154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충청강원대, 호남대)	2,210	1,077	4,674	887	420	0	652
계	2,706	1,077	5,086	953	2,036	848	806

자료: 소방청

동 사업의 연례적 이월은 장비 납품 지연에 기인하는데, 2017년은 탐색장비 운반차량, 2018년은 유해물질 분석기, 2019년은 재난현장회복차 등 차량·장비의 납품 지연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이월액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2017	1,077	탐색장비운반차량 등 6건 납품 지연
2018	953	유해물질 분석기 구매 등 6건(887) 및 산악장비 등(66) 납품 지연
2019	848	재난현장회복차 납품 지연

주: 2016년에는 특수구조대지원 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편성되었으며, 결산 시 사업이 분리됨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장비의 특수규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제안서 평가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국외제작, 수입장비가 많아 납품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사업비의 연례적 이월은 장비규격 및 구매·제작 등 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2019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인 재난현장회복차량 등 보강사업비 15억원 중 4억원만 집행되고 2.5억원은 불용되었으며, 8.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018년에 이월된 CBRNE 정찰로봇 및 무인굴삭기 보강 사업비(8.9억원)은 납품불가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사업비가 불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청은 차량·장비 등 보강 사업 추진 시에 장비 조달 및 예산집행 가능성에 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8년 예산의 집행 잔액을 통해 집기 등 기관 필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출동차량 및 구조장비 구매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그런데 중앙119구조본부는 특수구조대 장비보강 사업의 예산 집행 잔액을 본부 및 특수구조대, 화학구조센터 등에 필요한 집기 구매예산으로 활용하였다.

중앙119구조본부는 2018년 연말에 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 내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약 1억 1,000만원으로 안마의자, 냉장고 등의 물품 등 총 152점을 구매하였으며, 이 중 약 7,000만원은 이월되어 2019년에 집행되었다.

[기관 필요물품 구매목록]

연번	요구부서	구매수량	구매품목
합 계		45종 152점	
1	본부	1종 12점	안마의자
2	수도권119특수구조대	5종 12점	냉장고, 주방기구소독기 등
3	영남119특수구조대	6종 39점	냉장고, 수강용탁자 등
4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5종 10점	자동전자혈압계, 진공청소기 등
5	호남119특수구조대	7종 10점	냉난방기, 컨테이너 등
6	시흥119화학구조센터	5종 33점	장롱, 사물함 등
7	울산119화학구조센터	5종 19점	책상, 의자 등
8	서산119화학구조센터	5종 8점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등
9	여수119화학구조센터	2종 5점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10	충주119화학구조센터	4종 4점	냉장고, 텔레비전 등
집행액		1억 1,042만원(7,023만원은 이월되어 2019년 집행)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소방청은 119특수구조대와 합동방재센터가 신설되면서 조직과 인원이 늘어났으나, 이에 상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기본경비에 편성되지 않았고, 예산편성 원칙 상 한도규제가 강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일반집기류 보강을 주요사업비 집행잔액을 통해 활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요 사업비를 통해 기관 필요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집행액 일부가 회계연도를 이월하며 집행되었으며, 집행액이 중앙119구조본부 기본경비¹⁾ 사업에 편성된 자산취득비(1,000만원)의 1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자산취득비의 편성 목적에 따른 충실한 집행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 변경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업 구분원칙 및 전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등 자산취득비 집행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코드: 일반회계 7021-251

III

개별 사업 분석

1

조속한 간이 스프링클러 보급을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¹⁾은 중앙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법제 마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이다. 소방청은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83억 9,300만원 중 83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876	7,948	445	±26	8,393	8,365	99.7	0	28
고시원 등 간이 SP 설치 지원	0	7,072	0	0	7,072	7,072	100.0	0	0

자료: 소방청

동 사업은 화재예방 및 관계법령 제·개정,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영, 화학물질 분류표지 국제표준화 사업 등 계속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왔으나,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70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비 일부(4억 4,500만원)가 동 사업에 이월되어 집행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3-300

나. 분석의견

보조사업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간이 스프링클러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화재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70억 7,200만원(1,326개소)이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비를 국가, 지자체, 민간(영업주)이 1:1:1로 부담하는 보조사업이다.²⁾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을 말하는데, 이들 업소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³⁾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나, 동 규정 시행일(2009. 7. 8.)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⁴⁾ 그러나 2018년 11월 국일고시원 화재 등으로 노후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설비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중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⁵⁾

그런데 동 사업의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비 70억 7,200만원은 전액 교부되었으나, 집행행액은 20억 200만원(집행률 28.3%)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동사업은 2020년까지 예정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10억원(187개소)이 편성되어 있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9330호, 2009. 1. 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후단 생략)

5) 동 사업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비를 국가, 지자체, 민간(영업주)이 1:1:1로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 1개 업소당 공사비를 1,600만원으로 보아 국가보조금은 약 533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2019년 사업 대상은 총 1,326개소이다.

[2019회계연도 고시원 등 간이 SP 설치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			피보조기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본예산	추경						
고시원 등 간이 SP 설치 지원	0	7,072	7,072	7,072	2,002	4,488	582	28.3

자료: 소방청

이처럼 실집행이 저조한 데에 대해 소방청은 국가 추경예산 편성·교부(8월) 및 시·도 추경예산 편성 시기(9~10월)가 지연됨에 따라 공개입찰 등 절차 이행 관련 사업수행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 영업주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중 민간부담분으로 인해 설비 확충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접수 및 계약 추진, 간이 스프링클러 시공기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0일로서 물리적인 사업수행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사업지연의 주요인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영업주의 소극적인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사업대상 1,326개소 중 1,106개소가 사업을 신청했으나, 이 중 460개소만 공사가 완료되었고, 646개소는 2020년 예정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상황인데, 이처럼 사업비가 이월된 업소는 대부분 사업진행을 미룬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9회계연도 고시원 등 간이 SP 설치 지원 사업 추진 결과]

(단위: 건)

사업대상	공사현황			신청철회			
	소계	완료	예정	소계	폐업	업종변경	사업포기
1,326	1,106	460	646	220	45	12	163

자료: 소방청

이는 현재 기존 업소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동 사업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고, ② 2020년 5월 20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업주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

하도록 의무규정이 마련되었으며, ③ 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주가 사업 대상임에도 설치를 미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청 및 지자체는 사업 대상 영업주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 등에는 사업기한에 대한 별도의 공지 또는 안내가 없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안내 및 동의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사업 대상 선정 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소방안전교육 사업¹⁾은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등을 위한 사업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교육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8억 8,100만원 중 8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소방안전교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방안전교육	881	881	0	0	881	871	98.9	0	10
VR교육 시범사업	231	231	0	0	216	203	94.0	0	10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첫째, VR 교육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VR 장비 도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노인, 여성, 외국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VR 개발 도입’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은 콘텐츠 개발 2억 1,600만원, 장비도입 1,500만원 등 2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억 300만원이 집행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4-301

[2019회계연도 찾아가는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VR 개발 도입 사업 결산 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231,000,000	202,987,600	28,012,400
일반용역비(260-01목)	216,000,000	188,487,600	27,512,400
자산취득비(430-01목)	15,000,000	14,500,000	500,000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동 사업을 통해 제작한 VR 콘텐츠를 2019년 12월 각 소방서 및 소방안전체험관에 배포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지자체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2020년도 VR 장비 시스템 도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73세트의 소방장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VR 장비를 확보한 지자체는 전체 13개 지자체 중 서울, 경북, 세종 등 3개 지자체 뿐으로, 나머지 10개 지자체는 관련 장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콘텐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2020년도 VR장비시스템 도입 수요조사 결과(3월 말 기준)]
(단위: 세트)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수요조사	2	12	3	0	5	0	1	8	7
확보	2	0	0	0	0	0	0	8	0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수요조사	1	0	0	0	4	19	4	2	5
확보	0	0	0	0	0	19	0	0	0

자료: 소방청

이에 관해 소방청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방안전교육이 전면 중단된 상황으로, 향후 VR 교육 장비 확보 등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VR 콘텐츠는 2019년 제작·배포되었으므로,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2020년 초부터 관련 장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장비가 확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VR 장비 확보에 관한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인천, 대전 등 일부 지자체는 VR 콘텐츠에 관한 수요가 없는 상황인데, 향후 VR 교육 성과를 검토한 후 이들 지자체의 VR 교육 도입에 관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안전교육 사업을 통해 제작된 소방안전교육 동영상 및 교재 등을 공개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각 소방서 내 안전강사(소방공무원)는 소방안전교육 사업을 통해 제작·개발한 교육용 교재, 영상물 등을 활용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작된 교재·영상물은 DVD로 제작되어 각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안전체험관에 배포되고 있을 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방청은 사업을 통해 제작된 소방안전교육 동영상 및 교재 등을 국민 재난안전포털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게시하여 교육콘텐츠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현황]

	2016	2017	2018	2019
제작 교육 콘텐츠	초등학교 저학년용 소방안전교육 교재	초등학교 고학년용 소방안전교육 교재	성인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교재	노인, 여성, 외국인용 소방안전교육 교재

자료: 소방청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욱 사업평가심의관
신 은 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 태 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 수 진 예산분석관
박 은 형 예산분석관
오 덕 근 예산분석관

지 원 | 이 정 아 행정실무원
송 은 혜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0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편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94-0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